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법학석사 학위논문

중국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2018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 전공

계 정 연

중국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지도 교수 정 상 조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 전공

계 정 연

계정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10 월

위 원 장 박준석 (인)

부위원장 정연덕 (인)

위 원 정상조 (인)

초　　록

논문은 서론 외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우선 본 논문의 연구주제를 선택한 배경을 소개하였다. 중국에서의 컴퓨터 글자체 산업발전이 이상적이지 못한 데에 관하여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하여 한다는 문제의식과 동시에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외국기업에서 글자체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나타난 컴퓨터 글자체 관련 권리침해 분쟁 소송을 분석해본다면 중국의 현행 법체계에는 이와 연관된 명확한 법률이 없으므로 법원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근거할 법률이 없고 판사개인의 법률지식 소양에 의해 주도되는 이유로 판결결과에 차이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글자체 산업이 발전하려면 법률제도와 공공정책의 보호가 필요한데 이는 지식재산권 영역의 이론과 실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한다. 다음으로 논문의 연구목적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법률적 속성을 정의하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분석하며 외국입법례의 경험을 참고하여 저작권 입법건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컴퓨터 글자체 관련된 법률보호 연구 상황을 요약하여 정리 하면서 본 논문에서 연구 할 문제를 제기 한다. 다시 말해 컴퓨터 글자체 저작

권 보호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첫째, 국내외 컴퓨터 글자체 보호패턴에 연관된 연구를 보면 쟁점은 대부분 컴퓨터 글제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있는데 이에 따라 필자는 컴퓨터 글자체 보호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중국내 컴퓨터 글자체 법률보호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서 본 주제를 연구함에서의 핵심과 어려운 부분을 제시한다. 외국의 연구현황을 고찰하는 것은 본문이 연구하는 전향적 문제를 해결해준다.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글자체 발전은 상대적으로 성숙된 단계에 속하는데 이러한 패턴은 연구에 있어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주요하게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부분은 세 개 부분으로 나뉜다. 컴퓨터 글자체 관련개념에 대한 정리,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발전 현황 및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다. 여기에서 컴퓨터 글자체 관련개념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목적은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법률속성을 정확하게 정의 하려는데 있다. 관련개념에 대해 정의한 이유는 개념의 모호성과 사용 혼란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컴퓨터 글자체,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여 뒷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률에서 어떠한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서 중국에서의 컴퓨터 글자체 산업 발전현황을 소개하면서 현재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에 나타난 문제를 하나씩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외국기업에서 글자체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산업발전 현황에 이어 법률제도, 산업발전, 글자체의 가치 및 지식재산권 이익평형의 원칙과 노동이론 등 각 측면에서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3장은 컴퓨터 글자체 저작물성에 대한 분석이다. 본 장은 컴퓨터 글자체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의 핵심과 어려운 부분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먼저우선 각 나라의 컴퓨터 글자체 관련 연구 및 판례와 입법현황을 요약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중국 관련 판례와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중점적으로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서 본 연구의 관점에 대한 합리성을 증명한다. 즉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는 실용예술작품으로,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관점이다. 폰트 프로그램의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속성은 현재 학계에서 합의를 이루었기에 본문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논술 하지는 않았다. 지적해야 할 점으로는 폰트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독립된다. 수출 대상으로서의 컴퓨터 글자체 단

자와 이러한 형상을 런더링 하는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두개의 작품이다. 즉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가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더라고 폰트 프로그램이 독창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폰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코드의 설계나 폰트의 설계가 모두 디자이너 개인이 독립적으로 창작하고 작품에 개인의 창의와 사상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면 폰트 프로그램이 상대적인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다음 중국 <저작권법>중 “작품”의 의미와 “독창성”의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법률속성에 대해 명확히 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저작권 보호필요성과 과학성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중점적으로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필자는 현재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와 폰트 프로그램의 권리내용과 라이선스 패턴을 바탕으로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의 적용 및 한계(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사용, 권리 소진, 묵시적 허가 등 측면에서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의 한계를 논하였다. 이어서 선의적인 권리침해자의 법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보호의 한계에 도달하게 할 수 있음을 제기 한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유형과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접촉+실질적 유사” 표준이 권리침해 판단에 있어서의 적용과 핵

심적 작용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입법론을 제기하였다.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파일의 저작권 성질을 명확히 하고, 컴퓨터 저작권 보호범위를 확정하고, 컴퓨터 저작권 행정 등록 제도를 보완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컴퓨터 글자체 업계에 대한 규범화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국내의 컴퓨터 글자체 보호 현황에 대한 고찰에서 알다시피 각 나라가 컴퓨터 글자체 법률보호 패턴을 고려할 때 자국의 법률체계와 제도의 완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하는 외에 자국의 산업발전 목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 적용하는 보호 패턴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 현행의 법률체계와 산업발전현황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의 차원에서 컴퓨터 글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선택이라 생각 한다. 다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를 응용미술저작물로,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에 포섭시켜야 한다. 중국의 입법기관은 컴퓨터 글자체의 특징과 내재의 문제와 결함에 근거하여 실행 가능한 법률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과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具體問題具體分析）는 취지를 바탕으로 사법해석을 진행하여 각 급 법원이 같은 유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의무 내용뿐만 아니라 완전한 법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연관된 힘을 모아 국내 컴퓨터 글자체 산업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제기하고“법이 과거에 있어서는 문명의 산물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문명을 수호하는 도구이며; 미래에 있어서는 문명을 증진시키는 도구”하는 사상과 함께 컴퓨터 글자체의 법률보호가 산업발전에 주는 영향을 다시 한 번 강조 하고 컴퓨터 글자체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응용미술저작물

학 번 : 2017-21751

목 차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1

제2절 국내외 연구현황 ····· 15

제3절 연구 문제와 연구의 방법 ····· 34

제2장. 컴퓨터 글자체 산업과 보호필요성 ····· 38

제1절 컴퓨터 글자체의 개념 ····· 38

제2절.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현황 ····· 43

제3절.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보호 필요성 ····· 48

제4절 소결 ····· 60

제3장 컴퓨터 글자체 저작물성 ····· 61

제1절 컴퓨터 글자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61

제2절 중국 컴퓨터 글자체 관련 판례 ····· 75

제3절. 중국 컴퓨터 글자체 관련 입법 ····· 110

제4절.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구별 ····· 114

제5절. 폰트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 ····· 119

제6절.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저작권 보호 ····· 128

제7절 소결 ····· 196

제4장.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 ····· 199

제1절. 컴퓨터 글자체 권리내용 및 라이선스 ····· 199

제2절.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의 한계 ····· 202

제3절.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의 침해 ····· 224

제4절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관련 입법론 ····· 235

제5장 결 말 ····· 252

참고문

헌.....25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

한자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세계상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한 언어문자다. 통계에 의하면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16억 이상이다[1] 역사를 거슬러 한자의 시작 3000여 년 전의 갑골문이다. 갑골문은 상당히 성숙되고 체계화된 한자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 및 5000년 전의 신성문자(Egyptian hieroglyphic)는 인류 최초의 문자 중 하나이고, 수메르 문명의 설형문자도 5000여년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모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름 있으면서 사라진 문자는 마야문, 포로미문(波罗米文) 등이 있다. 한자는 이와 같이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한자는 필획구조가 풍부하고 특징이 선명하기에 다른 문자들과 현저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한자는 상형문자로서 그 자체가 예술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문자와

1) 百度百科：https://zhidao.baidu.com/question/685711047002202492.html, 방문 일자: 2018년 4 월 3 일.

비교 할 때 유일하게 예술품으로 될 수 있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대에 왕희지 (王羲之), 구양순(欧阳询), 안진경 (颜真卿), 유공권 (柳公权), 소식(苏轼) 등 수많은 서법대가들은 세인들의 인정을 받는 서법작품을 남겼다.[2]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서법작품에 많은 관심을 두고 그 예술적 미를 인정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한자가 상형문자로서 그림에서 발전 되어왔고 또 선을 주요구조로 하여 형성 되었기에 구조적 및 구도적인 미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3]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심미적 요구 및 표현의 요구가 높아졌고 한자도 기나긴 변화발전의 과정을 거쳐 점차 자신만의 체계와 규범을 형성하였다. 특히 컴퓨터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정보화 및 데이터화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고 한자와 컴퓨터 사이에도 결합을 이루게 되였다. 컴퓨터 조판(排版)기술이 나타나면서 컴퓨터를 통해 글자를 출력하는 방식이 점차 보급 되였고 많은 영역에서 컴퓨터를 통해 글자를 출력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손으로 글씨는 쓰는 방법을 대체하였다. 중국에서 한자 컴퓨터 조판시스템이 나타나면서 컴퓨터 업계에 보급되고 응용 되어왔으며 20세기 말에 이르러 중국의 컴퓨터 글자체 산업에는 질 높은 200여종의 예술풍격을 포함한 400여종의 폰트가 형성 되였으며 글자체 연구개발에

---

2) 百度百科：왕희지 (王羲之) ：중국고대 위진시기 저명한 서법가로서 “서성(书圣)”으로불리움https://baike.baidu.com/item/%E4%B9%A6%E6%B3%95%E5%AE%B6/1242244?fromtitle=%E4%B8%AD%E5%9B%BD%E5%8F%A4%E4%BB%A3%E5%9B%9B%E5%A4%A7%E4%B9%A6%E6%B3%95%E5%AE%B6&fromid=9252472 , 방문일자：2018年4月3日.

3) 余可：“如何实现汉字字体设计和民族文化的完美融合”， 载于《艺术科技》2013年 第7期。

종사하는 기업도 몇 십 개로 발전 되여 그야말로 휘황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중국 글자체 산업 발전의 시작이 늦은데다가 불법복제, 불법남용 등 문제로 인해 지금은 연관된 산업이 형해화 될 정도로 위축 되였고 컴퓨터 글자체 업계는 글자체 디자이너가 줄어듬과 함께 글자체 종류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불법복제로 인한 권리침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원인은 긴 시간 동안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저작권법>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등 어디에도 연관된 법률규정이 없는 것으로 법률체계의 하자가 가장 큰 기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에서 컴퓨터 글자체에 관하여 여러 번의 분쟁사건이 발생 하였으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근거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판사의 지식구조나 업무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성분쟁, 부동판결”의 결과가 타나나게 되였다. 결국 그러한 것은 법조계와 학술계의 첨예야 논쟁을 야기하였다. 더욱 심한 문제는 업계의 발전에 매우 순조롭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신형산업인 글자체 산업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 때문에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발전상황, 법률보호 상황을 잘 분석하고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과학적인 법체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률규제가 글자체 산업의 발전을 보호해 주어야 산업이 번영할 수 있다.[4)]

4) 董亮：《计算机中文字体的著作权保护问题研究》，首都经济贸易大学，2015年硕士论

2. 연구의 목적

컴퓨터 글자체 문제에 관한 논쟁이 지속하여 나타나고 있지만 통일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저작권법 보호에 관한 실무를 살펴보면 투자 및 산업발전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결핍한 상황에서 컴퓨터 글자체에 대해 어떠한 보호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없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글자체 산업과 기타산업 및 사회공중사이의 모순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양한 측면의 이익을 평형 시키고 글자체 산업을 보호하고 업계의 발전을 촉진할 것인가는 현재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5)]

필자는 컴퓨터 글자체에 대해 연구가 중국보다 훨씬 이른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나라에서 컴퓨터 글자체에 관련된 법률제도와 사법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내에서 근 몇 년간 논의되고 있는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관련 대표적 판례들을 분석하고 현재 각계에서 컴퓨터 글자체 보호에 관한 논의 쟁점을 정리하고 중국 현재의 법률제도와 컴퓨터 글자체 산업발전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술논문과 함께 판례에 대해 검토해 보고 컴퓨터 글자체, 단자와 폰트 프로그램의 법률속성을 분석하는

文。

5) 王锦瑾："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研究", 2016 年 5 月.

데서 부터 시작하여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이 응용미술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작품, 미술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또한 중국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체계를 건설하는 과학성과 유효성을 모색하고 어떠한 패턴이야 말로 글자체 권리자와 사회공중의 이익평형을 이루게 하는지 나아가서 산업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제2절 국내외 연구현황

1. 중국 연구 현황

중국의 학술계 및 사법계는2003년부터 글자체 분쟁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가 사회적 측면으로 첨예한 논쟁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중국의 법률규정에 컴퓨터 글자체에 관한 정의를 없었고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찾으려 하였으나 각 법원의 판결을 비교해본 결과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 등의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명확하고도 통일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상이한 판결의 태도를 보였다.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만약 저작권법의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작품 유형으로서 보호 할 것인가? 컴퓨터 글자체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 외에 기타 더욱 합리적인 보호 방법이 있는가? 컴퓨터 글자체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법률을 제정 할 필요가 있는가? 등이다.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 보호문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아직 새로운 문제에 속하며 현대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가장 합리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각계에서 컴퓨터 글자체 보호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학술계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주류관점이 형성되었다.

첫째, 글자체(단자 포함), 폰트(폰트 프로그램)는 작품이 아니다. [6]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느냐를 논함에 있어 노동과 창조를 구분하여야 한다. 컴퓨터 글자체는 직접 손으로 작성한 서법작품과 다르며 단자와 폰트의 생산과정은 노동에 속하지 창작행위가 아니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 글자체는 공업품에 속하므로 비록 일정한 미적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작품이 아닌 단순한 공업제품이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둘째, 글자체 단자의 독창성을 부정하지만 글자체 전체(한 벌의 글자체)의 독창성은 인정한다.[7] 단자를 놓고 볼 때 저작권법상 독창성이 있다

6) 刘春田：《知识产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7) 冯　刚：《中文字库中单子的著作权保护问题研究》，《中国版权》2016 年第 2 期

고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글자체 전체(한 벌의 글자체)는 전체 글자체가 동일성이 있어 선명한 식별력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독창성 요구에 도달할 수 있다.

셋째, 단자, 폰트, 폰트 프로그램이 모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8] 더 나아가서 해석하면 일부 학자는 컴퓨터 폰트 중 단자가 독창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기타 유형의 폰트 중의 단자와 동일한 폰트중의 기타 단자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약 폰트 중 단자가 서법가의 개성이 담긴 작품에 대한 디지털 화 된 복제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실용성이 없기에 이러한 단자의 독창성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하지 않다. 또한 이는 각 법원간의 판결이 상호 충돌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9]

(1)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저작물성(작품성)

여러 나라의 문헌자료를 참고 해보았을 때 어떠한 나라에서도 글자체 “단자”의 저작권보호에 관해서 따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여기서 글자체 “단자”라 함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개별 글자”[10] 또는 “단일 글자” 이다. 중국에서 글자체 단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기

8) 黄 汇：《计算机字体单字的可著作权问题研究——兼评中国<著作权法>的第三次修改》，《现代法学》 2013 年第 35 期第 3 卷

9) 张平、程艳:”计算机字体及字库的法律保护” 《电子知识产权》 2013 年第 5 期

10) 황선영: “[중국저작권법]의 글자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중국법연구, 제 20 집, 2013.

종의 판례에서 폰트 프로그램 과 글자체 전체 뿐 만 아니라 글자체 “단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판결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외에도 중국의 한자가 기타 문자와 다르게 상형(象形)문자로서 개별 글자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미적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 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현재 중국의 어떠한 법률에도 컴퓨터 글자체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학술계에서 글자체 관련 법적 성질과 법률 적용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관점과 의견을 제기하였다. 현재 글자체 관련하여 주요하게 글자체 단자의 법률속성과 법률보호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고 있다. 한 가지는 단자는 독창성과 심미성을 구비하였기에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11]과 다른 한 가지는 단자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구비한 공업제품이기에 미술저작물로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12] 것이다.

우선 컴퓨터 글자체는 미술저작물로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한자가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원래의 고정적인 구조의 기초에서 글자 형태에 대한 독창성을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한자구조의 기초에 자신의 창작적 원소를 더하는 창작 방식에 대해서

11) 陶鑫良、张平：“具独创性的汉字印刷字体单字是著作权法保护的美术作品”， 载于《法学》2011 年 第 7 期。

12) 黄武双：“实用功能排除了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的可能性”， 载于《法学》2011 年第 7 期。

는 2차적 창작물과 같이 독창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한자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면서 고정적인 형태를 형성 하였으며 필획구조 자체에 대해 대폭으로 개정하거나 창조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한자는 사상과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실용성이 강하며 심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부속적인 기능일 뿐이지 독창성에 까지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관점과 함께 컴퓨터 글자체는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컴퓨터 글자체 단자를 보면 컴퓨터 글자체 단자와 서법가가 손으로 직접 쓴 예술성이 넘쳐나는 서법작품 사이에는 차이가 크며 두 가지를 함께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을 수 없다. 서법작품은 서법가가 직접 붓 또는 필로 글자를 쓰면서 글자간의 간격, 필력, 구조, 필법, 방향 등으로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서 쓰는 과정에서 생각에 따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컴퓨터 글자체는 일정한 원리에 의해 제작 되였고 강한 공업제품 성격을 띤다. 컴퓨터 글자체는 글자체중 모든 단자가 통일적인 풍격을 유지해야 함으로 단자의 예술풍격이 일정하게 제한을 받아 단자마다 독특한 풍격을 띨 수 없으므로 작품으로서의 독창성에 도달하기에 매우 힘들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 단자는 미술저작물로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이익평형 원칙에 입각하여 글자체 단자를 보호한다면 대중 이익에 불리하고 사회에 불안정적인 요소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독특한 예술 풍격을 구비한 단자는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컴퓨터 글자체는 글자체 디자이너의 사상과 감정의 집중적 표현이며 일종의 독창적인 작품이다.[13] “독창성”[14]은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단독 창작이며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자의 사상과 감정 및 개성을 체현할 수 있고 일정한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이 독창성이 있는가는 창작과정과 창작함에 있어 사용된 도구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저작자의 개성과 사상 감정을 체현 하였는가에 의해 판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가 컴퓨터 영역에 응용된다고 하여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저작권법은 작품의 독창성적인 표현을 보호는 것이지 작품의 실용성 기능에 대해서는 보호 하지 않는다. 컴퓨터 글자체는 실용성이 있는 예술적 저작물에 속하고 정보 및 사상교류에서 그 실용성이 체현되고 시각적 미감으로 그 예술성을 체현하였다. 컴퓨터 글자체는 형식상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글자체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법률은 그 심미적 의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보나 한자 중의 예술적 의미는 모두 자형(글자의 형태), 자의(글자의 뜻)과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컴

13) 陶鑫良、张平：“具独创性的汉字印刷字体单字是著作权法保护的美术作品”, 载于《法学》2011年 第7期。

14)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독창성”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퓨터 글자체는 작품에 속한다.

(2) 컴퓨터 글자체 작품유형[15]

중국법원의 판례를 보면 컴퓨터 글자체의 법률속성에 대한 인정이 불일치하다. 현재까지 학술계에서 컴퓨터 글자체의 법률속성 인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 주요하게 네 가지 측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컴퓨터 글자체 & 미술저작물

긍정설: 컴퓨터 글자체는 글자체 디자이너가 글자체 단자의 외형에 대해 창작적으로 예술처리를 한 결과물로서 창작노동과 지적노동의 성과이며 그 독창성이 저작권법의 독창성 요구에 부합되기만 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용적 기능은 글자체가 "미술저작물"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16]

부정설: 컴퓨터 글자체는 단지 글자 단자를 기계적으로 조합한 것으로서 독창성을 체현할 수 없다. 따라서 "미술저작물"으로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7]

컴퓨터 글자체 & 응용미술저작물

긍정설: 컴퓨터 글자체는 실용적인 기능도 있고 미적 감각도 지니고 있

15) 冯 刚：《中文字库中单子的著作权保护问题研究》，《中国版权》2016 年第 2 期

16) 刘春田："论方正"倩字体"的非艺术性"， 载于《知识产权》2011 年第 5 期。

17) 张加青：《字体著作权好虎研究》，华东政法大学 2011 年硕士学位论文。

으며 그 “예술성”과 “실용성”이 물리 또는 관념상에서 분리 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에 응용미술저작물의 실용성과 예술성의 “분리 가능성”을 만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부정설: 컴퓨터 글자체의 예술성은 글자 자체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글자의 실용성을 떠나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즉 컴퓨터 글자체에 있어 그 실용성과 예술성은 관념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분리 되여 존재할 수 없기에 컴퓨터 글자체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될 수 없다.

컴퓨터 글자체 & 컴퓨터 프로그램

긍정설: 컴퓨터 글자체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운행하여 생성된 산물이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속하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작품에 속한다.[18]

부정설: 컴퓨터 글자체는 디지털 처리를 거친다고 해서 미술저작물 속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글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현 될 수밖에 없으며 글자체 자신이 운행된다는 것이 아니고 글자체는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행하여 생성된 산물이다. 즉 글자체 자체는 컴퓨터로 운행될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수 없다. [19]

컴퓨터 글자체 & 데이터베이스

긍정설: 컴퓨터 글자체는 저작권법 중 미술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독

18) 张雨敏：《字形、字库、字库软件的法律保护问题》，《中国版权》 2011 年第 5 期

19) 张雨敏：《字形、字库、字库软件的法律保护问题》，《中国版权》 2011 年第 5 期

창성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다.[20]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이익평형의 원칙에 근거하면 무조건 상응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응당 받아야 할 법률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제작자의 노력은 상응한 이익을 보답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지식재산권법의 이익평형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호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정당하다.[21]

부정설: 컴퓨터 글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호하면 글자체 권리주체가 일단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만 하면 글자체중의 단자에 대한 재이용의 권리를 잃게 되며 타인이 글자체 단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는 것은 겉으로 보아서는 완벽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글자체 산업의 발전을 엄중히 저애하게 된다.[22]

(3) 사회공중의 이익과의 모순

컴퓨터 글자체 관련 문제에 있어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보호로 가능한 저작물 유형에 대해 논의되는 외에도 컴퓨터 글자체를 보호해주면 사회

20) 陶鑫良、张平：“具独创性的汉字印刷字体单字是著作权法保护的美术作品”， 载于《法学》2011 年 第 7 期。

21) 韩佩娆：“计算机中文字体单字与字库的版权保护”， 华南理工大学 2013 年硕士论文。

22) 张玉瑞：“把字体当作数据库很离谱”， 载于《经济参考报》2012 年 8 月 29 日第 006 版。

공공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공공이익에 손해를 준다는 학자의 관점: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에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해준다면 자칫하여 “매 글자마다 비용을 받고,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회공공 이익에 해가 되는 글자에 대한 독점의 국면을 초래하게 된다.[23] 한자는 사회 공유 재산에 속하며 글자체 디자인은 글자체의 정보전달 및 교류소통의 주요기능을 개변하지 않았기에 만약 컴퓨터 글자체에 배타적인 저작권보호를 해준다면 문자가 공공재산으로서의 공공영역이 감소하게 된다.[24] 또한 이는 사람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엄중하게 제한하기에 컴퓨터 글자체 단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회대중의 이익에 손해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학자의 관점:

첫째, 컴퓨터 글자체에 저작권적 보호를 해주는 것은 사회공중의 정보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람들의 사상표현도 제한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지 사상 즉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는 이론(아이디어 및 표현 이분법)에서 분석해보면 비록 한자의 필획구조가 고정적이긴 하나 그 표현형식은 아주 많다. 중국에서 현재 몇 백 가지의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사회공중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체가 있는데 이는 현재 중국 총 글자체수의 95% 도 넘는다.[25] 예를

23) 张玉瑞：“论计算机字体的版权保护”，载于《科技与法律》2011 年第 1 期。

24) 黄武双：“实用功能排除了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的可能性”，载于《法学》2011 年第 7 期。

25) 陶鑫良、张平：“具独创性的汉字印刷字体单字是著作权法保护的美术作品”，载于《法

들면 “송체”(宋体), “해체”(楷体) 등이 있다. 무료 글자체를 사용하여 감정표현 및 교류소통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유상 글자체를 선택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글자체 실용성을 보장한 기초에서 글자체의 예술적 심미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독창성이 있는 글자체의 가치를 체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글자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어야 하며 글자체의 창작자의 권익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컴퓨터 글자체에 저작권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마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은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는 불필요한 것이다.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대규모의 권리침해 국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중 권리제한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제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사회공중이 컴퓨터 글자체를 사용함에 있어 공정이용에 해당되면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정책과 법률방면에서의 적합한 선택이다. 이 외에 묵시적 허가 합의도 광범위한 권리침해 위기를 피면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에 저작권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사회공중이익에 엄중한 여향을 끼친 다는 관점은 설득력이 없다.

学》 2011 年第 7 期。

2. 국제조약 및 기타국가 연구 현황

현재 세계적으로 컴퓨터 글자체에 대해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글자체에 대한 보호조치는 각각 다르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은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비엔나 조약 >이 있으나 아직 체결국가가 부족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 여러 나라에서 이미 글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글자체가 독창성을 만족하여 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이중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와 산업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인쇄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6)]

독일[27)]에서는2004년 디자인법을 개정하면서 “typeface”를 물품으로 정의 지음으로서 글자체를 디자인법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글자체가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보통 문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글자체 보다는 탁월성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성에

26) 崔国斌：《单子字体和字库软件可能受著作权法保护》，《法学》2011 年第 7 期

27) 王 迁：《网络环境中的著作权保护研究》， 法律出版社 2011

대한 요구가 높다.

미국[28]에서는 신규성이 있는 글자체 디자인은 디자인특허로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통상의 글자체 디자인과는 현저하게 상이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기에 디자인의 등록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이 외에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폰트의 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글자체를 저작물로 인정 해주지 않기에 폰트 프로그램 운행 결과물인 글자체는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본에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물품성에 대해 요구하는데 글자체는 물품 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여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29]

한국에서 저작권법에는 글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대신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으로만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글자체 보호에 관한 함성이 높아지자 2005년에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보호법 으로 보호하고 있다.[30]

---

28) 李明德：《美国版权法与字体、字形和字库》，《电子知识产权》 2011 年第 6 期

29)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제 19 기

30) 정상조● 박준석 편저,[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

3. 논문 연구 시작점 -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법 보호

필자는 중국의 컴퓨터 글자체 관련 문제를 해결 하려면 우선 기타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 하면서 자국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현재상황에 알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어떠한 보호방식을 선택 할 것인가, 단일한 보호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호방식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현재의 법률 정책에 근거하여 입법 및 사법 비용과 산업의 발전추세와 특점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관련 입법조건과 법률 체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그대로 도입시키면 자국의 현실과 법률의 모순을 야기한다.

중국 컴퓨터 글자체의 발전은 법률과 정책의 보호가 매우 필요함을 고려하여 컴퓨터 글자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 컴퓨터 글자체의 법률속성을 분석하면 컴퓨터 글자체가 감정을 전달하는 실용적인 특징이 있기는 하나 글자체를 디자인 하는 목적은 사회대중에게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즉 글자체 디자인의 실질은 저작권법이 강조하는 “예술성”을 돌출한 것이지 외관디자인이 강조하는 “실효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컴퓨터 글자체는 디자이너가 한자의 미적가치를 추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외관디자인이 보호하는 내용과 일치하다. 기초 한자구조를 제품에 비유 한다면 컴퓨터 글자체는 한자의 외부 포장과 같고 한자에게 옷을 입힌 것

과 같으므로 외관을 미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디자이너의 노력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나하나 가공하여 생성된 산물이고 자기만의 특정된 모양새와 심미적 가치가 있고 공업응용에 적용할 수 있고 매개 단자가 모두 특허권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응당 외관디자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31]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자의 형태구조가 고정 되였기에 글자체 단자가 외형 디자인이 규정한 절대적 신규성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재 컴퓨터 글자체 관련 저작권의 인정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다: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은 각기 독립적으로 권리가 있는 객체 인가 아니면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향유하는 객체인가?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보호방식과 보호유형은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는가? 컴퓨터 글자체와 단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유형의 작품에 속하는가? 만약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면 대중의 이익에 영향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컴퓨터 글자체 보호 내용은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 등 세 가지 방면에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서예작품의 성질과 유사하게 컴퓨터 글자체도 한자 서예의 표현 형식으로서 글자체의 디자인이 비교적 독특하고 일정한 독창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컴파일

31) 李明德主编：《知识产权法》，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7 年版第 201－203 页。

러와 전용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는 선정한 글자체를 응용프로그램에서 전용하여 호출할 수 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본 논문은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법 보호를 논문 연구의 중심으로 하여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일련의 문제를 일일이 논술하여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 보호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명백히 논증할 것이다. 다만 필자가 저작권법적 보호가 현재 컴퓨터 글자체를 보호해줄 가장 합당한 방법 이라고 제기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현존하는 컴퓨터 글자체의 관련 법률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 글자체 문제는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필자는 본 논문의 뒷부분에서 저작권법 보완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것이다.

제3절 연구 문제와 연구의 방법

1. 연구할 문제

(1)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문제

논문은 법률제도, 산업발전, 글자체의 가치 및 지식재산권 이익평형의 원칙과 노동이론 등 방면에서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글자체 도구의 창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논증한다.

(2)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의 합리성 문제

본 논문은 저작권법 중 “작품”의 함의와 “독창성”에 대한 요구에서 부터 분석하여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가능성을 연구한다. 이러한 것이 문학, 예술 및 과학영역에 속하며 독창성이 있는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은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음을 제기한다. 그중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통해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예술성과 실용성이 관념상에서의 분리를 실현할 수 있다

는 것을 분석하고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구비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3)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적용과 제한

논문에서는 먼저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적 보호에 있어 초래하는 일부 문제를 제기 한다. 예컨대 일부 학자들은 “문자 독점”의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때문에 본 논문은 지식재산권법의 이익평형의 원칙에서 부터 시작하여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저작권에 제한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공정 이용, 권리소진 등 권리제한제도가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서의 적용을 분석한다.

(4)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제도의 건의

본 논문은 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글자체 보호 패턴을 모색하고 중국내 학술계에서 컴퓨터 글자체 보호방식에 대한 논쟁에 근거하여 중국내 컴퓨터 글자체의 보호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률보호 건의를 제기한다.

2. 연구의 방법

(1) 법해석학의 연구 방법: 문자의 함의 설명, 목적 설명, 대조적 설명 등 법해석학의 방식으로 저작권제도중의 작품, 분리가능규범, 독창성 등 함의의 내용, 구성요소 및 응용영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함의와 외연을 확정한다.

(2) 비교연구의 방법: 논문은 영국,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등 국가의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사법실무와 비교하고 분석하여 제도적 요소의 배경을 비교하고 모색하여 중국의 법률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건의를 제시 한다.

(3) 문헌자료 연구 방법: 컴퓨터 글자체 관련 법률문헌과 공개 발표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분석 성과를 참고하는 기초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기한다.

(4) 판례분석의 연구방법: 논문은 중국의 근 몇 년간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사건중 대표적인 판례를 정리하고 본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중점에 대입시킨다. 사건에 대한 연구와 전형적 판례의 사법심사 맥락 및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유 등에 대해 파악하고 사법실무에서의 논쟁 이슈에 대해 정리하여 본 논문의 연구의 목표성과 실용성을 더한다.

(5) 법 경제학의 연구방법: 법 경제학에 관한 연구방법의 중심은 경제학의 관련 연구방법을 운용하여 법률제도 문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글자체 관련 법규에 대해 연구하는데 글자체 산업의 보호와 공공제도의 균형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경제학 관련 방법을 운용하여 글자체 산업의 효익과 사회 효익 사이의 균형관계를 모색한다.

제2장 컴퓨터 글자체 산업과 보호필요성

제1절 컴퓨터 글자체의 개념

1. 글자체(字体)[32]

중국 한자 사전에는 “글자체”에 대한 해석을 3가지로 하고 있다.

① 동일 종류 문자의 다른 자형(字形/글자 모양), 예컨대 “微软雅黑 마이크로 소프트 야헤이 (흑체의 일종) ”,“华文宋体 화문송체(송체의 일종)”,“华文仿宋 화문방송체(송체의 일종)”와 인쇄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송체 (宋体) ” “해체 (楷体) ” 등이 있다. ② 유명한 서예가들이 인도하는 선명한 특색을 띠는 서법유파, 예컨대 “이안체 (颜体) ”, “광초 (狂草) ”[33], “유체 (柳体) ” 등이 있다. ③ 글자의 형태구조, 예컨대 글자가 고르다는 등.[34] 이러한 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필기체든지 인쇄체든지 모두 글자의 풍격, 특징과 개성을 집중적으로 표현 하였으며 풍격이 유사한 일종의 “체”의 집합으로서 모두 글자체 이다.

실제로 글자체는 글씨를 쓸 때 글씨의 편방과 부수 및 구조를 개변하지 않는 전제에서 일정한 규율과 특점에 따라 “一(횡), 丿(곡자), 丨

32) 한국에서 “견해에 따라서는 “자체”와 “서체”를 구분하여 자체는 문자를 이루는 기본적인 골격, 즉 한자에서의 점, 횡, 종, 곡자 등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서체는 자체를 기초로 문자를 표현하는 양식, 특징, 경향, 증이 일관되게 형성된 것, 즉 한자에서의 행서, 초서 및 활자에서의 명조, 고딕, 이탤릭체, 로마체 등이라 하고 있다.” 정상조• 박준석 편저,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 p299 에서.

33) 광초: 한대(汉代) 서법가 장지 (张芝) 가 창시한, 아주 흘려 쓰는 초서.

34) 李想：“计算机字库的可版权性问题研究——基于中美案列对比的视角”, 载于《科技与企业》2009 第 5 期, 第 81 页。

(종), 丶(점)"등 필획에 대해 창조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필획과 선 굵기의 변화, 편방과 부수의 위치 배치가 차지하는 비례에 대해 조정 하는 등 방식을 통해 창조후의 글자들이 같은 풍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격과 양식이 바로 "글자체"이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글자체는 어떠한 글자집합의 총체적인 풍격(즉 통일적인 디자인 스타일)이고[35] 글자체가 체현한 특징은 이 집합 속의 모든 개별 글자 즉 단자에 까지 피복된다. 다시 말해 모든 단자는 이 글자체의 "체" 즉 풍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

(1) 컴퓨터 글자체

컴퓨터 글자체는 글자와 컴퓨터의 결합으로 생성된 산물로서 필기체나 인쇄체에 비해 특수성이 있다. 현재 말하는 컴퓨터 글자체는 외국어 글자체, 중문 글자체, 관련 문자부호의 전자 문자글자체에 관한 집합체로서 일반 대중들의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제품에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부분이다. 컴퓨터 글자체의 제작과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글자체 디자이너가 직접 종이 또는 다른 도구에 자신이 표현하려는 글자를 창작하여 써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필 원고이다. 이러한 친필 원고는 스

35) 孙建伟："论字体与字形"，载于《南阳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2012 年第 4 期，第 59 页。

캔하고 디지털화 및 수정을 통해 동일한 풍격과 특징을 체현하는 자형군(字形群)을 형성한다. 다른 한 가지는 직접 컴퓨터에서 창작하고 조정하고 일련의 프로그램 코드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이든지 컴퓨터 글자체는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 글자체의 디지털화 된 표현 형식이다.

컴퓨터 글자체는 이진법의 데이터로 하드 디스크에 저장 되어있으며 프로그램에 의해 전용 되여 필기체 또는 인쇄체의 형식으로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난다.[36]이러한 글자체는 예컨대 “염체(颜体)”, “구체(欧体)”[37]와 같이 오래 동안 전해져 내려온 서법대가의 예술글자체일 수 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야헤이(微软雅黑)”[38], “송체(宋体)”, “해서체(楷体)”와 같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쇄 글자체일 수 도 있으며, “꿔찡밍체(郭敬明体)”[39], “쉬찡레이체(徐静蕾体)”[40]와 같이 개인이 창작하고 글자체 기업과 합작하여 제작한 글자체일 수 도 있다.

한 가지 글자체를 만드는 대에는 먼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디자인이 있어야 하고, 다음 디자이너가 매개 글자의 필획에 대해 조정하고, 컴퓨터 기술자가 기술수단을 통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

36) 张平：“再谈计算机字体的法律保护”, 载于《知识产权》2011 年第 5 期。

37) 欧体：당대(唐代) 서예가 구양순(欧阳询)과 그의 아들 구양통(欧阳通) 의 필체

38) 微软雅黑：흑체의 일종

39) 郭敬明: 중국 이름 있는 소설가, 감독.

40) 徐静蕾体: 북대방정 회사가 연예인 와 합작하여, 의 필기체를 사용하여 제작된 컴퓨터 글자체

그램을 조정하고 마지막에 판매부문에서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장하고 홍보한다. 그 상세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글자체 디자이너가 창작적으로 글자체를 디자인 하여 원고를 만들어 낸다. ② 글자체 디자이너가 자신이 그린 글자체의 원고[41]를 스캐너로 읽어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만든다. ③ 폰토그라퍼 등 글자체 파일 제작 프로그램으로 이를 불려 들여 글자의 윤곽선을 자동적으로 추출한다. ④ 추출된 윤곽선을 좌표 값(이를 "제어 점 control point" 또는 "준거점 reference point"이라 한다)을 변경시킴으로써 글자본 또는 스캐닝 과정에서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글자체가 효율적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컴퓨터 특성에 맞도록 수정한다. ⑤ 완성된 글자체 디자인을 각 응용프로그램에 맞는 포맷으로 전환하고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힌팅(해상도가 낮은 모니터 등에서 글자 모양을 제대로 보이게 하기 위한 기법) 또는 커닝(인접하는 글자에 따라 글자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기법) 정보가 부가될 수 있다.[42] 글자체 업체에 있어 글자체를 출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기업이 하나의 폰트 제품을 연구하고 출시하려면 보통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대량의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2) 단자(单字)

41) 원고: 여기서의 원고를 보통 "글자본"이라고도 하는데 가로, 세로 5cm 정도 크기의 종이 위에 디자이너가 한 그자씩 직접 디자인한 글자를 말하는에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도"라고도 한다.

42) 임원선: "글자체의 법적보호", <계간 저작권> 2001 가을호.

단자(单字)는 하나의 글자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개별 글자, 단일 글자이다. 폰트 중 매개 글자는 폰트의 구체적 표현이고 실제 응용이다. 실제 생활에서 사회공중이 폰트를 사용할 때 전체 폰트 중 모든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단자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단어를 묶어 사용하는 것이다.

(3) 폰트 프로그램

폰트 프로그램은 글자의 외곽정보를 벡터화 된 수치 내지는 함수로 구성된 폰트 데이터에 따라서 출력 기종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이다.

폰트 프로그램은 폰트의 전용 도구이며 폰트 운용과 표현의 기술적 보장이다. 글자체 기업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실제로는 폰트 프로그램이다. 폰트와 단자는 모두 프로그램에 내치되어 있기에 프로그램의 전용에 의해서만 사용, 출력, 디스플레이 및 인쇄가 가능하다.

제2절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현황

컴퓨터 한자 조판기술이 나타나고 기존의 인쇄기술을 대체하여 컴퓨터 업계에 널리 보급되고 응용 되어왔으며 20세기 말은 중국의 컴퓨터 글자체 산업은 전성기이다. 20세기 90년대 중국에 글자체 기업이 대폭 늘어나 글자체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이 몇 십 개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신기술을 인입하여 폰트를 제작하여 200여 가지 예술풍격을 띠는 400여 가지 폰트를 연구개발 해냈으며 글자체의 시장화를 형성하였다.[43]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나타났다. 당시 중국에는 컴퓨터 글자체 관련 법률보호 제도가 없었기에 불법복제가 심했고 글자체 기업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수호할 수 없었다. 기업에서 글자체 연구개발에 들인 대량의 시간과 자금 투입에 비해 그 수익은 없을 정도에 가까웠고 전체 업계가 곤경에 처하게 되였으며 대부분 기업은 부도가 났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 산업은 짧고 짧은 몇 년의 흥성시기를 거치고는 심각 타격을 받아 현재는 극도로 위축 되였다. 현재 중국의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발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43) 张书乐、陈晓霞："字库之战"， 载于《法人》， 2012 年第 8 期。

1. 글자체 종류가 적다

관련 수치에 의해 보면 미국, 한국, 일본 등 나라에는 모두 방대한 컴퓨터 글자체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중문 글자체가 3000여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도 송체(宋体)만 해도 300여종이 넘고 대부분 한자를 위주로 하고 있다.[44] 중국 대륙지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폰트는 421가지, 중국 대만지구에서는 296가지, 중국 홍콩지구에서는 106가지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과 비교할 때 중국은 디자인이나 생산방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

2. 종업인원이 적다

현재 중국은 글자체 개발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10명 이상의 글자체 디자이너가 있는 기업이면 "대형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의(汉仪), 방정 (方正) 화문, 화광 등 몇몇 기업만 남아있다.[45] 하지만 일본은 글자체 디자인 방면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만 해도 20여개가 넘는다.

---

44)搜狐资讯："保护计算机字体就是保护创新"，roll.sohu.com/20110617/n310492221.shtml，2018 년 9 월 10 일 방문

45) 《深圳特区报》，《盗版致规模字库企业仅剩 5 家》2012 年 10 月 24 日，第 C03 版。

3. 불법 복제(무단 복제)로 인한 권리침해가 엄중하다

글자체에 대한 사용은 대부분 폰트 프로그램 대한 전용에서 이루어진다.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글자체 디지털 형식의 캐리어로서 복제하기 쉽다는 것이 가장 선명한 특징이다. 글자체 개발자가 아무리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고 무료 프로그램과는 경쟁하기는 힘들 것이다. 방정(方正)회사를 예로 들면, 웹사이트에 "방정 (方正) " 만 입력하면 몇 만 개의 다운로드 링크가 뜨게 되는데 사실상 방정회사는 여하한 웹 사이트에게도 폰트의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이러한 불법복제 행위 때문에 글자체 산업의 원가와 수익이 평형을 잃게 되여 발전하기 힘들다. 중국의 글자체 업체 북대방정 (北大方正) 은중국 시장을 개발하고 몇 백가지 소수민족언어문자를 포함한 폰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판매액이 국내시장의 5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나 수익은 높지 않다.

국과관련표준에 따르면 하나의 완비된 폰트는 6763개의 간체와 682개의 기타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디자이너는 반복하여 매개 글자부호, 자모와 단자를 수정하면서 디자인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제작하는 주기가 비용도 많이 든다.[46] 하지만 영리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사실 컴퓨터 글자체가 합리적인 법적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글자체의 권리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글자체의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법률구제를 청구할 수 있

[46] 陶鑫良："印刷字体单字与字库软件的著作权辨析", 载于《知识产权》2011 年第 5 期。

다.

4. 외국 글자체 업체의 시장 점유

비록 중국의 글자체 산업의 디자인 실력과 생산 실력이 기타 나라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컴퓨터 글자체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다. 많은 외국 글자체 업체는 다른 방법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폰트 회사는 중국어 폰트와 연관된 검측을 통과시키고 중국에서 일정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외국은 글자체 산업 발전이 이르고 업계 자본의 축적이라든지 인재의 비축이라든지 모두 중국보다 우세가 있다. 또한 외국 대부분 국가들은 모두 컴퓨터 글자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명확한 법률적 보호가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내 글자체 산업의 이익공간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법률적 보호가 없고, 자금에 문제가 생기고, 인재가 유실되는 등 원인으로 인해 중국내 글자체 기업은 대부분 부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외국 글자체 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중국 글자체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을 한다. 중국 홍콩의 "유쯔중문(优质中文)" 폰트 생산회사는 미국의 대형 문자 디자인회사 몽나회사로 부터 인수합명 되었다. 그들은 중국에서의 자회사를 통해 자신이 생산한 중문 글자체를 판매하고 있다.[47)]

제3절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보호 필요성

1. 법률제도

중국은 1992년에 <베른조약>의 제93번째 성원국으로 국내에 근거할 법률이 없을 경우 국제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베른조약> 과 <TRIPS 협정> 에는 모두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다. <베른조약> 에서는 기타 협정의 특수규정이 없는 한 성원국은 본 조약 중 관련된 문학 예술적 저작물 저작권 보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컴퓨터 글자체는 문학 예술적 저작물이며 중국은 성원국으로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컴퓨터 글자체를 보호 할 의무가 있다.

개발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에서 컴퓨터 글자체의 발전시간이 비교적 짧고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관련 분쟁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결

47) 参见《字库相关情况行业问答》，http://www.visionunion.com/article.jsp?code=201210230078，2012 年 10 月 24日。

과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형세에 비추어 중국은 관련 법률규정을 제정하고 보충하여야 하고 글자체 업계에서도 하루빨리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를 바라고 있다.

2. 산업발전

현재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발전은 위태롭다.

첫째, 불법복제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엄중하여 글자체 산업의 생태계유지가 어렵다. 보통 컴퓨터는 폰트 프로그램의 운행을 통해 컴퓨터 글자체의 운용을 보장한다. 폰트 프로그램은 복제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글자체 개발자가 가격을 아무리 낮춘다 해도 불법 복제된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인재의 유실이 엄중하다. 중국에서 초기에 세워진 글자체 기업들 중 대부분이 이미 파산 되였고 현재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은 방정(北大方正), 한이 (汉仪) 등 5개 기업밖에 없으며 글자체 디자이너도 10명 좌우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내에서 전문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은 100명 도 되지 않는다.

셋째, 외국 글자체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여 중국 글자체 산업에 경쟁 압력을 더해 주었다. 외국 글자체 산업은 자신의 자금과 기술적 우세로

직접적인 디자인 회사, 인수합병과 대리가공 등 방식을 통해 중국 글자체 시장에 진입한다. 이는 결국 경쟁력이 낮은 중국기업에 큰 타격을 준다.

문화산업의 발전은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는 산업을 촉진하는 법률제도이다.[48]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저작권 보호제도를 보완하면 글자체 창작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되고 이러한 권익이 보호되면 창작자들은 일정한 재산권이라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창작자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내주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창작자가 이익을 얻으면 자연적으로 창작열정이 생긴다. 글자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기제가 충분히 작용을 발휘해야 만이 기업의 투자와 디자인 인재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효과적인 컴퓨터 글자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건설하고 사법실무에서의 의거를 명확히 하여야 사회가 글자체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의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줄 수 있으며 나아가 중국 한자가 포함하는 물질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글자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48) [奥]彼得•德雀斯：《知识财产法哲学》，周林译，商务印书馆 2008 年版。

3. 컴퓨터 글자체의 가치

(1) 심미적 가치 & 예술적 가치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문자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한자의 매개 글자는 모두 고정적인 필획구조가 있다. 한자의 구조가 고정적인 특징에 기초하여 컴퓨터 글자체를 디자인 할 때 디자이너는 하나의 고정적인 틀에서 창조적인 사유를 발휘해야 하며 컴퓨터 글자체가 본래의 글자형태와 식별가능성을 보존하는 기초에서 특징을 표현하고 최대한도로 독특한 풍격과 미감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가 발전되고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 글자체에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사람들은 컴퓨터 글자체를 사용하여 정보교류를 할 수 있고 풍부한 감정색채가 담긴 컴퓨터 글자체를 이용하여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선명한 특색과 미감을 갖춘 컴퓨터 글자체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각적 및 문화적 향수를 가져다준다. 예컨대 방정회사 (北大方正公司) 에서 만들어낸 방정 “치안체(倩体)”글자체를 보면, 디자이너는 폰트 중 매개 글자의 굵기, 구조 및 필형에 대해 디자인하고 수정하여 일종의 유연하고 아름다우며 화려하고 부드러운 글자체 풍격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었다. 글자체 단자는 외형상 늘씬하고 아리따운 소녀가 춤을 추는 뜻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창조적이고 예술적 느낌이 나며 감성적인 컴

퓨터 글자체들은 사람들을 도와 기본적인 정보교류를 진행 하는 외 에도 사람들이 글자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쾌함과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글자체에도 풍부한 문화적 가치와 심미적 의미를 부여한다.

(2) 상품 가치 및 상업 형상의 제고

국가, 기업 및 브랜드사이의 시장경쟁은 경제일체화 및 문화세계화의 진척에 따라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기업이 선명한 특색을 띠는 문화 또는 상업형상을 창조하려면 격렬한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시장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경쟁조치는 대부분 국가나 기업 및 브랜드가 서비스범위를 확대하고, 제품을 풍부히 하고, 전체 서비스 수준과 제품 품질을 제고하는 등 방면에서 자신의 시장적 지위를 제고 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글자체의 다원적 사용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는 선명한 특색이 있는 컴퓨터 글자체를 사용하여 브랜드 형상의 홍보와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첫째, 상업적 또는 문화적 브랜드 logo를 특색이 선명한 컴퓨터 글자체로 디자인할 수 있다. 브랜드 특징을 새롭고 색다른 글자체로 표현 한다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대중들을 마음속으로 부터 브랜드에 대해 호감이 생기게 하고 구매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나게끔 할 수 있다.

둘째, 문자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라들이 교류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해주기 위한 것이다. 상업 또는 문화 브랜드를 홍보함에 있어 문자의 이러한 기능을 빌어 컴퓨터 글자체의 새롭고 아름다운 디자인 풍격과 결합시켜 브랜드의 특색을 직접 컴퓨터 글자체의 문자 형식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홍보 방식은 브랜드 문화와 기업 문화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미감을 주어 대중들이 기업의 문화와 형상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컴퓨터 글자체의 광범위성과 독특성을 빌어 브랜드의 홍보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독특하고 창조적인 컴퓨터 글자체를 통해 상업 또는 문화 브랜드의 사상을 전달하고 브랜드가 대중들 마음 속에서의 부가가치를 더해주며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우세를 차지하게끔 도와준다.

(3) 문화 창조산업과 저작권 무역의 발전에 유리

중국의 한자 글자체는 하나의 틀에 고정되어 있어 매개 글자마다 표준적인 필획과 구조로 써야 하지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 디자이너가 창작을 함에 있어 창조적 사유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된다. 이는 컴퓨터 글자체를 창의적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 난도가 크고 컴퓨터 글자체의 독특성과 희귀성을 충분히 체현하였다. 컴퓨터 글자체가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글자체 그 자체의 잠재적인 시장가치 매우 크다. 또한 컴퓨터 글자체가 상업 및 문

화 브랜드의 홍보에 추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컴퓨터 글자체는 전 세계 범위에서 컴퓨터 글자체 창신 디자인을 대표로 하는 문화 창조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예컨대 현재 세계 각지에서 모두 컴퓨터 글자체 창신 디자인과 관련된 문화 창조 산업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의 저작권 무역도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흥기로 인해 신속하게 발전되고 있다. 디지털화의 현대기술과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컴퓨터 글자체는 초기의 상상 디자인으로 부터, 글자체 디자인이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후기에 데이터화 하여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는 산업과정을 형성하여 매개 절차를 세분화 하면 각각 하나의 전문화된 시장거래 환경으로 발전되었다. 전 세계의 저작권 무역에서 컴퓨터 글자체 디자인 원고와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 이 두 가지 절차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 두 가지 절차에서 창조성이 비교적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록 전기의 디자인 작업에 많은 노력과 물력을 투자 하였지만 일단 일정한 모양이 갖추어 지면 전 세계의 저작권 무역에 대량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보면 문화 창조 산업의 보호기제가 완전하여야 만이 디자이너의 창작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창신 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저작권 무역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4) 다원문화의 전파와 인류문명의 연속을 적재

예전부터 사람들은 문자는 인류문명을 전파하고 적재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보고 있다. 문자의 가장 직관적인 부분으로서 글자체도 문자를 수반하여 인류문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전달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기의 사람들은 열독, 필기 습관 및 과학기술 발전의 수준에 모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자체 형식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컴퓨터 글자체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산물로서 표현형식이 다양하고 사용방식이 간편하다는 선명한 특징이 있다. 표현형식이 다양한 것은 다양한 이익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사용방법이 간편한 것은 정보의 전파가 더욱 적시 적이고 일반 대중이 컴퓨터 글자체의 사용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더욱 잘 공유하고 받아들이게 하였다. 여러 가지 선명한 특징과 미감을 갖춘 컴퓨터 글자체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시각적 향수를 주고 있다. 이러한 창조성, 예술성과 감정적인 성질을 모두 포함한 컴퓨터 글자체는 사람들을 도와 가장 기본적인 정보교류를 하는 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류문명의 전파범위를 확장 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인류문명이 점차 성숙되면서 사회에서 파생되는 문화성과도 더욱 풍부해 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컴퓨터 글자체는 인터넷 시대의 흔적으로서 외형이 아름답고 디자인이 독특하며 창조성이 다원화적 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류문명이 발전하고 사회생활이 변화되는 과정에

서 컴퓨터 글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와 중요한 지위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는 상응되는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중국은 관련 법률의 맹점을 더욱 보완하여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을 보호하여 중국 컴퓨터 글자체 관련 종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4. 지식재산권 이익평형의 원칙

디자이너가 글자체를 디자인 하고 폰트를 제작 해내는 것은 일종 지적성과에 속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디자이너는 자신이 디자인한 글자체와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서술하게될 “방정 v. 뽀오우지에 회사” 사건에서 방정회사는 “치안체(倩体)” 글자체의 제작자로서 뽀오우지에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방정 회사에서 제작한 “치안체(倩体)” 글자체를 상품의 외부포장에 사용한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다. “치안체(倩体)” 의 저작권은 방정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중국 관련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사회공중과 글자체의 디자이너 및 개발자의 합법적 권익이 상호 충돌되는데 이러한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고 양자의

관계는 조절되어야 한다.

그중 이익평형의 원칙이 이러한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이익평형 원칙은 지식재산권법의 중요원칙 중 하나로서 정의와 공평의 가치개념을 포함하고 함의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이 중요원칙은 지식재산권법에 반영되는 모순과 충돌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글자체 사용자인 사회공중과 컴퓨터 글자체 디자이너간의 충돌을 조정함에 있어 입법자는 충분히 이익평형의 원칙을 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컴퓨터 글자체는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새로운 지식재산권 영역을 이끌고 있다. 또한 컴퓨터 글자체는 하나의 새로운 지적성과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 회사의 분쟁은 사회적으로 광범한 관심을 받았으며 실무계 와 학술계에서 모두 큰 영향을 일으켰다.

법률은 일정한 안정성을 보존하여야 하고 빈번하게 변동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령석개[49]하여서는 더욱더 아니 된다. 하지만 사회생활은 변화되기에 법률은 사회생활의 발전에 뒤처져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엄격히 사회생활에 뒤처진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면 법률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큰 걸림돌로 될 수 있다.[50] 때문에 입법자가 신생사물로 인한 법적문제에 처했을 때 이익평형의 원칙에 근거하여 신생사물의 모든 관련자간의 이익평형에 유리한 법률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49) 조령석개: (朝令夕改) 아침에 공포한 법령이 저녁에 바뀌다. 정령이나 주장을 마음대로 바꾸어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다. 변동이 너무 잦다. [네이버 사전]

50) 张文显：《法理学》，高等教育出版社，2008 年版。

컴퓨터 글자체와 글자체 단자를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귀속시켜야 컴퓨터 글자체 창작자화 사용자 및 사회공중이익간의 평형을 실현할 수 있다.

5. 지식재산권 제도의 노동가치 이론

컴퓨터 글자체와 폰트의 창작과정은 매우 복잡한 지적노동 과정이다. 그 과정은: 디자인 이념을 확정하고, 글자체 원고를 제작하고, 디자인 원고를 스캔하여 데이터화 처리하고, 글자체의 디자인에 대해 검사 및 수정하고, 마지막에 데이터화된 문자를 폰트 프로그램으로 제작한다. 노동가치 이론에 입각하여 창작성적인 지적노동이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지적 노동을 통해 지적인 노동성과를 형성하면 중국 관련 법률제도에 근거하여 그 재산권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조례에 따라 이러한 지적 노동성과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노동가치 이론은 고전 자연법 철학 이론사상의 내용에서 기원 되였다. 노동가치 이론의 핵심은 인권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사상가들은 고전 자연법철학의 이론기초에 근거하여 인류의 평등과 자유 및 사람의 생명, 재산의 안전을 창조하고 법률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창작자가 자신의 지적노동으로 성과를 창조해냈고 이러한 성과는 당연히 자신에게 속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상응되는 제도로 디자이너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을 통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창작자가 자신의 노동성과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국이 확정한 재산권은 종류가 풍부한데 그중 가장 보편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법은 창조성적인 지적 노동성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창조자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창조성적인 지적노동의 성과로서 컴퓨터 글자체의 창조자는 컴퓨터 글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3장 컴퓨터 글자체 저작물성

제1절 컴퓨터 글자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미국은 디지털 정보화 대국(大国)으로서 컴퓨터 글자체의 권리침해 사건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 미국에서는 신규성이 있는 글자체는 디자인특허

로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통상의 글자체 디자인과는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기에 디자인의 등록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이 외에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다. 또한 폰트의 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글자체를 저작물로 인정 해주지 않기에 폰트 프로그램 운행 결과물인 글자체는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Adobe 와 SouthernSoftware Inc. (SSI) 사건은 미국 사법 실무에서 처음으로 폰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한 사례이다.

Adobe 회사는[51]: SSI회사가 복제한 폰트 자형(字形)에 대해 다시 수정을 하였으나 글자체의 핵심 내용은 개변하지 않았다. 직접 복제한 핵심적 내용이 바로 Adobe회사가 글자체를 설계함에 있어서의 주요 내용이며 글자체 자형(字形)의 특징이다.

SSI회사는[52] 자신이 Adobe회사의 글자체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고했을 뿐이고 자신이 제조한 글자체는 자기만의 브랜드 특색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판결은 SSI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1998년의 판결은 Adobe 폰트 프로그램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가 SSI에 의해 무단 복제 되었다고 하여 SSI기업의 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고 하였다.

51) 黄武双：《计算机字体与字库的法律保护：原理与判例》，法律出版社 2011 年版。

52) 黄武双：《计算机字体与字库的法律保护：原理与判例》，法律出版社 2011 年版。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창작하고 제조한 폰트 프로그램은 특유의 독창성이 있다. 디자이너가 참고 기준을 선택함에 있어 도형과 문자부호의 영향을 받지만 모든 참고 기준이 그런 것은 아니다. 코드가 참고기준의 영향을 받고 컴퓨터를 통해 재현된 도안에 의해 글자체 종사업자가 창조적 내용을 얻는다. 따라서 참고 기준에 대한 모든 복제는 문자표현에 대한 복제이며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복제임을 추리해낼 수 있다. 2. 실용적 기능이 참고 기준의 선택을 지배할 수 없다. 같은 도형과 문자부호의 창작방법이 다를 수 있다. 같은 도구와 데이터에 의해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두 명의 프로그래머는 똑같은 출력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얻어낸 결과는 동일한 참고기준이 아닐 수 있다. 여기에서 창조성은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법원은 Adobe회사의 폰트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작품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였다.[53] 그러므로 SSI회사의 권리침해 행위는 성립되고 확실히 실질적으로 Adobe회사의 폰트 프로그램의 코드를 복제 하였다.

정보화 시대에서 글자체 기업의 과학기술도 발전되고 있으며 벡터 폰트(vector font) 가 점차 전통적인 격자 폰트(lattice font)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하여 글자체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이 더욱 간편해 졌고

53) 이 외에 조사한데 의하면 SSI 회사가 Adobe 회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은 단지 절차적인 일차성 수정이였다는 것이 증명 되였다. 예컨대 단지 비례에 근거하여 글자체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등. 黄武双：《计算机字体与字库的法律保护：原理与判例》，法律出版社 2011 年版。

출력과 프린트의 효과도 더욱 좋아지게 되였다. 하지만 벡터 폰트의 구성을 보완 하는 데에는 지속적인 지적투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저작권법은 폰트 프로그램은 보호 하고 있지만 폰트에 포함된 글자체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54] 또한,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에서는 블록 글자체는 “회화, 도형 및 조각 작품”에 속한다고 규정 하였다. [55]

2. 영국

세계에서 최초로 입법으로 글자체를 보호한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글자체가 독창성을 만족하여 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이중보호를 받는다고 규정 하였다. 1998년 영국은 <저작권, 디자인, 특허 법안>을 공포 하였는데 이 법률에서는 글자체가 예술적 저작물과 동등하게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 하였다. 글자체가 도형을 구성할 수 있고 디자이너가 설계한 것이

54) 글자체 차체에 대해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 37 장 제 27 조 1 항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 하였다. 다음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없는 대상에 대해 열거 한 것이다: (a) 단어 또는 구(둘 이상의 단어의 결합), 예를들면 성명, 표제, 표어, 가정표지 또는 도형, 인쇄체 장식 변두리의 단순한 변체, 필법 또는 색조, 성분 또는 내용의 단순한 도표; … … (e) 글자체 자신. 转引自张玉瑞：《知识产权的若干基础和原则问题》，http://www.lawtime.cn/info/zscq/zscqwq/20111024113832.html. 2015 年 6 月 8日访问。

55) 미국 저작권법 제 101 조: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은, 평면적 및 입체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순수미술, 그래픽미술 그리고 응용미술과 사진, 판화 및 미술 복제물, 지도, 지구의, 도면, 도표, 모형 및 설계도를 포함한 제도를 포함한다. 이 저작물들은 그들의 기계적이거나 실용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형태에 있어서 예술적 솜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조에서 정의된 바대로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로 본다. Copyright Law of the University of America and Related Laws Contained in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Circular 92, Library Of CongressCopyright Office.p7.2010.

기만 하면 독창성의 여건에 맘족하기 매우 쉽다. 글자체에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안에서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한하였다. 예컨대 정상적인 프린트, 글 작성(글쓰기), 타자 등 작업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침해에 속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글자체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식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거니와 합리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영국법률은 여기서의 권리침해 책임을 판매자 또는 글자체를 생산한 자의 책임으로 귀속시켰다. 이처럼 사용자의 편리와 산업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인쇄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56] 저작권법을 통해 컴퓨터 글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글자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 주었다. 중국은 소비자가 글자체 및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권리침해와는 연관 없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일본

일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중문 폰트가 있다.[57] 그러므로 중국의 폰트저작권보호에 있어서 일본의 경험을 계시적으로 본 받을 수 있

56) 张　平：《再谈计算机字体的法律保护》，《知识产权》 2011 年第 5 期

57) 《汉语言文字产业陷入信息化时代维权困》，http://www.cnbeta.com/articles/90612.htm. 2018 年 8 月 1 日访问。

다.

일본에서의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물품성에 대해 요구하는데 글자체는 물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여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58]

첫째, 심미성(审美性)과 독창성 (独创性) 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현재 일본 저작권법에는 글자체 보호에 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 하지만 법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일부 요건에 부합되었을 때 저작권보호법을 통해 글자체를 보호한다. 이러한 조건이 바로 “미술적 감상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현저한 독창성”이다. “NAG글자체 사건 ”[59] 에서 인본 법원은 글자체는 일반 작품보다 더욱 높은 요구를 적용해야 한다고 견지하였다. 때문에 앞서 제기한 몇 가지 요구가 생겼다. 일본 최고법원에서는 글자체의 독창성을 약화 시킨다면 글자체의 미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자체가 정보를 전달하고 교류소통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때 복제, 인쇄 등 출판행위는 글자체 저작권자와 문자작품 권리자의 이중허가를 받고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한다. 문자 작품이 출판되고 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자를 사용할 때에는 글자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사회대중이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여 합

58)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제 19 기

59) “NAG 字体案件第一审“, 日本大阪地方法院 1997 年 6 月 24 日判决的平九 956 号判决书。

법적으로 글자체를 사용하고 문화발전에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위배된다면 전체 문화업계의 구성부분이 파괴 될 것이며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에도 영향된다. 따라서 일본 최고법원은 글자체가 현저한 독창성이 있고 미술적 감상의 표준에 도달해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요구하였다. 그중 “미술적 감상의 표준”이란 일반 대중의 심미적 요구에 부합되고 심미적 관념에 부합되는 미감(美感)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산업의 이익과 저작권법 설정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글자체의 보호는 다른 영역의 이익과 관련되기에 글자체에 대한 모든 조치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다시 말해 컴퓨터 글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독창성과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둘째, 다른 보호방법을 적용한다. 글자체는 특수한 존재이기에 일본은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성요건을 설정하였다. 불법 복제 사건의 발생에 대해 <일본 민법전>에서는 타인이 이미 갖고 있는 글자체를 표절, 생산 및 판매할 경우 동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불론 하고 일단 타인의 글자체를 표절 했다면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60] 일본 사법기관에서는 계속 동 조항에 의거하여 사건을 심사 하였다.[61] 이 외에 일본은

60)黄武双：《实用功能排除了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的可能性》，《法学》2011 年第 7 期，第 44 页。

61)“照相排字机用字体案”，日本大阪地方法院 1989 年 3 月 8 日判决的平元第 1307 号判决书。转引自前注 37，第 156-158 页。

글자체 산업의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경쟁방지법에서도 연관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프린트기계 제조 업계, 뉴스 업계, 인쇄업계의 기업은 글자체 창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상대방의 글자체를 사용한다. 해당 사건에서 글자체는 거래 가능한 무형의 제품으로서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때문에 도쿄 고등법원에서는 특정 글자체는 일본 부당경쟁방지법에서의 "상품"에 속한다고 제기 하였다.[62] 사람마다 알고 있는 외형특징의 글자체를 표절하여 타인이 표절한 사람과 글자체 창조자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하게끔 하는 행위는 부당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에 속한다.

4. 한국[63]

한국 저작권법은 컴퓨터 글자체나 폰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서예와 같은 손 글씨나 캘리그라피 등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64]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 법원에서도 서예가가 연구하고 체계화한 글씨체로서 작품화한 글씨체는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지적 및 문

62)"森泽字体不正当竞争案件", 日本东京高等法院 1993 年 12 月 24 日判决的平成第 594 号判决书。转引自前注 37, 第 142－155 页。

63)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제 19 기.

64)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

화적 정신활동의 산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는 창작이라고 판시 하였다.[65] 한국에서 이처럼 기능적 요소와 별개로 독립적 예술 특성을 인정받아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글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컴퓨터 글자체와 폰트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대상은 아니다. 한국 법원은 일반적인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는데, 그 이유로 "서체도안들은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었다.[66]

반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폰트'파일'(본 논문에서 말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하여, 폰트파일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

65) 대법원 1998. 1. 26. 선고, 97 다 59565 판결 - 축제; 서예가의 작품 속 글씨를 허락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 포스터, 소설 표지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6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누 563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 구 25075 판결 등.

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 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중략),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 값과 좌표 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67] 또한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 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68] 이처럼 글자의 모양인 '폰트 도안'(글자체,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확장 자가 "***.ttf" 인 형태로 컴퓨터에 설치 및 저장되는 '폰트 파일'(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69]

한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 무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폰트파일

67)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 다 23246 판결.

68)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 도 732 판결.

69) "예컨대 A 폰트 도안을 보고 종이에 베껴서 그림처럼 그려낸다면 이러한 행위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폰트저작권 침해 가 발생하려면 '파일'이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이처럼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은 부정하면서도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 작물로 보호하고 있어 우회적인 형태로 보호 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제 19 기.

역시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70년의 보호기간이 부여되며 침해 판단에서도 '업(業)'으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폰트 자체는 보호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폰트는 대부분 파일로서 컴퓨터를 통해 활용되기 때문에 침해 판단은 더 어려우며, 폰트 제작자는 자신의 폰트 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

폰트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 본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글자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업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대두되었기에 한국 정부는 2005년에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도안 자체를 디자인 권으로 보호하게 되였다.[70] 폰트 제작자가 해당 폰트를 한 벌의 글자꼴로 디자인 등록을 하면 디자인권리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간 도안 자체에 대해서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의 글자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자체를 등록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효과만 있을 뿐,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차단할 수는 없다.[71] 따라서 인쇄물 등의 창작물에 자신의 글자체가

70) 글자체란 "기 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이다.(한국 <디자인보호법> 제 2 조.)법률 제 7289 호, 2004. 12. 31.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71) 디자인보호법 제 94 조는 디자인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 용하는 경우”나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글자체의 생산 및 생산된 글자체의 유통행위에만 미치도록 하여 인쇄업계 등 최종

쓰였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72]

5. 외국 컴퓨터 글자체 보호 관련 종합 평가

각 나라에서 컴퓨터 글자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방법과 보호 내용이 모두 상이한데 보호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 입법 체계의 유효성, 전체성과 균형성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실정에 입각하여 컴퓨터 글자체의 법률보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위에서 서술한 요소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사용자는 등록된 글자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그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72) "이는 글자체 보호 및 효력의 제한 규정이 들어간 디자인보호법 개정 이유 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개정이유서에는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 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 며,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 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폰트를 제작하는 사업자 간의 복제를 막으려는 것이지 글자를 사용하는 자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폰트의 최종사용자에게는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 글자체를 복제해 '생산'하거나 파일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침해 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글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행위가 반드시 선행되므로 사전에 '생산'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복제 및 불법 사 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권의 침해는 업(业)으 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산업이나 경제활동과 관계없는 단순한 가정적·개인적 실시는 업으로서의 실시로 볼 수 없으므로, 서체 제작자로서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수월한 것이어서 디자인권의 효과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제 19 기.

존재하는 문제와 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권리자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며 보호방법이 다르고 권리자의 권리내용, 권리 이행방식 및 책임 부담방식도 모두 다르다. 만약 글자체 보호와 지식재산 보호를 하나로 융합 한다면 권리자는 충분한 신청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계약법으로 보호를 한다면 신청권은 상대적인 것이 된다. 만약 부당경쟁방지법으로 보호 한다면 권리자에 대해 보호를 하는 기초적 조건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활동이 상대방과 현저한 시장경쟁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는 정신적 권리를 포함하며 그 권리보호기간이 외관 디자인보다 길다. 외관 디자인(外观设计)을 놓고 볼 때 글자체 개발자 에게 있어 보호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독점성이 있다. 또한 다른 법률적 보호는 요구가 완전히 다르다. 예컨대 저작권법 보호를 택한다면 무조건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외관 디자인 보호를 택한다면 현저한 신규성을 보여야 한다. 다른 산업, 공익과 사적 이익 간에 창조를 격려하는 것과 거래를 추진하는 것 간의 조화도 글자체의 보호방식을 선택하는 결정적 요건이다. 권리자를 놓고 볼 때, 서로 다른 법률적 보호는 다른 측면의 이익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어떠한 유형의 보호를 선택하는지 또는 몇 가지 보호를 명확히 하는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가 어느 특수 단계에 본국의 제도에 대한 모색과 업계의 발전에 대한 평가와 관계된다.[73] 따라서 중국은 우수한 경험을 참고하고 중국 글

73) 张平、程艳："计算机字库产业发展与字体的版权保护", 载于《电子知识产权》2011 年第 4 期, 第 72 页。

자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최대한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중국 컴퓨터 글자체 관련 판례

1. 방정회사 v. 문성회사[74)]

(1) 사실관계

원고 방정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문성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방정란정(方正兰亭) 프로그램 V4.0" 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하고 2002년 9월3일 에 국가 저작권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증서를 발급 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의 라이선스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문성(文星) 2000 글자처리시스템V3.1" 프로그램에 "방정란정" 폰트 프로그램의 핵심기술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방정회사는 문성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방정란정" 글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 하였고 폰트 프로그램 좌표 수치 및 명령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74) 여기에서 원고는 북대방정회사 (北大方正公司)이고 피고는 화이팡 문성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 潍坊文星科技开发有限公司 이다.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기 위해 방정회사와 문성회사로 약칭한다. 详见北京市高级人民法院民事判决书 (2005) 高民终字第 00443 号民事判决书。

피고 문성회사는 컴퓨터 폰트는 엄격히 국가 관련 표준에 따라 개발하고 설계한 것이며 모든 문자를 처리하는 방면의 프로그램과 이 표준에 따라 조작을 집행한다. 또한 전체 컴퓨터가 출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폰트를 사용하며 출판인쇄 계에서 사용하는 글자체는 오래 동안 누적 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인쇄 글자체에 포함 되여야 한다. 하지만 인쇄체는 사외공공자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작한 글자체는 독창성을 구비하지 않았고 피고의 행위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 판시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심사하면서 “방정란정(方正兰亭) 프로그램 V4.0”은 개발, 설계에서부터 제작을 완성하기 까지 모두 원고가 독립적으로 창작하여 완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동 폰트의 글자 원고에 대해 설계하고 스캔입력하고 디지털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중에는 필연적으로 대량의 지적 노동을 포함하게 된다. 지적 노동의 성과이고 또 저작자가 독립적으로 완성하였다면 이러한 노동의 성과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방정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창작한 “방정란정(方正兰亭) 프로그램 V4.0”중의 단자는 관련 문자가 디지털화 방면에서의 일종 표현 방식이라고 정의 지어야 하며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심미적 의의가 있는 평면조형예술작품(그래픽 아트 Graphic Art)에 속하며 그 저작권은 응당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정란정 폰트 프로그램은 대량의 문자 좌표데이터와 프로그램명령의 기초에서 설계 되였다. 중국<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조례>에서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 동 조례에 의해 보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방정란정 폰트의 창작자는 방정회사이기에 방정회사는 동 폰트와 폰트 중의 글자체 및 단자에 대한 저작권을 향유한다. 따라서 문성회사의 TrueType는 국가의 표준 포맷이고 사용하는 글자체도 공공 자원에 속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2심 판결에서 원심판결의 “방정란정(方正兰亭) 폰트 중의 글자체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미술저작물에 속한다”는 관점에 찬성하였다. 하지만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컴퓨터 폰트에 포함하는 프로그램 명령과 프로그램 파일은 폰트 중 개별 자형(字形)과 일일이 대응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한 작품의 두 가지 다른 표현형식에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객체가 같은데 단지 표현방식이 다르다. 이 사건은 북경고급인민법원에 의해 2005년 10대 지식재산권사례로 선정 되였다. 이 사건은 3년이라는 심사과정을 거쳐 방정회사가 승소 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사법체계에서 컴퓨터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 보호한 첫 사례이다.

(3)사건 분석

방정회사와 문성회사의 분쟁은 중국에서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관련 첫 번째 사건이며 2005년에 방정회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법원의 판결에서 중국이 컴퓨터 글자체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필자는 이 사건의 초점은 피고의 행위가 권리침해를 구성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많은 디테일에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유사한 사건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 통일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였다. 첫째, 법원에서는 폰트 안의 작품이 왜 미술저작물로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폰트 안의 자형(字型)이 미술저작물에 속한다 하더라도 나아가 미술저작물이 방정회사의 오리지널 창작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이 방면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단지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 여부로 미술저작물여부를 판단하였다. 셋째, 피고의 권리침해 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지 단자가 아니다. 따라서 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단했는지가 궁금하다. 넷째,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감정을 할 때 그 중의 102개의 글자만 골라서 비교를 진행하였고 모든 글자를 비교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감정할 때 보통 필획이 비교적 복잡한 글자를 골라서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이 102개의 글자가 방정이 창작한 것이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간단하게 방정이 미술저작물 저작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이는 법원이 배상 수량 및

권리침해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 폰트의 사용 방면에 대한 권리침해를 판단할 때 진일보로 미술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 하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방정회사 v. Blizzard회사

(1) 사실 관계

Blizzard 회사는 중문 컴퓨터 게임 <월드 오프 워크래프트(魔兽世界)(World of Warcraft)>의 저작권자이다. Blizzard 회사The 9 Limited회사에게 중국 대륙(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중국 대만 미포함)에서의 라이선스를 주었다. The 9 Limited 회사는 자신의 자회사인 The 9 Interactive Limited(이하 “The 9 회사”)통해 실제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운영하였다. The 9회사는 북경정문도서유한회사(이하 “정문도서회사”)등 대리상에게 공개적으로 워크래프트 설치 CD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워크래프트 인터넷 게임의 클라이언트를 제공하였다. 사용자가 컴퓨터에 워크래프트 게임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덴카(포인트 카드)를 구매하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를 등록하여 게이머로 되여 비용을 지불하고 워크래프트 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 워크래프트의 클라이언트에는 방정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정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방정란정 폰트

중 방정북위 해서 글자체 , 방정 찌안쯔 등 5가지 글자체를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하였다. 인터넷 게임 워크래프트의 운행과정에서 각종 게임 화면의 중국어 글자가 상술한 5가지 글자체를 사용하였다. 방정회사는 2007년 6월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인민폐 1억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2) 법원 판시

원심에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보호하는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속 파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제기하였다. 따라서 방정회사의 사건 관련 방정란정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폰트 중 매개 단자는 모두 차이성이 있고 모두 창작자의 독창성이 포함 되었다. 따라서 그 중 자형(字型)이 구비하는 선조와 구조는 심미성이 있고 저작권법이 규정한 미술저작물의 조건에 부합된다. 피고가 인터넷 게임의 클라이언트와 관련 패치에 방정 폰트의 5가지 글자체를 사용하고 관련 사용자를 상대로 판매한 것은 방정회사의 미술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원고의 경제적 손해 140만 위안 및 소송 관련비용 5만 위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소송 쌍방이 원심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심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분쟁 대상인 폰트 중의 글자체 파일의 기능은 관련 글자체가 디스플레이 및 출력되게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형 윤곽의 구현 명령 및 관련 수치와 자형 윤곽의 동태조정수치 명령

코드의 결합이다. 그것이 특정 프로그램의 전용을 거쳐 운행 결과를 생성하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나에 속하며 중국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조례〉제 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속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 방정란정 폰트가 저작권법 의미에서의 미술저작물에 속하는가에 관하여 중국 〈저작권법 실시 조례〉 제4조 제8항에서: “ 미술저작물은 회화, 서법, 조각 등 선조, 색채 또는 기타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의가 있는 평면 또는 입체적인 조형 예술적 저작물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본 건에서 글자체는 모두 상술한 명령 및 관련 수치로 구성 되었지 선조, 색채 또는 기타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가 있는 평면 또는 입체적인 조형 예술적 저작물이 아니다.또한 관련 글자체의 제조과정에 근거하면 폰트 제조 과정 중에서의 인쇄 폰트와 코드로 완성된 컴퓨터 폰트 및 동 폰트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용 운행을 거쳐 생성된 글자체는 다른 객체에 속한다. 2심 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바로 잡았다. 2심 법원에서는 방정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정폰트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범위에 속하고 피고가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방정란정 폰트를 자신의 게임 클라이언트에 복제하고 판매한 행위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속의 폰트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파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인터넷에 전파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권리침해 행위를 정지하고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사건 분석

방정회사와 Blizzard회사의 권리침해 소송은 1억 위안이라는 높은 배상금액으로 하여 각계에 관심과 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또한 최고인민법원에까지 상소 되었으며 현재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전형적이고 영향력이 비교적 큰 판례이며 폰트의 법률보호 관련 문제도 논의대상으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 사건에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3. 방정 v. 뽀오우지에

(1) 사실 관계

북대방정 회사는 장기간의 조사를 거쳐 뽀오우지에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沙宣(싸쉬앤)”, “飘柔(퍄오러우)” 및 기타 63가지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대량으로 방정 “치안체(倩体)”를 사용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중에서도 돌출 사용이 403차례, “치안체(倩体)” 347개 글자를 사용하였다. 방정회사는 과학기술부문과 지식재산권관리센터에 해당 글자체를 제공하여 대조를 시켰는데 뽀오우지에 회사에서 사용한 글자체가 확실히 방정회사의 “치안체(倩体)”와 동일함이 증명 되였다. 따라서 방정회사는 뽀오우지에 회사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북경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뽀오우지에 회사와 제품을 판매하는 쨔러푸 회사(家乐福超市)가 자신의 저작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소송 청구를 여러번 개정하여 최종 2010년 7월6일에 보충 소장을 제출하였다.

(2) 법원 판시

2010년 말 법원은 “飘柔” 사건을 심판 하였다. 법원은 방정회사가 “치안체(倩体)” 폰트 글자체 내용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하지만 단자를 놓고 볼 때, 단독 한자는 주요하게 교류 및 소통에 쓰이며 그 주요한 특징은 실용성과 기능성이다. 또한 필획 및 구조상에서 개정할 수 없기에 다른 글자체의 풍격과 구분되려면 난이도가 크다. 만약 다른 사람이 폰트 안의 모든 글자체에 대해 복제하고 사용 한다면 이는 권리침해 행위가 맞다. 하지만 만약 매개 단자가 모두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저작권을 갖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동 폰트 중 단자는 저작권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방정회사는 여전히 포기 하지 않고 상소를 제기 하였다. 2011년 4월1일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2심을 진행 하였는데 2심 법원에서는: 한자 폰트 제품과 같은 유형의 지식재산권 객체에 대하여 만약 판매할 때 권리자가 합리적인 범위와 제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은 판매자의 판매 행위에 따라 판단하며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용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묵시적 허가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NICE회사가 제품을 구매할 때

공정 이용에 대한 제한적 조건이 없었기에 “飘柔” 두 글자를 사용하는 후속적인 행위는 방정회사로부터 묵시적인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NICE 회사는 방정회사의 폰트를 구매한 후 개별 글자 “飘柔”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뽀오우지에 회사가 자신의 제품 외부 포장에 “飘柔” 두 글자를 사용하는 행위 또한 방정회사의 묵시적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리침해 행위가 아니다.

(3) 사건 평석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컴퓨터 글자체 단자의 법률 속성은 무엇인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둘째, 뽀오우지에 회사에서 “치안체(倩体)” 글자체로 된 “飘柔” 두 글자를 상업적 표지로 사용한 것이 권리침해 행위가 맞는가? 이 두 가지는 또한 업계에서 널리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첫 번째 문제 중 단자의 법률적 속성 및 단자가 단독으로 폰트에서 분리되여 작품으로 될 수 있는가는 뽀오우지에 회사가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토론함에 있어서의 관건이다. 방정회상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을 여러 번 바꿨는데 맨 처음에 “치안체(倩体)” 글자체에 대한 침해를 주장한 데서부터 마지막에 뽀오우지에 회사가 “飘柔” 두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권리침해를 구성 한다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 양측의 행위가 권리침해 행위를 구성하는가를 증명하려면 이 사건에서 다음 몇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첫째, “飘柔” 이 두 글자가

본 사건에서 이미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였다. 둘째, 항소인이 본 사건에서 “飘柔” 두 글자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셋째, 피 항소인이 구체적인 조작을 할 때, 본 사건에서의 “飘柔” 두 글자에 대해 복제 및 발행을 함에 있어 항소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가를 받지 않았다.” 2심에서 보다시피 단자의 저작권 가능성은 이 사건에서의 관건이다. 원심 판결에서 컴퓨터 글자체 폰트가 풍격 상에서 일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글자체 단자는 다른 글자체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창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2심 에서 대중은 단자가 작품으로 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2심에서 제기한 권리침해 요건에서 “뽀오우지에 회사의 복제 및 발행 행위는 항소인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결 결과는 동 종류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로 될 수는 없다.

방정회사가 프로그램을 판매할 때 이미 사용자의 상업 용도에 대해 묵시적 허락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 하여야 하는가? 2심중에 판사는 <컴퓨터 폰트 중 단자의 저작권 보호>라는 문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술하였다. 만약 구매자가 어떠한 저작권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구매 후 합리적 기대 범위 내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판매자의 묵시적 허가의 범위에 속하며 이러한 묵시적 허가는 민법의 공평의 기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추론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본다. 2심에서 제기한 권리침해 구성 요소 첫째, “飘柔” 이 두 글자가 본 사건에서 이미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였다. 둘째, 항소인이 본 사건에서 “飘柔” 두 글자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셋째, 피 항소인이 구체적인 조작을 할 때, 본 사건에서의 “飘柔” 두 글자에 대해 복제 및 발행을 함에 있어 항소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가를 받지 않았다”에서 세 가지 요소 간에는 병렬의 관계가 아니다. 앞 두 가지 요소는 권리의 소유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고 다음 요소는 권리의 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앞 두 가지 요건을 만족 시켜야 세 번째 요건에 대해 고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 권리의 존재와 귀속을 판단하는 과정을 뛰어넘고 직접 세 번째 묵시적 허가로 뽀오우지에 회사의 권리침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

4. 한이회사 v. 시아오바시 회사[75]

(1) 사실 관계

한이회사는 중국에서 최초의 전문적인 데이터화 중문글자체 연구개발고 신기술기업이며 중국 컴퓨터 글자체 업계의 선두 기업이다. 해당 회사는

75) 본 사건에서 원고는 북경한이과인정보기술유한회사 (北京汉仪科印信息技术有限公司) 이고 피고는 쿤산 시아오바시아동용품유한회사 (昆山笑巴喜婴幼儿用品有限公司) 이다. 이하 한이회사와 시아오바시 회사로 약칭한다.

1998년에 “수영체” 글자체를 연구개발 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저작권 등록 번호는 2009-F-020548이다.[76] 동 글자체의 풍격특징은 매우 선명하다. 수영체 필획특점은 주요하게 횡측이 필획 상에서의 굵기가 기본적으로 같으며 필획의 양쪽이 비교적 둥글다. 점은 주요하게 하트 모양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드러움과 아름다운 곡선을 의미한다. 쿤산 시아오바시 회사와 상하이 시아오바시 회사가 상표등록을 하면서 한이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한이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수영체”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에 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한이회사는 “수영체” 폰트는 자신의 창조적인 지적성과이고 자신이 해당 글자체 폰트 및 단자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시아오바시 회사가 해당 글차체의 단자를 사용하여 상표등록을 한 행위는 한이회사가 “수영체”글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때문에 2011년 한이회사는 쿤산 시아오바시 회사（昆山笑巴喜有限公司），상하이 시아오바시 회사（上海笑巴喜有限公司） 및 쑤궈마트유한회사（苏果超市有限公司）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다.

[76] 南京市中级人民法院民事判决书（2011）宁知民初字第 60 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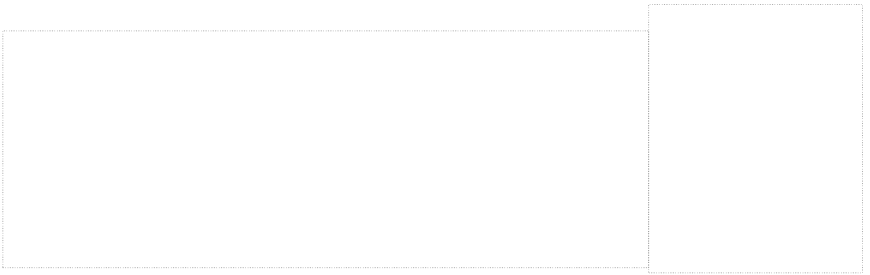

[그림3: 시아오바시 회사의 등록상표]

(2) 법원 판시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해당사건에서 수영체 폰트 중 매개 단자는 모두 디자이너가 노력하여 디자인한 것이며 디자이너의 독특한 창의와 사상을 표현하였기에 이 모든 과정은 디자이너의 지혜와 창조가 집합되었다. 현재의 미술글자체인 서법과 비교할 때 이는 독특한 예술성과 심미성을 갖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독창성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한자 자체가 필획과 구조상에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부 필획이 쉽거나 필획이 적은 한자에 대해 미술창작 디자인을 할 때 필획상의 창작공간이 매우 제한받는다. 필획특징이 현유의 서법 글자체화 비교할 때 차이가 매우 작다. “笑巴喜”세 글자중 비록 몇몇 부분에서도 원고가 동 글자체를 창작함에 있어서의 독창성을 표현 하였지만 공인적인 미술글자체 중의 흑체와 비교할 때 필획상에서 비슷하다. 이 글자는 한이 폰트 중 “巴” 자와 비교를 할 때에도 어떠한 필획은 유사하다. 따라서 이 글자는 저작권상의 독창성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였기에 단독적인 이 글자는 미술저작물로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다른 두 글자 “笑” 와 “喜” 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미술저작물로 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의 등록 상표중 “한이수영글자체(汉仪秀英体)”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며 원고는 법정심사 때 무료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공식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77]

(3) 사건 평석

북경한이와 쿤사안 시아오바시, 상하이 시아오바시의 “笑巴喜” 등록상표 저작권침해 관렴 사건에서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한이회사의 “수영체 (秀英体) ” 폰트 중 매개 단자가 모두 디자이너가 노력하여 디자인한 것이며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창의와 사상을 표현하였기에 폰트제작의 모든 절차는 디자이너의 지혜화 창조성이 집합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피고는 한이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이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수영체를 함부로 사용하였기에 함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개별 글자가 작품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 하였다. 한 가지 종류는 전통적인 붓으로 쓴 개별 글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서체 디자이너가 만년필 등 현대도구로 디자인한 글자이다. 판결서에서의 서술을 보면 수영체 필획특점은 주

[77] 南京市中级人民法院民事判决书 (2011) 宁知民初字第 60 号。

요하게 횡과 측이 필획 상에서의 굵기가 기본적으로 같으며 필획의 양쪽이 비교적 둥글다. 이는 주요하게 하트 모양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드러움과 아름다운 곡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독창적인 필획이 단자의 창조인가? 매개 단자는 모두 미술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상 서법에 대해 더 많이는 "그림이지 글자가 아니다"라는 관념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서면 디자인 글자체와 컴퓨터 글자체의 혼합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실제상 컴퓨터 폰트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5. 중이 v. 마이크로소프트[78]

(1) 사실 관계

북경중이중표전자정보기술유한회사의 TrueType와 Postscript의 중문 폰트는 글자의 구조는 합리하고 단정하며 글자의 형태가 뚜렷하고 아름답다. 북경 중이회사는 또한 "쩡마(郑码)" 입력 법을 갖고 있고 이미 중국, 미국 과 영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여러 차례 국가 급의 평가 및 검측과 감정을 통과 하였다. 북경중이회사는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쩡마 글자체 사용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내용에서 "쩡마"는 WINDOWS95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쩡마는 "임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78)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북경중이중표전자정보기술유한회사 이고 피고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회사 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술의 간략을 위해 이하 중이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로 약칭한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계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쩡마를 사용할구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았기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기타 중문버전 제품 WINDOWS98/2000/XP 등 프로그램에서 모두 중이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이회사의 폰트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중이회사는 2007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자신이 쩡마에 대한 특허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중이폰트의 미술저작물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쩡마 근 5만개의 글자와 단어의 코드표의 편집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 판시

본안은 2008년 1월 북경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하였으며 2008년 5월 까지 총 3번의 재판을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사건의 법정심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2009년 11월 북경중급인민법원은 판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중이회사에서 연구개발한 두 가지 글자체 폰트를 사용하였는데 전에 중이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중이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중이회사의 글자체 폰트를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되나 쩡마 입력 법을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에 속하지 않는다.

(3) 사건 평석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중이회사의 중문폰트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문제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비록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기타기업이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를 수호하는 상황이 많기는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기타 기업, 개인 또는 조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다.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 부분품목이 기타 기업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상응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관련 법률조례에 근거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권리침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가시켰으며 어떠한 형식의 판매행위도 허용하지 않았다.

본안의 판결에서 보다시피 국제 관련 조례는 법률적 측면에서 중국민족특성이 있는 한자문화 고신기술제품의 자주적 지식재산을 보호하였다. 중문 폰트의 중문 입력 법은 중국에서 기원 되였고 중국에서 개발연구하여 출시하였으며 중국은 매개 한어 Windows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갖는다. 본 사건의 판결에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중이회사의 두 가지 글자체 폰트를 사용한 행위는 권리침해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비록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사무용 프로그램 제품에서는 부분적 내용이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권리침해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전

체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안에서 판결이 비교적 엄해 보이기는 하나 법률법규에 부합되고 중국 민족특색을 체현한 한자 문화의 자주적 지식재산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경중이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중문폰트와 입력 법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매개의 WINDOWS조작 프로그램은 모두 중국회사의 지식재산권이 포함 되였다. 중이회사가 승소를 거둔 것은 또한 상징적 의의가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상대로 한 독점금지 소송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6. 이에그언유 v. KFC[79)]

(1) 사실 관계

이에그언유는 “이에그언유 붓글씨 행서 글자체”를 창작하였으며 2008년 1월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고 등록번호는 10S-2008-F-005 이다. 우시 KFC회사는 이에그언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72개의 KFC음식점의 홍보자료에 이에그언유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작품을 사용하였다. 이에 이에그언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KFC회사가 1.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신문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2. 경제적 송실 144만 위안, 조사비용 390위안, 변호사 선임비용 38400위안, 공증비

79) 본 사건에서 원고는 서법가 “叶根友” 이고 피고는”KFC 食品有限公司 “ 이다. 이하 “이에그언유”와 “KFC ” 라고 약칭한다.

용 2088위안, 합계금액 148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법원 판시

원심 법원에서는 “이에그언유의 붓글씨 행서 글자체”가 이미 국가 저작권부분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데 이는 그 자체가 저작권에서 말하는 작품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폰트 중 “新”“年”“快”“乐”“到”“福” 등 6글자는 작품으로 볼 수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에그언유의 붓글씨 행서 글자체”중의 매개 글자가 모두 독특한 풍격과 필형과 구조적 특징을 띤다. 작자는 “이에그언유의 붓글씨 행서 글자체”중의 매개 한자가 특유의 풍격을 표현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문자부호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작자는 창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의 노동력을 투자하게 된다. 폰트중의 한자는 국가 저작권부문에 저작권등록을 한 서법미술저작물이며 데이터화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작품의 실질을 개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80]

이에그언유 글자체 사건 원심법원에서 비록 원고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관련권리자의 권리주장과 글자체의 표현방식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부정하였다.[81] 2심 법원에서는 우시 KFC에서 이에그언유 행서 폰트 중 “新”“年”“快”“乐”“到”“福”등 글자에 대해 사용

80) 江苏省无锡市中级人民法院（2010）锡知民初字第 0078 号民事判决。
81) 江苏省高级人民法院（2011）苏知民终字第 0018 号民事判决书。

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에그언유는 “무료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어떠한 권리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는 이에그언유가 창작한 폰트는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 되여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행위가 상업적 성질에 속하는지 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그언유의 관점은 자신이 비록 글자체를 씬랑(新浪)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지만 이는 단지 학습교류에 한한다고 주장한다. 2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원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습교류활동에 한해서 사용되는 관련 폰트는 이에그언유가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응당 저작권법 중 공정이용범위가 규정한 내용에 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에그언유가 자신의 글자체를 무료로 제공하였는데 상업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사용자는 사용을 함에 있어 동 폰트와 기타폰트를 비교한 후 비용을 지급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가 생긴다.

(3) 판례 평석

쨩쑤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이에그언유가 문자를 제공한 방법 및 자격증명의 방법을 이에그언유의 창작권을 확정하는 결정적 요건으로 보고

있다. 쨩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이에그언유가 제공한 문자형태화 피고가 패스트푸드점에 사용된 문자에 대해 충분히 모색하였다. 이에 이에그언유 글자체 권리자가 폰트를 인터넷에 올려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이에그언유가 자의적으로 한 행동이며 자신의 글자체를 대중들이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묵시적인 것으로 간주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은 피고의 행동을 상업적 사용이라고 보지 않으며 피고의 행위가 이에그언유 글자체의 상업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지 않는다. 본 논문은 법원의 이러한 피고의 사용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중국 관련 법률법규에 창작권에 대한 묵시적 허가에 관한 규범이 없다. 2심 법원이 인용한 무성허가이론은 중국 현재 법규 중 확정된 지위가 없기에 법원에서는 비교적 유연한 방법으로 이를 정당적인 사용을 판단하는 전제중 하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중국 현행의 법률체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방법은 중국의 기타 향진（乡镇） 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7. 중국 사법실무에서 컴퓨터 글자체 법률보호 관련 쟁점

상술한 판례의 사건서술과 판결결과에서 보다시피 컴퓨터 글자체는 국제 상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일정한 지위가 있다. 이 외에 실제 법률 판결에서 보다시피 법원에서는 컴퓨터 글자체가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데에 더 편향한다. 컴퓨터 글자체 단자가 미술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한이와 시아오바시 사건 및 방정과 뽀오우지에 사건에서 모두 논쟁이 있다. 북경 하이댄취 인민법원은 단자의 저작권성은 승인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 되는 것은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시아오바시 사건에서 단자의 저작권 성질을 승인해 주었다. 또한 단자의 발전형황과 창조성에 근거하여 독창성을 판단하였다. 상술한 사건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법원 쟁의의 중점을 알고 이에 대해 연구를 할 수 있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본 유형의 사건의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와 관련 된다: 1. 컴퓨터 글자체 단자의 법률적 속성. 컴퓨터 글자체 단자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될 수 있는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작품유형으로 보호를 할 것인지, 미술저작물인지 기타작품인지? 2. 컴퓨터 글자체 와 폰트 프로그램의 법률적 속성. 컴퓨터 글자체가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의 범위에 속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작품유형에 귀속시켜야 하는가? 컴퓨터 글자체와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을 따로 보호해야 하는가? 폰트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 유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상 문제들을 놓고 토론한다.

제3절 중국 컴퓨터 글자체 관련 입법

1. 중국 컴퓨터 글자체 관련 입법

데이터화 기술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컴퓨터와 인류생활사이는 밀접해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행위가 점차 많아지고 빈번해지며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사람들의 글자체 보호 의식이 결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이 시대발전과 함께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앞부분에서 정리한 판례사건에서 와 같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의 태도는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이 컴퓨터 글자체에 관련된 법률규제의 하자로 인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실무에서 관련 법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에서 컴퓨터 글자체와 관련이 된 법률은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조례>밖에 없다.

중국 저작권법은 글자체를 단독으로 한 가지 작품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컴퓨터 글자체와 단자를 저작권법 보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단지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컴퓨터 글자체는 미술저작물로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미술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을 대상으로 보호 하는 것은 지식

재산권을 규정하는 것을 통해 보호하는데 주요하게 복제, 수정과 발행권이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글자체의 독창성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때문에 실제 사법실무에서 의거할 명확한 법률이 없고 판사 개인의 업무수준과 지식 및 소질 등 주관요소에 의해 심판을 주도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된 방정란정 (方正兰亭) 폰트가 중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상응되는 등록증서와 등록번호가 있으며 중국 저작권보호센터에 등록되어있다. 이렇게 해야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중국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폰트 프로그램에 상응되는 인신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중국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대로 전문적인 보호조례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발표, 서명, 복제, 수정 등 관련 권리를 향유한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자신작품의 전체 권리 또는 부분적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사용자는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 렌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침해로 배상을 해야 한다.

2. 중국 입법의 컴퓨터 글자체 국한성

(1) <저작권법> 보호의 국한

첫째, 중국 현행의 <저작권법>은 2010년 2월에 수정한 것이며 현재까지 8년 이라는 기간을 시행하였다. 비록 첫 번째 수정과 비교할 때 저작권법이 이미 비교적 큰 의미에서 국가 및 기술진보의 수요를 만족시켰지만 현재 시기에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도록 빠르고 정보화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에 지식재산권법이 문화발전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작용은 힘들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정보화시대의 발전이 저작권법이 실시하는데 있어 난도도 크고 범위도 넓어졌다. 여러 상품들도 기술의 쾌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컴퓨터 글자체가 바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에서 나타난 새로운 산물중 하나이다. 컴퓨터 글자체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법심판도 사회의 격렬한 토론을 받고 있다. 이는 법률이 뒤처졌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글자체 저작권자의 권리가 효과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작품은 저작권법중 독창성의 요구를 구비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독창성은 저작권법의 기본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독창성에 대한 판단이 하나의 체계적인 표준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 주관적인 요소에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강한 주관성은 결국 공평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학계 및 법조계는 이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다. 예를 들면

상술한 “방정 v. 뽀오우지에” 사건에서 법원은 글자체 단자가 미술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한이 v. 시아오바시” 사건에서는 법원은 “笑” 와 “喜” 두 글자는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저작권법이 글자체 단자에 대한 보호는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고 국가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조례>보호의 국한성

중국 현재 사법실무에서 컴퓨터 글자체 관련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의 성질에 관해서는 기본상 논쟁이 없다. 논쟁의 쟁점은 주요하게 폰트 프로그램 중의 컴퓨터 글자체와 단자이다.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소송에서 보면 주요하게 컴퓨터 글자체 단자에 대한 사용과 권리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컴퓨터 글자체 전체에 대한 분쟁은 거의 없었다. 이는 우리에게 글자체 단자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제기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조례는 글자체 단자에 대한 보호는 없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 및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 세 가지 방면에서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조례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 뿐 이며 컴퓨터 글자체와 글자체 단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한 국한성은 매우 뚜렷하다. 현재까지 중국은 글자체 보호와 연관된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다. 또한 기존의 판례를 보더라도 사람들에 컴퓨터 글자체

보호에 대한 의혹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조례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과 조례는 체계적이고 전면적이지 못하기에 일부 문제는 이를 참고할 수도 없다.

법원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근거할 법률법규가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술한 사건 “방정 v. 뽀오우지에” 에서는 계약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적용되지 않았다. 합리적인 입법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제4절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구별

1.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구분 필요성

첫째, 폰트 프로그램의 함의와 실질을 더욱 잘 인식하는데 유리하며 사법실무와 이론연구에서 저작권 객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폰트 프로그램을 놓고 볼 때 그 저작권은 두 가지 특성을 띠는데 권리침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권리침해 작품으로 의심되는 글자체 작품과 권리자의 글자체 작품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행위자가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같은

글자체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선택 사용한 도구와 방법이 꼭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폰트 프로그램이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였다.

둘째, 법률을 통해 사실을 인정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법률관계를 더욱 잘 장악하게끔 한다. 저작권의 이중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사실과 법률관계의 범주를 더욱 잘 확정 하게끔 도와준다. 디자인 회사가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동시에 폰트회사의 허가를 받고나면 폰트회사와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때문에 디자인 회사는 실질상 이러한 계약관계를 통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디자인 회사가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기만 하면 권리침해가 형성된다. 이때 저작권 주체는 권리침해 책임과 계약위반 책임 양자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제조기구에서 글자체를 제작한 후 최종사용자가 만약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작품을 사용 하였다면 권리침해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저작권 주체는 이때 권리 침해자에 한해서 권리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글자체 및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다중성을 강조하는 것은 폰트 전체의 속성을 분할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3자의 다른 저작권은 밀접히 관련된 것이다. 폰트 프로그램 중에서 설계해낸 글자체 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조건 글자체의 형성과정과 폰트 프로그램 설계시 사고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폰트 프로그램의 처리과정이 글자체의 독창성에 영향을 주기에 폰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저작권보호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폰트 프로그램의 집행 결과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될 수 없다. 하지만 집행결과가 제일 직접적인 표현이기는 하다. 때문에 폰트 프로그램 중 나타나는 컴퓨터 글자체 작품도 권리침해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와 폰트 프로그램 구별 보호의 정당성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에서는 저작권법에서의 작품이란 “과학, 예술, 문학 영역에서 독창성을 구비하고 어떠한 구체적 형식으로 복제 가능한 지적노동의 성과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동 법에서 규정한 작품으로서의 속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작품” 은 한국 지식재산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다. 중국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조례>에서 프로그램 작품의 구성조건에 대한 규정은: “본 조례에서 보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해낸 것이고 이미 어떠한 유형물체에 고정된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중국의 법률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독립적 개발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즉 독창성이다. 독립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모두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리자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발행하는 행위는 모두 권리침해 행위이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침해로 인한 법률적 후과를 부담하여야 한다.

폰트의 저작과정은 많은 절차를 거친다. 글자체의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원본의 스캔, 글자의 인공적인 수정, 데이터화 처리, 품질 검사, 폰트로의 정합 및 측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디자이너의 폰트 글자체에 대한 선택, 정합, 디자인 및 배열을 요구한다. 따라서 폰트는 디자이너의 지적노동으로 응결 되었으며 작품성의 요구에 부합된다.[82] 현재 가장 유행되고 널리 쓰이고 있는 네 가지 공중 글자체는 해체, 방송체, 송체와 흑체이다. 현재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와 폰트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현상은 권리자의 저작권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글자체를 사용하고 제작하는데 도구와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다.[83]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 복제 또는 부정당한 사용 등은 모두 권리침해의 표현이며 법률을 무시하는 표현이다. 중국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더 잘 수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 글자체 권리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면 하루빨리 글자체 작품을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귀속시켜야 한다.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적당한 저작권적 보호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창작 열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많은 우수한 작품을 디자인 해내여 중국 한자 글자체 문화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무조건 상응한 비용을 지불하고 글자체, 단자

82)陶鑫良, 单晓光：《知识产权纵论》, 知识产权出版社, 2004 年版第 108 页。
83)陈际：“计算机字体库产业的发展和保护”, 载于《电子知识产权》2011 年第 4 期第 60 页。

및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획득하여 건전하고 질서 있는 지식재산권 거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여야 만이 중국 한자문화의 번영발전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절 폰트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

폰트 프로그램의 독창성은 주요하게 컴퓨터 폰트 코드가 컴퓨터의 특정된 절차를 거쳐 해석되고 환원 되어 글자체로 자유로이 전용되는 과정에 있다. 컴퓨터는 여러 가지 컨트롤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고 마지막에 다양한 컴퓨터 글자체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은 한 가지 독창성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호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는 폰트 프로그램에 한정된다. 즉 그 보호가 글자체나 글자체 단자의 내용에 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프로그램과 글자체는 내용이 상호 독립적인 것이다.

1.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이다

중국 학술계에서는 폰트가 컴퓨터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폰트(폰트 프로그램) 언어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속하는가. 둘째, 폰트 언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속하는가. 폰트의 다른 분류에 따르면 일부 폰트는 제어(control)명령이 표시되지 않고 매우 간단하다. 중국내 사법실무에 따르면 일부 법원에서는 폰트 중 함수계산법과 수치좌표에 대한 묘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84] 또한 폰트 자체가 운행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85] 방정회사와 Blizzard회사 사건에서 2심법원에서는 폰트는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전자설비 출력장치에서 글자체 자형(字形)을 나타내기 위해 설계된 컴퓨터 집행 코드 명령계통이라고 판단하였다.[86] 따라서 컴퓨터 폰트는 프로그램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찬성한다.

2. 폰트 프로그램의 독창성 분석

"독창성"은 저작권법이 작품에 대한 내재적 요구이다.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객체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서 독창성 요구의 만족여부에 대하여 분석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보호범위에 귀속 시킨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이 독창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비록 컴퓨터 프로

84) 张文显：《法理学》，高等教育出版社，2008

85) 陶鑫良，单晓光：《知识产权论》[M]，知识产权出版社，2004 年版第 108 条。

86) 陈际："计算机字体库产业的发展和保护"，载于《电子知识产权》2011 年第四期第 60 页。

그램은 일종 강대한 기능과 용도를 구비한 실용성 작품이지만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도 완전히 보호범위에서 배제시키지는 않았다. 강조하는 것은 실용성이 아닌 예술성이다. 기능성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타 중요한 내용을 많이 구비하고 있다.

주의할 만한 것은 저작권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강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사상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사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저작권법이 프로그램을 보호할 때 단지 불법표절, 불법복제 등등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의 운행방법, 처리과정, 산법패턴 및 설계원리 등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셋째,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는 프로그램의 표절현상에서만 언급된다. 디지털 글자체 디자인, 관련 데이터는 독창적 작품이 아니기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동 통고에서는 컴퓨터 폰트와 글자체는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해낸 것이지만 해당 폰트 프로그램과 설계해낸 글자체는 상호 독립된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폰트를 설계하고 나서 폰트에 대해 벡터화 처리를 하고 관련되는 함수 산법과 좌표수치를 편입하고 나면 폰트가 전용되거나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생된 프로그램이 바로 폰트 프로그램이다(폰트 프로그램). 통상적으로 볼 때 폰트 프로그램은 프린터기계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설비에 직접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주요기능은 문자를 빠르게 출력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다. 내용상에서 볼 때 폰트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C언어로 편집되는데 보통 파일과 코드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다면 컴퓨터 글자체,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 세 가지는 상호 독립된다.

3.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음에 있어서의 상대적 독립성

폰트 프로그램은 글자체 작품의 창작 기초 상에서 형성된 것이며 양자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폰트 단자가 독창성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데이터화된 폰트 프로그램도 독창성을 구비한다. 하지만 단자가 독창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도 독창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단자와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은 구별하여 대해야 한다. [87] 공중영역(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글자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과 프로그램의 설정이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설계해낸 것이고 개발자의 창조와 가치판단이 체현되면 이러한 폰트 프로그램은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88]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국가 관련부서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정회사에서 2002년에 “방정란정 V4.0”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냈으며 공식적 인증인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서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는 단지 폰트 프로그램 자체를

87) 最高人民法院（2010）民三终字第 6 号判决。

88) 黄无双 等：《计算机字体与字库的法律保护：原理与判例》，法律出版社，2011 年版。

보호하는 것이지 폰트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된 결과 까지는 보호하지 않는다. 만약 폰트 중 전체 자형(字形)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해준다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복제하거나 글자체의 전부 또는 부분적 내용을 뽑아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절.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저작권 보호

1.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1971년 파리에서 수정한 <문학 및 미술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에는 문학 및 미술저작물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단어는 예술, 과학 및 문학범위내의 모든 학술연구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과의 표현방식과 형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전교(설교), 강의, 강연 작품 등; 작은 수첩, 서적 등 문학작품; 마임극(Pantomime 무언극) 또는 무도연출 등 작품; 뮤지컬, 희곡 등 작품; 영화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제작한 작품; 악곡, 대사 등; 건축, 유화, 판화, 조형, 조각 등 작품; 과학, 지리, 건축등과 관련된 설계도, 삽화, 약도 및 지도 등 작품; 촬영 및 같은 유형의 수법으로 제작한 작품 등이 있다.

WTO 국제기구의 회원국과 <베른조약>의 체결국으로서 중국은 컴퓨

터 글자체의 저작권 보호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TRIPS협정의 관련조항과 <베른조약>의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만약 협정과 협약이 체결국에서 글자체의 저작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면 중국은 회원국으로서 무조건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베른조약>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예외의 규정이 없는 전제하에서 무조건 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89] 또한 TRIPS협정은 WTO회원국의 계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TRIPS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 작품이 다음 3가지의 특징을 구비하면 저작권적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첫째, 작품은 사상의 표현이고 작품 속성에 부합된다. 둘째, 작품은 독창성이 있으며 지적성과이다. 셋째, 기타 법률.[90] 이 외에 작품이 복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협정이 성원국에게 스스로 저작권 부여가 가능한 조건을 가지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게끔 허락 하였다. 이는 작품이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만약 성원국이 이상 4가지 조건에 기타 요구를 추가한다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기준을 높인 것이므로 TRIPS협정과 <베른조약>의 관련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원국이 요구를 부가하는 것은 금지된다.[91]

89) 吴伟光：《中文字体的著作权保护问题研究》，载于《清华法学》2011 年第 5 期。

90) 张玉敏：《字形，字库，字库软件的法律保护问题》，《中国版权》2011 版第 5 期，第 25 页。

91) 蒋玉宏、贾无志：《计算机字库的著作权保护及侵权判定》，《电子知识产权》2008 年第 9 期，第 45 页。

(1)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는 “작품”의 속성을 구비 한다

1) 저작권법의 객체 범위

작품(저작물)의 함의: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2조에서는: “저작권법이 말하는 작품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영역에서 독창성을 구비하고 어떠한 유형형식으로 복제가능한 지적성과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92] “작품”은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보통 의미상의 작품과는 다르다. 저작권법 중 작품은 단지 사상 감정의 표현방식을 가리키며 표현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현하려는 사상이 사회대중들이 매우 익숙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표현방식이 독특하기만 하면 “작품”으로 발전 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감정과 사상을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려면 상응한 매개체를 빌어 객관적인 표현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인체는 사상 감정을 표현할 때 실제와 결합하여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부호를 통해 전달한다. 예컨대 문학작품은 여러 가지 문자부호로 작품속의 정감과 사상을 표현한 것이고; 미술작품은 색채, 선조 등 부호를 빌어 작자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말하

92) 《著作权法实施条例》 第二条

면 여러 가지 소리, 선조, 언어, 동작, 문자, 표정 등과같이 감정과 사상을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호를 상호 조합하는 방식이 바로 작품 사상 감정의 외연적인 표현이다.[93]

실용성과 “작품”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실용성과 심미적 가치를 동시에 구비한 입체 조형이나 평면 조형 예술품이다. 예술적 심미와 실용성 기능 이중특성을 동시에 구비한 작품을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는 예술 가치와 실용가치를 모두 가진다. 비록 작품이 공업제품의 실용적 기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작품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될 수 있다.[94] 중국 저작권법은 작품의 사상의 표현을 보호하지 사상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이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응용미술저작물의 “예술성 표현”부분을 보호하지 응용미술저작물의 실제 용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의 실용가치는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사상이기에 저작권법은 그 실용가치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조건 작품의 실용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물리적으로 또는 관념상에서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93) 吴伟光：《中国字体的著作权保护问题研究——郭炯月、产业政策与公共利益之间的影响与选择》，《清华法学》2011 年第 5 期，第 65 页。

94) 吴伟光：《著作权法研究：国际条约、中国立法与司法实践》，清华大学出版社，2013 年版第 76 页。

그렇다면 응용미술저작물은 진정으로 그 예술성과 실용성이 물리적 또는 관념상에서의 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보면 응용미술저작물이 관념상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는 특성은 업계에서의 통설이다. 응용미술저작물이 관념상에서 실용성과 예술성이 분리 가능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부분 외국 연구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 환경의 발전 하에서 모색해낸 것이다. 창작과정을 중시하는 판단방법, 주요와 차요의 판단방법, 잠시 치환하는 판단방법 및 판매가능성의 존재여부 등 판단방법 등이 있다. 중국이 관념상에서 분리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논술함에 있어 국내 관련 사법실무에서 부터 시작하여 저작권법의 기본이론, 원칙과 내용을 참고하고 외국의 판단방법을 참조하여 결론지을 수 있다. 국내 사법실무에서 분석하면 제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속하는지, 그 예술성과 실용성이 관념상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하게 작품 창작의 예술 수준에서 부터 착수할 수 있다.[95] 이와 동시에 작품이 독립적으로 완성 되었는지, 창조성을 구비하는지 등 두 가지 방면을 관찰하면서 독창성을 판단한다. 대중 소비자 또는 감상자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고려하고 창작 작품 자체를 참조하면서 판단하고 분석하여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뚜렷한지를 모색하고 그 예술성이 독립적으로 분리 되어 존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96]

2) 저작권법 보호객체의 구성조건

95) 见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2002）沪二中民五（知）初字第 132 号民事判决书。

96) [日]田村善之：《日本知识产权法》，周超，李雨峰等译，知识产权出版社，2011 年版第 421 页。

문학, 과학 및 예술영역:

일부 학자들은 저작권법 중 작품의 범위를 문학, 과학 및 예술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작품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별 특별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본다. 특히 "과학영역"의 한정은 더더욱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볼 때 대부분 작품의 영역범위는 한 번에 보아낼 수 있다. 사실상 작품이 공업제품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특성이 직접적으로 개변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의 구성에서 보아낼 수 있듯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범위는 문화영역에 국한된다.[97] 따라서 만약 공업제품에 문화, 예술 및 과학영역의 표현을 포함했을 경우 이러한 공업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지 이러한 보호는 문학적 표현 범위에 한정되고 공업영역의 실용적 기능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독창성: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독창성에 대한 이해는 상이하다. 영미법계의 저작권 규정에서 보면 독창성에 대한 인식에 두 가지 방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질" 과 "양"에 대한 구분이다. "질"은 작자가 독립적으로 구상하여 생성된 작품을 말하며 글 과정의 변화에 관심을 갖

97)王坤："作品概念的科学构建及其在著作权法上的意义", 《知识产权》 2010 年第 6 期, 第 83 页。

지 않고 나타내고 있는 개성에 중시한다. “양”은 최소한의 창작에서 작품이 감소할 수 없는 구성부분을 말한다. 독일을 대표로 한 대륙법계의 저작권법중 독창성의 표준은 비교적 엄격하다. 중국 저작권법은 대륙법계 저작권법의 작품독창성에 대한 요구와 유사한 판단표준을 적용한다.

저작권법에서 독창성은 작품 창작과정에서 창작자가 상응한 지적 노동을 투입하고 이러한 노동성과가 최저한도의 창작성을 구비하는 것을 말한다. 작품의 독창성은 저작권법 제도를 구축하는 기초이다. 독창성은 작품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구성되는 실질조건이다. 저작권을 갖는 작품은 무조건 독창성이 있으며 독창성이 없는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품이 독창성을 구비한다는 것은 작품이 마땅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어떠한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구비해야하는 조건이 바로 독창성이다. 작품의 독창성이란 작품이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창조해낸 산물이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복제하거나 표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독창성에 대하여 WIPO 에서는 : “독창성이란 창작결과가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완성한 것이며 그 작품이 기본상 또는 완전히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표시한바가 있다. 국가의 법률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저작권법에서 독창성에 대한 요구표준도 각각 다를 수 있다. 독창성은 작품의 품질과 수준 및 창작시간의 순서에 대한 요구가 없다.

창작의 소재내용이 퍼블릭 도메인인지 여부. 저작권법 범위의 저작권

영역은 창작자와 기타 저작권자 및 원시소재를 핵심으로 하는 퍼블릭 도메인 및 보호를 받는 표현이다. 그중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대중의 권리에는 사적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개인(사적) 영역이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다. 예컨대 객관적 사물은 누구도 독립적으로 창작해낼 수 없는 성과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에 속하며 퍼블릭 도메인에 포함되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법률은 저작권법의 보호표준을 만족하는 독창성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특허법에서의 창조성과는 다르다. 저작권법에서의 독창성은 전업적인 심사인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가 다른 작품유형에 대한 표준도 서로 다르다. 작품의 독창성을 판단할 때 대부분은 사법실무 과정에서 관련 사법부문 인원이 작품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한다.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면 독창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보편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독창성 요구가 비교적 높은 독일을 놓고 보아도 독창성에 대한 요구 정도가 작은 코인으로 형상화 하는데 그친다.[98] 영미법계에서는 독창성 수준에 대한 요구가 더욱 낮다.

중국 저작권법에서 독창성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우선 저작권 보호문제에서 독창성을 판단할 때 저작권법 제도의 가치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즉 창작자의 지적성과의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성과의 공유문제를 해결하여 시장성과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제 효율을 실현하고 사회생활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때문에 독창성에 대한 요구가

98)周云川："使用艺术品的著作权保护"，载于《中国专利与商标》2013 年第 4 期 66 页。

높을 수록 그 민족의 창작성도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독창성 수준에 대해 요구하는 목적은 사회공중이 작품 창작자의 사적권리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유럽지역의 나라들에서 독창성에 대해 비교적 높은 요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기타 보통법계 나라들은 비교적 낮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근 몇 십년동안을 관찰해보면 저작권을 향유하는 데에 대해 요구가 비교적 낮은 나라들에서 의 발전이 더욱 생기를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양자 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는 독창성에 대한 요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이 중문 글자체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해준다면 일정한 정도에서 중국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 이는 중문 글자체가 독창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다. 이 외에 필자는 중국에서 저작권법이 작품의 독창성에 대한 요구가 실은 유럽지역의 국가들에서 독창성에 대한 요구정도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본다.

상술한 내용에 근거하면 저작권법이 독창성 수준에 대한 요구는 보편적으로 낮다. <베른조약>에는 독창성이 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적성과의 관련내용에 이 단어를 포함시켰다.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 또는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에 속하지 않으면 동 작품이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지적성과는 선명한 구별성과 차이성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사람과 사람지간에 똑같은 지적성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 회사의 판결에서 “치안체(倩体)” 글자체

의 굵기에서의 차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의견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동인한 제재(題材)를 상대로 다른 작자가 창작한 작품이 창작성이 있고 독립적으로 완성한 것이면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표시한 바가 있다.[99] 이는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작품이라면 작품 간에 유사하거나 같은 점이 존재하는가를 불문하고 모두 각자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법실무에서 한 작품이 독창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임무가 아니다. 저작권을 놓고 볼 때 저작권법은 작품의 관점과 사상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단지 모종의 유형형식의 지적성과만 보호한다. 표현하는 구체적인 표준을 구분함에 있어 확실한 계선이 없다. 일부 단락구조나 언어문자 상에서 구별 또는 실용미술저작물을 분석함에 있어 작품의 선조나 색채상에서의 차별이 있다고 하여 작품이 독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특이성을 구성하는 표준은 또 어떠한가? 이는 모두 판단을 할 때 실제 정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보통 전체적으로 작품의 창작수법을 관찰할 때 창작수법이 다르면 작품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같은 제재로 된 작품이 이미 발표되였을 경우 도 작품이 기존의 작품과 본질상의 구별이 없고 단지 단락구조나 언어특색 또는 선조 등 방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99)《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2002）》，（2002 年 10 月 12 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 1246 次会议通过），第 15 条。

작품이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2)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가 저작권법의 객체요구에 부합된다.

1) 응용미술저작물과 미술저작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수정초안 제3고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改草案 第3稿)) 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작품"에 귀속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장난감, 가구, 장신구 등 실용적 기능이 있고 심미적 의미가 있는 평면 또는 입체적 조형 예술적 저작물" 이라고 정의 지었다.[100] 비록 응용미술저작물은 일종 예술품이지만 성질상에서 보면 예술성과 기능성 즉 실용성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고 보통 예술적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이 미술저작물에 "미술저작물이란 회화, 서법, 조각 등 선조,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의가 있는 평면 또는 입체적의 조형 예술 작품이다." 라고 정의 하였다. 정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미술저작물도 일종 예술적 저작물이며 입체적일 수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전형적인 예로서의 작은 꽃병 등을 들 수 있다. 정의상에서 보면 미술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의 구분은 단지 응용미술저작물이 실용성이 있다는 것 뿐 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미술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의

100)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改草案第 3 稿)(国家版权局 2012 年 10 月), 第 3 条第 9 项。

정의로 부터 “실용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응용미술저작물에 속하며 보호를 받고 미술저작물의 보호를 배제 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는 없다. 법률은 미술저작물과 같은 조형예술이 단지 관상감으로 존재해야 하고 어떠한 실용성도 구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정의에서부터 미술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을 구분하기에는 일정한 난도가 있다. 왜냐하면 양자는 어느 정도 얽혀져 있으며 확실하게 갈라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입법목적에서 보면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한 작품을 미술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로 이중보호를 해준다면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제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한 작품이 25년 기간 내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호받고 25년이 지나면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입법목적은 이러한 결과를 배척한다.

응용미술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 의미에서의 구별을 더 이해하려면 두 가지 작품유형의 권리내용의 구별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저작권의 권리내용에서 미술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의 구별중 하나가 전시할 권리가(작품의 전시권) 있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시권이란 “미술저작물, 촬영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이다.[101] 저작권법이 포함하는 모든 작품유형에서 미술저작물과 촬영 작품의 저작권자만이 전시권을 향유한다. 미술저작물의 주요가치는 감상과 소장하는데 있기에 전시권은 이에 대해 중요

101)周云川：“使用艺术品的著作权保护”，载于《中国专利与商标》2013 年第 4 期 66 页。

한 가치가 있으며 전문적으로 전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전시권이 없다. 왜냐하면 응용미술저작물의 주요가치는 소비자를 응용미술저작물을 구매하도록 흡인하는 것이지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102]

<베른조약>의 규정에 의하면 성원국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할 때 꼭 저작권법에만 의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 법률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술한 내용에서 중문글자체는 법률의 보호대상중 하나여야 하는데 만약 중문글자체가 응용미술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이를 포함할지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일부 법원은 “일부 글자체 문자가 미술저작물 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하지만 범위가 전체 중문글자체로 확장된다 할 때 그것이 미술저작물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한편으로는 이론상의 의미와 관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성과 관련된다. 우선 이는 글자체 관련 권리자가 저작권법에서의 지위와 보호기간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이는 글자체 권리자가 전시권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되며; 마지막으로 이는 중문 글자체가 중국에서의 보호에서의 전도와 발전추세를 결정할 수 있다 ”는 관점을 제시한다.

2)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는 응용미술저작물이다

102)吕炳斌：“使用艺术作品可版权性的理论逻辑”, 载于《比较法研究》, 2014 年第 3 期第 79 页。

컴퓨터 글자체는 한자문화를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가 더욱 큰 정도에서는 한자 언어의 형식을 풍부히 하였다. 컴퓨터 글자체는 정보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독특한 풍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량 생산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확실히 공업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 글자체의 속성은 공업제품의 속성에 부합되기에 이를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저작권법의 객체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제기한다.[103] 컴퓨터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문학, 예술과 과학영역의 구체적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은 컴퓨터 글자체가 공업제품의 속성을 가지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외에 예술영역에도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예술이란 형상적인 수단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예술은 생활에 대한 체현이지만 현실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동성을 결합하였다. 기능성 제품에 사람의 감정투입이 없다면 예술성도 없을 것이다. 컴퓨터 글자체를 놓고 볼 때 한자의 출현과 조형상의 아름다운 예술성은 갈라놓을 수 없다. 알다시피 한자 최초의 형태는 부호와 도화이다. 따라서 오늘날 보고 있는 임의의 한자는 모두 하나의 도화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한자가 서예예술의 고도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이러한 특징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컴퓨터 중문 글자체도 일종 한자 글자체이기에 그중의 예술성은

103) 王锦瑾："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研究", 2016 年 5 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컴퓨터 글자체의 외관은 매우 아름다우며 작자의 정감을 포괄하였고 또한 이러한 특징은 현실생활과 작자의 감정을 아낌없이 표현해냈다. 앞서 언급 되었던 컴퓨터 글자체 "수영체"를 놓고 보아도 그 점은 하트모양으로 되어있고 짧은 "丿"는 바람에 휘날리는 버드나무 잎과도 같고 긴 "丿"는 좌측 위쪽 방향으로 휘날리며 "亻"는 이에 호응하여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날린다. "丶"는 아름다운 선조를 처리하여 현성된 것이고 "冖"에도 능과 각이 없다. 이때 한자의 외형은 마치 나풀나풀 춤을 추고 있는 소녀와도 같아 보인다.[104] 그중에 하트형, 버드나무 잎새 모양, 위쪽 방향으로 휘날리는 모양, 사각 원형 등은 컴퓨터 수영체 글자체가 실제생활을 재현한 것이며 이름다운 풍격은 저작자의 정감을 실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컴퓨터 글자체 수영체는 예술성을 구비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필자는 생동하고 아름다운 풍격은 본질상에서 보면 일종 관점인데 필획과 필획구조가 외관양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일종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3)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실용성과 예술성은 분리할 수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위에서 서술한 작품의 속성과 독창성에 대한 요구 외에도 예술성과 실용성이 관념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여야 한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실

104) 王锦瑾："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研究", 2016 年 5 月

용성과 예술성의 관념상의 분리 방법은 위 문장에서 이미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 회사의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글자체 "치안체(倩体)"로 된 "飄柔"두 글자는 일종의 아름다운 방식으로 실용적 기능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의 우아하고 유연하고 아름다운 예술적 풍미도 매우 농후하다. 외관상으로 볼 때 컴퓨터 "치안체(倩体)" 글자체로 된 "飄柔" 두 글자의 자형(字形)의 유연하고 매끄러운 감각은 송체 나 흑체 등 글자체가 비교될 수 없다. "치안체(倩体)" 글자체도 된 "飄柔" 두 글자로 여성 샴프를 묘사하였을 때 이 두 글자가 소비자의 눈에 안겨오는 순간 소비자들은 이 두 글자가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 친절감과 미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고 나서 "飄柔" 두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머릿결이 휘날리고 매끄럽다는 함의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컴퓨터 "치안체(倩体)"로 된 "飄柔" 의 실용성과 예술성을 비교할 때 그 예술성이 훨씬 우선한다. 동시에 "飄柔" 두 글자가 "치안체(倩体)" 글자체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글자 자체의 휘날리고 매끄럽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기에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도 없다. 따라서 컴퓨터 "치안체(倩体)" 글자체는 "飄柔" 두 글자의 예술성에 대한 공헌은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컴퓨터 "치안체(倩体)" 글자체로 된 "飄柔" 두 글자는 예술성과 실용

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그 예술성은 응당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뽀오우지에 회사가 등록상표에 “치안체(倩体)” 글자체로 된 “飘柔” 두 글자를 사용하였는데 뽀오우지에 회사가 전통적인 글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치안체(倩体)” 글자체를 사용했다는 것은 “飘柔”두 글자 글자자체의 함의를 본 것이 아니라 “치안체(倩体)” 글자체의 예술성을 보았기 때문이다.[105] 이 또한 관념상에서 컴퓨터 글자체의 예술성과 실용성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은 컴퓨터 글자체의 예술성과 실용성이 관념상에서 분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표준중 하나이다. 그 주요한 모순은 작자가 창작을 함에 있어 실용성 기능이 얼마나 큰 작용을 발휘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만약 작자가 글자체 형태의 예술설계를 함에 있어 완전히 글자체의 실용성 기능의 방면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예술성과 실용성이 관념상에서 완전히 분리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컴퓨터 글자체의 예술창작을 함에 있어 한자의 가장 기본적인 글자 필획과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한자의 기본 형태는 동요될 수 없고 창작자는 단지 이러한 조건하에서 예술적 요소에 대해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외관형식을 설계할 수 있다.

105) 陶鑫良, 潘娟娟：“商业广告宣传中字体单字使用的著作权辨析——从 “飘柔”倩体字形著作权侵权诉讼案谈起”, 载于《电子知识产权》, 2011 年第 4 期第 73 页。

2.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독창성 분석

(1) 컴퓨터 글자체의 독창성 판단

컴퓨터 글자체와 “유일한 표현”

작품이 독창성을 구비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창작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즉 사상표현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사상의 표현방식이 유일한 상황에서는 이를 “유일한 표현” 또는 “사상과 표현의 합병”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면 그 방식은 새로운 것이 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타인이 사용한 방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현은 작자의 판단과 선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작자의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러한 표현은 독창성의 요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이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범위에 귀속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상술한 논술에서 알 수 있다시피 컴퓨터 글자체의 독창성은 “유일한 표현”과는 다른 것이다. 양자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컴퓨터 글자체의 창작성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들 수 없다. 첫째, 한자를 착안점으로 하면 한자의 구조특징은 유일무한 것이고 이는 창조성에 좋은 기초를 마련해 주었으며 글자체 창조에 충분한 공간을 남겨주었다.[106] 필획과 필획구조는 한자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 부분은 고정불

106) 王兴国：“表象性与形式美：汉字艺术之本”, 载于《汉字文化》, 2014 年第 1 期。

변 한 것은 아니다. 필획을 놓고 보아도 종류에서 필획은 횡, 측, 피에 등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매개 필획은 또 기세, 추세, 전환, 마무리등 요소의 집합체이다. 형태상에서 필획은 또 크고 작음, 길고 짧음, 방원, 성김과 빽빽한 등 구별이 있다. 필획구조도 간단한 것이 아니며 상중하, 좌중우 등 6위의 구조관계를 이루고 있어 상당히 복잡하다.[107]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컴퓨터 글자체의 창작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공해주었으며 컴퓨터 글자체 외관양식이 다양한 것이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인증하였다. 필자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위회사의 한이 폰트 홈페이지에 컴퓨터 글자체에 대한 묘사가 133여종에 달한다고 한다.[108] 이는 상술한 관점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컴퓨터의 발전과정을 놓고 볼 때 TrueType, OpenType 기술은 컴퓨터 기술 발전과정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이때 컴퓨터 글자체의 다양화는 더 이상 한 가지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로 되었다. 간단하고 중복적인 컴퓨터 글자체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많은 풍격의 여러 가지 글자체나 잇달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컴퓨터 글자체도 서예글자체의 풍격을 아낌없이 표현해낼 수 있게 되였다.[109]

107) 江苏省南京市中级人民法院（2011）宁知民初字第 60 号民事判决书。

108) 陶鑫良，潘娟娟："商业广告宣传中字体单字使用的著作权辨析——从"飘柔"倩体字形著作权侵权诉讼案谈起"，载于《电子知识产权》，2011 年第 4 期第 73 页。

109) 丁峰："汉字造型设计的审美价值及其发展趋势"，南通大学学报，2006.

(2) 컴퓨터 글자체 독창성 분석

일반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글자체는 두개의 큰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컴퓨터 글자체 즉 예를 들어 송체, 해체 등과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형의 컴퓨터 글자체이다. 이러한 글자체는 풍격이 특이하고 개성이 풍부하다. 이는 한자의 기본 형태에 기초하여 작자가 자신의 능동성 있는 재가공을 거쳐 산생된 산물이다. 첫 번째 유형의 컴퓨터 글자체를 보면 이미 사회각 방면에 널리 퍼졌으며 공유 글자체로 되였다.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보통 전문적으로 독창성에 대해 분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의 글자체는 외관양식과 풍격이 특이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컴퓨터 글자체의 독창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독창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두 번째 유형의 컴퓨터 글자체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상술한 문장에서 이미 독창성의 표현중 하나가 타인의 힘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즉 복제나 표절을 하지 않고 작자가 직접 독립적으로 창작을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글자체의 창작에서 소위의 독립적인 창작이란 작자의 생각과 디자인이 모두 자신의 실력으로 완성된 것임을 말한다. 이에 대해 판단할 때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창작과정이다. 한 가지 컴퓨터 글자체의 생성을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글자체의 풍격을 구상하고, 디자인을 조정하고, 글자체를 정하는 등 방면에서 모두 심사숙고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도 대략 1-5년 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는 외관양식이다. 컴퓨터 “치안체(倩体)” 글자체를 예로 들면 디자이너는 우선 먼저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었으며 기조를 화려하고 유연하며 아름다운 풍격으로 정하였다. 그다음 손으로 직접 그리고, 스캔, 수정, 품직검증, 코딩 등의 창작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그 외관양식은 유일한 것으로 되였고 이를 “독립적으로 완성”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독창성의 표지 중 두 번째는 창조성이다. 작자는 컴퓨터 글자체의 매개 필획에 대해 그려야 하는 외에도 거시적인 각도에서 필획구조와 필획의 위치를 잘 배치하여야 한다.

(3) 컴퓨터 글자체 단자의 독창성 분석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거나 역사적으로 산생된 글자에 대해서는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 점은 논의할 바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치안체(倩体)” 글자체에서 이러한 새로 창작된 글자가 미술저작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크다. 본 논문은 컴퓨터 “치안체(倩体)” 글자체 단자는 창작공간이 없는 간단한 글자를 제외하고는 독창성 요구에 부합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원인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저작권 관련 이

론에서는 독창성 또는 오리지널 창작은 두 가지 요구를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 한 방면은 작자가 표절이나 복제를 하지 않은 독립적인 창작이고, 다른 한 방면은 일정한 독창성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 즉 작자의 개성을 체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안체(倩体)” 글자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풍격과 이념으로 설계해낸 것으로서 독창성의 요구에 부합되다. 폰트 중 매개 글자의 최종 형태의 결정은 모두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념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이기에 디자이너의 지적창작을 체현하였고 프로그램과 컴퓨터는 모두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보조적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지는 막론하고 디자이너의 선택, 창작과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것이 창조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중국 지식재산권법 왕치안 교수는 만약 어떠한 유형의 글자체가 이미 국가표준 형태로 되였지만 오래 동안 유전 되여 내려온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서예가를 청하여 제작한 것이면 이는 서예가 개인의 예술적 시각을 체현하고 개성화적인 미감을 구비하며 전 사람의 글자체와 식별 가능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러한 글자체도 미술저작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110]

(4) 컴퓨터 글자체 단자의 독창성 판단

독창성적인 외재적 표현을 구비하여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

110) 王　迁：《网络环境中的著作权保护研究》，　法律出版社 2011

다. 글자체 단자에 있어 글자체는 비록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글자체 유형과 자형구조에 기초하여 생성된 것이지만 글자체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식별 가능한 기능성을 초과한 표현성 부분과 내용을 추가하고 디자이너가 단독으로 창작을 한 것이면 이러한 글자체는 독창성의 요구에 부합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상술한 분석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다수 상황에서 중문 글자체 단자는 이미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독창성의 요구에 부합된다. 저작권법의 창조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미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비록 매 글자체 또는 매개 글자마다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단 독창성이 없다는 한마디로 모든 글자체 작품을 법률이 보호하는 범위 밖으로 밀어 내던지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독단적인 배제는 저작권법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권위성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관련영역에 위협과 부담을 갖다 주게 된다. 이 단계에서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법률적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개별적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실무 중에서 충분히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글자체 단자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자가 독창성을 구비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규정에서 규정하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단자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실무에서의 난제의 하나로 될 것이다. 필자는 다음 몇 가지로

부터 컴퓨터 글자체의 단자의 독창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예술성이 실용성을 초과. 글자체는 예술성과 실용성이 분리될 수 있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작품은 예술성이 있어야지 실용성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글자체 단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조건 예술성을 구비해야 함을 요구한다.

둘째, 일반대중의 심미를 표준으로 한다. 즉 최소한도의 독창성을 구비하면 되며 단자의 독창성에 대해 너무 크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미크론[111]을 단위로 하면 어떤 글자든지 모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으로 단자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며 소송압력과 부담을 더하게 된다.

셋째,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지의 여부.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면 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장된다.

넷째, 폰트내의 단자의 디자인 과정이 창작인가 아니면 노동인가. 이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점이다. 창작과 노동 이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은 노동 가치와 노동량을 들인 인류활동을 말하는데 체력노동과 지적노동을 포함한다.

중국 지식재산권 교수 류춘티안은 실제상 폰트는 일종 실용성이 있는

111) 미크론: 100 만 분의 1m

제품으로서 자동적으로 한자를 생성하는 도구라고 말한다. 그 작업 원리는 실제상 일관적인 작업과정에서 산생된 것이며 제품이 통일적이고 생산 패턴이 고정적이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창작이 없고 단지 노동력만 들였기에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단자는 폰트중의 한 가지 제품이기에 폰트와 같이 작품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12] 단자의 설계에 실은 두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노동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창작 부분이다. 폰트의 창작과정에 많은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라는 것은 승인해야 한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글자체가 가장 관건적인 것이다. 폰트의 풍격은 디자이너가 설계한 매개 단자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치안체(倩体)” 글자체가 갖고 있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특성은 디자이너가 단독으로 창작해낸 것이며 이러한 성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3.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에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의문

(1)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문 분석

1) 응용미술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선택

컴퓨터 글자체를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때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술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가? <베른조

112) 刘春田：《知识产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약>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국은 응용미술저작물에 과한 보호에 있어서 저작권법 이외의 법률로 보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저작권법적 보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이다. 저작권법에서 글자체에 대해 명확한 열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실무에서 중국내 일부 법원에서는 어떤 글자체에서 문자 자체가 일종 미술저작물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면 중문 글자체를 응용미술저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술적 저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또 아니면 미술저작물로 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이는 글자체 권리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와 보호기간이 얼마인가에 영향된다. 둘째, 이는 행위자의 권리문제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전시권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셋째, 이는 외국 글자체 특히 중문 글자체가 중국에서 어떤 보호를 받는가와 관련된다.

응용미술저작물의 곤경: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문제는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논쟁되어 왔다. 중국은 1990년부터 2010년 까지 <저작권법>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과 보충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과 보충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제기하지 않았다. 중국은 1992년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저작권이

더 잘 보호받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베른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1990년 때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저작권법 중 일부 내용이 <베른조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 규정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 보호에 관해 전문적인 규정을 하였다. 즉 외국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 보호하는 기간은 동 작품을 완성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25년이다. 미술저작물이 공업제품에 사용 되였을 때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베른조약>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보호에 관한 요건으로는 "본 협정의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는데 기초하여 본 협정의 모든 성원국은 자신의 입법으로 자신의 법률이 어떠한 상황에서 공업품의 입체와 평면설계 및 응용미술저작물에 적용되며 법률적용 조건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발원지 국가에서 입체와 평면설계로" 보호를 받는 작품에 대하여 본 협정의 기타 성원국에서도 입체 및 평면설계로서 보호를 한다. 보호받는 예술적 저작물중의 응용미술저작물과 촬영 작품의 법률보호기간은 각 성원국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작품 완성 후 25년 이라는 시간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규정과 같이 중국이 1990년에 제정한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 한다. 왜냐하면 만약 응용미술저작물이 그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따로 베른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문적으로 규정에서 외국인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 25년이라는 보호기간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중국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기타 작품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1990년의 법에 의해 중국공민의 응용미술저작물은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만약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은 <베른조약>을 순조롭게 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면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대폭으로 <저작권법>에 대해 수정하였는데 그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다.

응용미술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선택 및 후과:

중국이 2001년에 새로 수정한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응용미술저작물은 주요하게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하게 된다. 첫째, 예술품을 공업용도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벽지, 카펫 등에 사용되는 도안은 워낙 미술저작물인데 공업목적으로 사용 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도안의 저작권자 또는 설계자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중국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외국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작품이 완성 되어서 부터 25년 이다. 하지만 미술저작물이 공업제품에 사용 되였을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중국에서 첫 번째 경우의 응용미술저작물은 사실상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벽지나 카펫 같은 제품은 단지 공업생산으로 제조된 제품이지만 일정한 예술성을 구비한다. 예를 들면 외관특성이나 디자인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술품도 보호한다. 사실 이 두 가지 상황 사이에는 명확한 분계선이 없으며 양자는 모두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하나의 예술품이 하나의 제품에 사용 되어 실용성 요건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디자이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 두 가지 상황사이의 계선이 분명하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해결이 힘들다.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면 이는 많이 쉬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따로 보호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제기 되었던 실용성물품과 예술성물품에 대해 구분이 힘들듯이 여기서도 구분이 매우 힘들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나라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공업목적에 사용되는 제품을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 <베른조약>은 여러 번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번마다 실패로 끝났다. 일본, 헝가리, 노르웨이, 영국 등 나라에서는 모두 프랑스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하지 않다고 본다. <베른조약>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오늘날의 관련규정에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 상에서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이로서 결말을 맺었음을 설명한다. 현재의 <베른조약> 에 가입한 성원국의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입법법호 상황

은 대체적으로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으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 이중적 보호를 한다. 둘째, 부분적인 이중보호. 이 상황에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만 이중보호를 한다. 셋째, 이중보호를 하지 않는 성원국.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공업디자인과 예술적 저작물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예술적 저작물만 보호하고 공업디자인에 대해서는 저작권적 보호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양자를 구분함에 있어 다른 나라에서 선택하고 적용하는 표준도 서로 상이하다. 현재 중국은 어떻게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와 <저작권법> 및 산업정책과 국제조약의 관계를 잘 조절하는가의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은 현재까지 법적효력을 가진다. 특히 중국 1991년에 수정한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를 기초로 외국인의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25년이라는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2001년에 중국에서는 또 <저작권법>에 대해 수정하였는데 응용미술저작물의 문제에 대해 타당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외국인 우대”의 규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진짜 그렇다면 이는 확실한 국내지식재산권 산업정책과 국가정책이 부합되는 않는 것이다. 중국은 내국민과 외국인을 차별 없이 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이 단지 중국이 <베른조약>에 순조롭게 가입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2001년의 저작권법 수정에서 이러한 불평

등한 대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부 연구학자들은 중국이 2001년 저작권법을 수정한 후 국민의 응용미술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은 이전에 제정된 규정이기에 후순위 적용규정에 속하며 2001년에 수정된 <저작권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하였으므로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는 수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이 외, 또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만약 응용미술저작물에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한다면 보호기간이 너무 길지 않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우며 아직까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아직 5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고 25년이라는 보호기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논증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사한 작품에 대한 보호기간은 50년이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외에 국제적 추세를 볼 때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113] 나머지 문제는 컴퓨터 중문 글자체를 어떤 유형으로 획분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미술저작물로 획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국 등 나라에서처럼 이를 응용미술저작물로 획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론적 및 현실적 의미가 있기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컴퓨터 글자체를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113) 吴伟光：《中文字体的著作权保护问题研究——国际公约、产业政策与公共利益之间的影响与选择》，《清华法学》2011 年第 5 期。

중국 현행의 <저작권법>의 기본이념과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이는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정책의 객관적 요구이기도 한다. 적절하고 유형을 나누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정책의 핵심적은 이념이며 중국의 각종 기술창조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잘 보호하고 제도적 우세를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국내 산업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목적이다. 컴퓨터 중문 글자체 산업은 중국에서도 한 가지 특색이 있는 문화산업이다. 현재 이 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하였다. 글자체 디자이너와 글자체 기업이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고 글자체 디자인 관념과 기술이 낙후하며 불법복제 현상이 대량으로 존재한다. 이 외에 <베른조약>의 규정에 의하면 중문글자체가 응용미술저작물로 된다면 성원국 중 글자체에 대해 보호를 하지 않은 나라의 글자체가 중국에서 저작권적 보호를 받는 것을 피면할 수 있고 나아가 중국 글자체가 더욱 좋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중국 글자체 산업의 발전에 더욱 많은 보장과 동력을 더해준다.

2) 컴퓨터 글자체와 편집저작물

상술한 문장에서 언급 되었던 중이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건에서 원고는 중이폰트는 GB13000.1/GBK 표준이 규정하는 한자 코드와 글자체에 따라 자기절로 창작한 흑체와 송체의 대응되는 문자부호를 글자와 합해서 편집하여 두 가지 유형의 폰트를 형성하였기에 이는 미술저작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이회사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은 원인은 중이회사가 편집저작물에 대한 이해가 틀렸기 때문이다. 필자는 편집저작물의 정의로부터 컴퓨터 글자체가 편집저작물이 맞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면 "편집저작물이란 여러 작품, 작품의 단락 또는 작품으로 구성되지 않는 데이터나 기타 재료들을 편집하여 그 내용의 선택이나 편집에서 독창성을 체현한 작품이다."[114] 편집자가 바로 이러한 작품의 저작권자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 원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편집저작물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편집물. 이는 일부 작품의 단락이나 일부 작품들을 편집하여 얻어낸 작품이다. 둘째, 데이터 보호. 저작권보호를 받지 않는 데이터나 사실들을 한데 모아 얻어낸 작품이다. 사실편집과 특정작품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관건적인 것은 내용의 편집 또는 선택에 있어 독창성이 있는가 하는데 있다.

총적으로 말하면 편집저작물의 독창성은 내용의 편집이나 선택에서 나타나며 그 내용 자체가 독창성이 있는지 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때문에 어떠한 폰트가 편집저작물 인지를 판단할 때 폰트 작자가 폰트를 창작할 때 폰트중의 단자에 대해 독창성적으로 배정하거나 선택하였는지를 보면 되고 폰트 중 글자가 독창성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폰트

114) 王　迁：《著作权法》，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5

작자는 폰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자와 한자부호 코드의 국가표준에 따라 조작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GBK, GB2312-80등이 있다.[115] 그 중 GB2312-80표준의 전칭은 "정보교환용 한자코드집합"이다. 이는 국가표준국에서 발행한 중문간체 글자부호집합의 국가표준이다. 동 표준에 수록된 한자는 모두 8763개가 있으며 기본상 컴퓨터 한자의 처리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동 표준은 폰트를 제작할 때 요하는 글자부호 수자와 매개 글자부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폰트 저작자는 전체 개발 과정에서 폰트중의 매개 글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독창성도 발휘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는 폰트는 많은 데이터화 글자부호 집합으로 구성 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입력법이나 기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수요에 따라 다른 글자부호를 전용한다. 폰트 중 글자부호의 순서는 전용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않는다. 폰트 개발자가 폰트를 개발함에 있어 배열하거나 편집하거나 폰트 중의 단자를 선택하는 등 작업을 하지 않았기에 폰트의 개발행위는 편집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폰트 중 단자에 대해 독창적인 배열을 하였다거나 선택하였다고는 더욱 말할 수 없다.

필자는 독창성적인 배열이나 선택이 있어야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폰트 개발자가 폰트를 개발한 후 폰트를 시장에 진출 시키는데 국가 관련부문은 전국 범위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상업

115) 百度百科：《信息交换用汉字编码字符集》。http://baike.baidu.com/view/25492.htm, 最后访问日期 2018 年 8 月 18 日。

단체, 공장, 및 기업이 사용하는 한자 데이터와 자형(字模)에 대해 고정적으로 검증을 한다. 따라서 국가표준을 지키지 않은 단위, 개체에 대해서는 중국 표준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다.

3) 컴퓨터 글자체와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

중국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파일이다. 그중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및 기타 정보처리 도구로부터 집행 가능한 코드 또는 컴퓨터 코드로 전환 될 수 있는 부호화적인 언어를 말한다. 이는 주요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 프로그램과 원시 프로그램이다. 원시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고급 컴퓨터 언어로 편집한 것이며 기타 프로그래머 들이 이해할 수 있다. 목표 프로그램은 고급 컴퓨터 언어에 대해 전화한 데로부터 얻어낼 수 있으며 컴퓨터만이 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컴퓨터 파일이란 프로그램을 운행할 때 관련사용방법, 설계, 규격과 내용의 도형, 문자 등을 표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수첩이라든지 설명서 등이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때 보호범위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집행되는 관련 파일과 프로그램 코드이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성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되었다고 하여 프로그램 작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특

정 글자체가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용된 것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하여 프로그램 작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에 의하면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에 송하지만 글자체 자체 및 단자는 프로그램 작품이 아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이 관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파일과 프로그램 코드에 한한다.

(2)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저작권보호 난점 분석

1) 글자체 단자의 실용성이 예술성 가치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가

위 문장에서 서술한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회사의 사건에서 뽀오우지에 회사에서 왜 이미 보호기간이 지난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흑체나 송체와 같은 글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방정회사의 “치안체(倩体)” 글자체를 선택하여 “치안체(倩体)” 글자체로 된 “飄柔” 두 글자를 일련의 주품 외부포장에 사용하였는가? 만약 송체나 흑체 등 단자를 사용하였다면 권리침해의 위험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도 글자 자체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안체(倩体)”를 선택한 원인의 핵심은 바로 심미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뽀오우지에회사의 샴푸 제품에 있어 “치안체(倩体)” 글자체가 유연하고 아름다운 풍미를 더 잘 나타

낼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뽀오우지에 회사에서 “치안체(倩体)” 글자체를 선택하여 “飘柔”를 표현한것은 그 실용성을 전달하기 위한것이 다니고 글자체의 예술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치안체(倩体)” 글자체는 심미적 의의가 있고 독창성이 있다. 따라서 단자의 실용성과 예술성을 혼동하거나 실용성기능으로 예술성 기능을 전복하는 것 것은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

저작권법의 이론에서 알 수 있는바 예술 자체는 법률에 의한 소송가능성(be sued)을 가지지 않는다. 심미적 가치와 예술가치는 모두 법원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될 수 없다. 외국에서 이 이론은 또한 미학 불차별원칙 이라고도 불리운다.[116] 이렇게 하는 원인은 법원에서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 판사 개인의 심미적 선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가 심미적인 독특성이 없다고 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일부 연구자들은 컴퓨터 글자체는 정보전달 및 감정교류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실용성을 더 중시하기에 글자체 단자의 독창성 판단표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응용미술저작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심미적 의의이다. 실용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적지 않은 기업에서는 독특한 글자체를 사용하여 상

116) 王锦瑾：“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研究”, 2016 年 5 月

표와 광고를 설계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선택에는 글자체의 미감과 예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실용성이 글자체의 주요한 기능이기는 하나 실용성이 있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 동일한 풍격의 글자체 단자가 “상호 독창성을 부정”을 야기하는가

위에서 서술했던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 회사의 소송사건에서 원심법원은 같은 중문글자체의 동일한 독창성 풍격의 단자가 호상 독창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飄柔” 두 글자가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방정회사에서는 뽀오우지에 회사에서 사용한 “飄柔” 두 글자가 “치안체(倩体)” 글자체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법원에서는 “동일한 글자체의 다른 단자를 놓고 볼 때, 각 단자 사이에는 통일된 풍격이 있고 매개 단자는 모두 독창성적인 작품으로 구성될 수 있기에 각 단자 사이에서 독창성을 상호 부정하게 된다……” 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또한 “치안체(倩体)”, “약한 치안체(倩体)”, “중 치안체(倩体)”, “굵은 “치안체(倩体)” 사이의 풍격이 일치하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만약 이 세 가지 “치안체(倩体)” 글자체가 모두 독창성이 있는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3가지 글자체간에 쌍쌍으로 상호 독창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작품은 작자의 인격을

체현하고 작자 자신만의 독특한 풍격을 나타낸다. 특히 응용미술저작물에서 작자의 창작 풍격은 보통 식별력이 높고 고정적이다. 국화독창성을 판단할 때 한 작자의 다른 시기에 작성한 작품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같은 작자의 다른 시기의 작품은 모두 작자의 예술 풍격을 띠고 있다고 하여 후에 창작한 그림이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림은 모두 동일한 작자가 창조한 것이기에 통일적인 예술 풍격을 띠고 또한 모두 독창성을 띤다.

위에서 제기되었던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 회사의 소송사건에서 “飄柔” 두글자는 “치안체(倩体)” 글자체로 되어있는데 이 두 글자와 “치안체(倩体)” 폰트중 다른 단자의 자형은 확실히 통일된 독창성 자형(字形)특징과 글자풍격을 띠고 있다. 화려하고 유연하며 아름다운 소녀가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이러한 설계이념은 매개 “치안체(倩体)” 글자체 단자에 이미 적용되었고 이 또한 “치안체(倩体)” 글자에 단자 사이에 공동으로 있는 독창성 표현이다. “치안체(倩体)” 글자체 단자가 독창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풍격을 띠고있는 “치안체(倩体)” 단자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체(倩体)” 글자체 단자와 다른 글자체의 단자를 비교해야 독창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글자체 단자가 공업제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중문 글자체, 자형(字模), 폰트는 모두 공업제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창성이 있는 단자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보고 있고 광고나 홍보 또는 제품의 외부포장에 운용되어 심미적 의의를 표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문글자체 단자는 공업제품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공업제품의 광고나 홍보 또는 외부포장에 마음대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침해 행위라는 것을 확정하는 판례가 이미 많이 이루어 졌다. 이 문제에 있어 컴퓨터 글자체를 응용미술저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술저작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토론할 때 이미 상세하게 서술하였기에 여기서는 더 논술하지 않는다.

4) 창작수단이 컴퓨터 중문 글자체의 단자의 저작권속성에 영향 되는가

컴퓨터 글자체 단자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논쟁에서 독창성 판단 이외에도 글자체의 창작수단이 컴퓨터 글자체 단자의 저작권보호에 영향되는가가 또 한 가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저작권법 이론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 법률이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지적 노동성과이다. 정보기술과 컴퓨터가 컴퓨터 글자체의 창조에 있어서는 서예시 사용되는 종이나 붓과 다름없이 단지 일종의 보조적인 도구이다. 컴퓨터 글자체를 보면 그 창작 과정에 정보기술과 컴퓨터기술을 사용하였지만 글자체의 외관과 풍격은 모두 저작자가 스스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을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였다고 해도 컴퓨터는 글자체의 디자인 구상과 외관설계에 자주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예술풍격이 완전히 같거나 완전히 다른 글자체 단자를 형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컴퓨터기술을 통해 디자인 해낸 중문 글자체는 그 창작수단이 글자체 본래의 속성을 개변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여전히 저작자 본인의 지적 노동성과 이며 작자 자신의 창작과 상상력을 개변할 수 없다. 류춘티안 교수는 창조와 노동은 완전히 다른 것이며 지식재산권이 보호하는 것은 창조이지 노동이 아니라고 하였다.[117] 이 관점에 의하면 방정"치안체(倩体)"와 같은 컴퓨터 중문 글자체는 모두 창작자가 맨 처음의 원고로부터 하나하나 컴퓨터에 기입해 넣고 또다시 컴퓨터를 통해 조합하고 수정하는데 이 과정이 하나의 창조 과정이며 작자가 원고에 기초하여 컴퓨터기술을 빌어 글자체를 수정하고 미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컴퓨터로부터 출력된 글자체 단자는 데이터 기술에 의한 것이지만 이는 작품의 속성에 영향되지 않는다. 폰트 중 임의의 글자의 최종형태는 모두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념에 근거하여 디자인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한 것이며 디자이너의 지적창작의 결과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단지 보조적인 도구이다. 이러한 보조적 수단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디자이너의 판단, 선택 및 창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폰트가 단지 특정된 일관된 생산과 표준에 의해 생산된 모든 것이 특정 규정

117) 刘春田：《知识产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내에서 형성 되었다는 관점들은 사실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왕치안 교수는 만약 어떠한 글자체가 이미 국가표준형태로 되였지만 예로부터 오래 동안 유전 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서예가를 고용하여 씀으로서 서예가의 개인적인 예술 시각이나 개성과 미각을 체현하였고 선인의 글자체와 식별가능한 차별이 있을 경우 이러한 글자체도 미술저작물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글자체가 데이터화 처리를 거쳐 폰트를 형성하여 프로그램에 저장된다 해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18]

5) "문자(文字)의 독점" 을 야기하지 않는가

컴퓨터 글자체 단자에 저작권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공중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도 컴퓨터 글자체 법률보호 문제나 나타나서 부터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화제이다. 일부 학자들은 단자를 보호해 준다면 대중이 글자체를 사용함에 있어 혼란을 조성하게 되고 일반 대중은 어떤 글자체가 보호를 받고 어떤 글자체가 무료사용이 가능한지를 분별하기 힘들다. 만약 글자체 저작권이 몇몇 소수회사에 의해 장악하고 공제된다면 공중이익에 손해가 될 것이며 중국 문화의 발전과 전파에 극대한 저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중문 글자체에 대한 독점이

118) 张玉瑞："论计算机字体的版权保护"，《科技与法律》2011 年 01 期，第 59 页。

아니다. 글자체 및 단자를 보호할 때 보호하는 것이 그 형태이지 글자체 본체의 뜻이 아니다. 글자체의 함의는 여전히 대중들이 사용가능한 부분이다. 중문 글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그 문자의 뜻에 대한 보호가 아니며 대중들은 한자를 사용하여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가 있다.

글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중문글자체의 고정적인 구조와 필획에 대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글자의 일반적인 쓰임은 여전히 공중영역의 범주이며 누구도 이를 독점할 수 없다. 하지만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글자체 원형에 대해 디자이너가 자신의 생각으로 장식하고 미화하여 독창성적인 외형을 구비하게끔 만들어 내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문글자체의 구조 및 필획규칙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초에서 풍격이 다른 글자체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컴퓨터 글자체의 예술형태가 풍부하고 다양해지게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중문글자체의 발전에 유리하다. 폰트 회사에 있어 글자체를 디자인할 때 국가표준에 기초하여 시장수요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가입하여 독특한 글자체를 디자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여 컴퓨터 글자체가 대다수가 무료이고 소수가 유료로 사용되는 패턴에 영향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컴퓨터 글자체의 사용자는 충분한 선택권이 있는데 있다. 사용자가 대체 유료 글자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무료 글자체를 사용할 것인지는 모두 스스로 선택하고 정할 수 있다. 관련 조사에 의하

면 오늘날의 상업성적인 중문 글자체에서 95% 이상이 모두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자유글자체이며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문 글자체 및 단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중문 글자체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 매개 글자를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어 사회 안정과 공중이익에 해가 된 다는 데에 대하여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발생가능성도 없는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 그 외, 보호기간 내에 있는 독창성을 가지는 글자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매우 적다. 중국내 현재의 저작권 체계에서 중문 글자체의 사용방법에는 무료와 유상이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공중이익과 컴퓨터 글자체를 더욱 잘 보호하려는 목적에 부합된다.

제4장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

제1절 컴퓨터 글자체 권리내용 및 라이선스

컴퓨터는 이미 간의 생활과 불가분리 한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생활의 각 영역에서 사용빈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타작품들과는 대비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 내용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포함된다. 그중 재산권은 발행권, 복제권 등이 포함되고 저작인격권은 서명권, 발표권 등이 포함된다. 글자체 작품의 창작자가 권리소유자이며 타인에게 저작권 라이센스를 주어 타인이 자신의 작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법률규정과 법리에 부합된다. 기타 사람은 저작권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권리자의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실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에서 다운, CD구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얻은 것이며 자신이 폰트 중의 컴퓨터 글자체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위 논문에서 제기되었던 방정글자체와 같이 방정회사의 운영 패턴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저렴한 가

격으로 방정회사의 방정폰트 CD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하고 나서 이를 컴퓨터에 설치하기만 하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매우 용이하다. 하지만 CD중의 사용자 허가계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련의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프로그램을 한 개의 컴퓨터에만 설치하고 운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방정회사가 해당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자 권한을 상업적 용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단지 비영리 활동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단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려면 무조건 방정회사로 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용도가 저작권자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면 무조건 저작권자로 부터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권리침해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대중이 컴퓨터 글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못하기에 적지 않은 경우 창작자 자체가 라이센스 규칙을 정한다. 하지만 묵시적 허가의 범위나 허가에 드는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 권리자마다 표준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폰트의 허가비용은 몇백 위안에서부터 몇만 위안까지 있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다름에 따라 가격이 다소 상이하다. 대다수 경우 사용자가 권리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막연해 할 것이다.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할 때 사용자와 권리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폰트의 허가규칙은 개발자가 정한 것이기에 사용자는 공평한 담판을 하기 힘들

것이다.

제2절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의 한계

1. 컴퓨터 글자체에 관한 저작권적 보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인류사회가 형성하고 발전하게 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문자를 떠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컴퓨터 글자체,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를 보호하는 것에 따른 글자체 기업의 글자체에 대해 독점권이다. 첫째, 글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 대중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각 컴퓨터에서 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글자체 중에도 일부 글자체는 저작권이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글자체를 사용했거나 이미 사용되었다면 권리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나타난다. 둘째,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을 보호해 준다면 대

중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저애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현실에 입각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문 글자체만 약 400여 가지가 있다. 그 표현방식은 단일한 것이 아니다. 특히 현재의 주류 글자체인 송체, 흑체 등은 무료글자체이기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우려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단지 첫 번째 우려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하여 저작권자와 사용자, 산업발전과 사회공중이익의 평형을 찾는 것으로 “사람마다 권리침해자”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한제도를 통해 글자체와 연관된 저작권자와 글자체 사용자, 산업발전과 공중이익의 평형을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사용제도, 권리소진 제도, 묵시적 허가제도 이다.

2. 이익평형의 원칙에 기초한 고려

법률의 존재는 사회의 공정과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익분쟁에 대한 판단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법은 공중의 자유권리, 창조자의 지식재산권과 투자자의 합법적인 경제적 수익을 평형하는 법률제도이다. 법률은 공평공정의 유지를 위한 판단에 있어서 각 측의 수요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컴퓨터 글자

체 저작권보호에 관한 제한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산업발전의 이익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개선되었고 컴퓨터는 일반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록 사람들이 컴퓨터 글자체를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만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부족하다.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약 십여 년 동안 글자체 업체가 수십 개에 이르렀고 그 규모도 방대하였으며 글자체 종류도 수백 가지가 되었고 퀄리티 또한 매우 좋았다. 하지만 근 몇 년간 중국내에 불법복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그러한 이유로 글자체 산업의 이익공간이 침범되어 글자체 업체의 수입이 급속히 줄어들자 폰트 디자이너의 창조성에 일정한 정도의 타격을 주었다. 현재 매년마다 시장에 출시되는 글자체는 점차 적어지고 있으며 그 수는 수십여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출시되는 글자체도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는 글자체가 400여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현재 일본의 3000여 가지의 글자체 수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어의 형식은 중국 한자에서 많이 유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글자체는 중국의 7배가량이나 된다. 컴퓨터 글자체와 같은 새로운 창작성으로 요하는 산업에 있어 지식

재산권제도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지식재산권이 글자체와 관하여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법률의 제정과 글자체 산업의 발전은 평형을 이룰 수 잇을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판단기준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독점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동시에 매우 높은 판단기준을 설정함으로 모든 새로운 사물이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특정의 합리적 범위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기간과 판단기준 등에 대해 모두 완전한 체계가 있기에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기에는 어렵다.[119]

(2) 공공이익에 대한 고려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이익이다. 매개 법률의 제정과 수정은 모두 일정한 효력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도에 대한 수정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예측하여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문자는 중화문명이 수천 년에 거쳐 형성된 것으로서 커뮤니케이션과 역사를 기재하고 전승하는 도구이다. 의사표현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 기능을 주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며 이는 전체 사회의 공유재산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해준다는 것은 곧 대중들

119)钟瑞栋：“论著作权法中的平衡精神——以版权穷竭制度为个案”，载于《厦门大学法学评论》2001 年第 1 期。

은 글자를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컴퓨터 글자체에게 저작권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공중의 이익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상술한 관점에서는 "문자"와 "글자체"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글자체는 문자와 다르며 글자체는 문자의 일종 표현형식이다. 문자는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도 독점할 수 없다. 하지만 글자체는 글자체 디자이너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을 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합리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도 당연하다. 더 나아가서 현재 글자체중 90% 이상이 모두 무료로 대중들의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이 심미적 수요를 상대로 개발해낸 것이다.[120] 특수글자체는 모두 글자체 디자이너가 노력을 들여 창조해낸 것이기에 일정한 창조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로 인해 일부 글자체의 사용자가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는 정상적인 소비이며 이 또한 글자체 산업이 받아야 할 대가이다. 따라서 일정한 보호정책은 컴퓨터 글자체의 발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산업발전과 사회 공중이익

통상적으로 사회에 다양한 글자체 형식이 존재하여 더욱 많은 선택이

120) 张玉敏："字形、字库、字库软件的法律保护问题"，载于《中国版权》2011 年第 5 期，第 25 页。

주어진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유리하다. 대중들은 퍼블릭도메인에 있는 무료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글자체를 사용하는 동시에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법률의 보호 작용에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컴퓨터 글자체 업계에서 자체로 기호를 잡고 글자체와 사용자사이의 의지하고 상호 추진하는 상업 패턴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한이회사를 예로 들면 한이회사에서 회사 홈페이지에 <한이 폰트 지식재산권 최종사용자 허가 계약>을 공포하였는데 이 계약에서는 몇 가지 권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다.[121] 오늘날 글자체 단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단자에 관한 지식재산 소유권을 판단하는 데에는 아직도 일정한 문제가 존재한다. 현실에 입각하여 폰트 업계나 사회대중이나 모두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는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대중이 더욱 많은 새로운 글자체를 얻기 위해서는 글자체 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어 창작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때문에 하나의 형평적인 온정한 포인트를 찾아 폰트도 보호하고 폰트의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더욱 합당한 평형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폰트 산업의 창작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무료 글자체 또는 유상 글자체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양쪽이

121) 《汉仪字库知识产权最终用户许可协议》, http://www.hanyi.com.cn/agreement.html, 2018 年 9 月 1 日访问。

모두 만족스러워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고 컴퓨터 글자체 업계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정 이용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에 대한 제한

공정 이용 제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창작자, 사용자와 제3자간의 이익분배를 조율하여 모순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창작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익을 보장하여 창작자가 창작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며 나아가 인류사회문화의 진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성적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의 저작물이 탄생하는 것은 작자 한사람이 창조 해낸 것이 아니고 작자가 저작에 대량의 인류역사적 문화 성과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저작은 단지 작자가 앞 사람의 문화 계승을 기반으로 일정한 돌파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 의미에서 일정한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인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평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 이용제도는 또한 사회공중이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대량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 저작권법 중의 “공정 이용”

공정 이용은 여러 나라에서 통용하는 용어 인에 법률이 정한 구체적인 조건하에서 법률이 타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작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각 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공정 이용제도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 이다. 필자는 공정 이용은 다음 몇 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용한 작품이 이미 발표된 작품이여야 한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작품은 공정 이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사용의 목적은 개인이 학습, 연구, 감상 또는 교육, 과학연구, 종교 또는 자선사업 및 공공문화이익의 수요 등에 속하여야한다. 셋째,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기타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하며 저작자의 이름, 작품명칭, 출처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상 조건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공정 이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중국 <저작권법> 제22조 에서는 공정 이용에 대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12가지 공정 이용행위가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책임을 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 저작권과 관련되는 기타 저작인접권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공정이용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법적 보호에서의 적용

저작권법은 작품의 공정 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비저작권자가 일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아무런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용할 때 동 내용의 저작권자 이름과 작품명칭을 기재하면 된다.[122] 개인적인 복제를 비롯한 개인적인 사용은 저작권 사용에 있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그러한 판단근거는 <베른조약> 제9조 제2항의 내용에 의하면 성원국에게 특정의 자유범위를 설정하여 복제권을 제한하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자유가 있다. 중국 저작권법에는 이에 대해 파리협정과 비슷한 규정이 있다. 상술한 법률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3단계 테스트는 권리의 예외적인 상황에도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자가 이미 발표한 작품 내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글자체 사용사자 컴퓨터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무런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해석은 어떠한 것에 입각하여 판단하더라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22) 王锦瑾："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研究", 2016 年 5 月

4. 권리소진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에 대한 제한

(1) 저작권법 중 “권리소진”

권리소진이란 권리의 행사에 있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며 행사하고 난 뒤에는 이러한 권리를 더 이상 향유하지 않는다. 권리소진은 또한 최초판매원칙 이라고도 불리 운다. 권리소진원칙이 저작권에서의 체현은 바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거래 물품과 기타 상품의 매개체로서 타인과 거래를 하였을 때 상품의 매개체에 부착된 저작권은 소진된다. 즉 해당 부분의 재산권이 이전된 것이다. 이는 특허권소진 원칙과 유사하며 한번 사들이면 그 권리는 소진된다. 하지만 저작권 소진은 발행자가 한번 발행하고 나면 이 부분의 발행권을 잃는다는 것이다.

권리소진원칙이 저작권에 있어서의 체현은 개체가 어떠한 저작물 또는 그 복제본을 구매 했을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 제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객체가 이러한 저작물 또는 그 복제본을 구매하다고 한다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이를 판매, 임차 등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작품유통을 저애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에 작품이 유통될 때에는 물품의 특징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물권과 저작권이 모순될 때 물권의 권익이 저작권의 권익에 우선된다. 따라서 저작물이 유형 매개체를 통해 저작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권리소진 제도를 운용하는 선결적 조건이다.

(2) 권리소진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법 보호에서의 적용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회사 사건에서 심사법원이 최종판결에서 비록 방정회사가 NICE회사에 판매한 폰트 저작권을 권리소진이라고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방정회사가 뽀오우지에회사가 폰트를 사용하는 것에 묵시적 허가를 한 것으로 보아 폰트의 판매와 더불어 폰트에 따른 글자체 저작권도 소진된다고 판시하였다. 권리소진이 저작권에서의 체현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거래물품 또는 기타 상품의 매개체로서 타인과 거래를 한 후에는 상품이나 매개체에 따른 저작권이 소진되고 해당 부분의 재산권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결과를 생성한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권리소진의 사용범위에 대한 판단에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폰트 중 글자체는 상술한 저작권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다.

앞서 본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이중속성은 폰트에서 매우 잘 아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폰트간의 저작권 귀속 및 저작권 소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 폰트 거래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폰트 업계에서 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문자의 역사성과 사회의 특수성은 폰트의 저작권 중요성을 홀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자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사회공중이익의 조합을 이루려면 단자의 독창성에 대해 높은 요구를 규정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폰트의 저작권 라이선

스 범위와 공정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만드는 것도 양자사이의 이익의 평형을 도모할 수 있다. 상술한 양자의 이익을 평형하는 방법은 모두 법률조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실현할 수 있다. 이는 글자체 폰트의 독점가능성을 배제 할 수 도 있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 유력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5. 묵시적 허가가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에 대한 제한

(1) 지식재산권 묵시적 허가의 성질의 인정 원칙

19세기에 이미 묵시적 허가는 각 나라 계약법의 특허관련 부분에서 나타났다. 묵시적 허가란 특허권자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활동을 통해 특허상품을 최초로 판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강조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동 특허상품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되고 구매자는 이에 대해 임의로 처리 할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허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묵시적 허가의 성질에 근거하면 특허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한 시점부터 특허권자로 부터 동 특허상품을 처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묵시적 허가에 관한 인정 원칙은 특허상품 구매자가 특허권자의 판매활동을 구매자가 구매한 특허상품에 대한 일정한 특정용도로서의 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허가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매자

가 앞서 말한 권리에 대해 일정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에 대한 행사는 묵시적 허가원칙을 위배하지 말아야 한다. 묵시적 허가가 지식재산권 방면에서의 체현은 기본상 현재 민법중의 관련규정에 부합된다. 묵시적 허가의 인정 원칙이란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표현하려는 뜻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원칙이다. 중국내 민법의 표현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암시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이는 일종 객관적인 분석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도출한 결과가 권리자가 표현 하려는 진실한 내용이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의 행위로 부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타낸 일종 객관적인 추측이다.

(2) 묵시적 허가가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법 보호에서의 적용

묵시적 허가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언급했던 합리적 사용제도 외에도 폰트 글자체 소유자의 묵시적 허가를 통해 대중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합리적사용의 원칙과 비교할 때 묵시적 허가 원칙의 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판단기준을 통한 결과가 더욱 뚜렷하다. 공정 이용 원칙은 일정한 의미에서는 소송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기타 사건의 상황이 다름에 따라 판단결과도 달라지기에 일정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둘째. 묵시적 허가는 글자체 저작권 소유자가 제기한 주동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경제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은 이성적 생각이 있다. 명시 또는 묵시적 허가 원칙의 구체적 표현은 만약 글자체

저작권 소유자가 컴퓨터 생산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폰트를 소비자 부대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으로 판매할 때 라이센스 계약에 소비자가 동 부분 글자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글자체에 대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만약 글자체 저작권 소유자가 상술한 프로그램에서 라이센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사법해석에서는 라이센스를 허가한 것으로 묵인한다. 글자체 구매자가 구매하는 목적은 글자체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인데 만약 계약에서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하지 못했다는 원인으로 권리를 침해한다면 소비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센스는 만약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허가로 인정한다.

상술한 문제 외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정품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기업이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회사의 사건에서 뽀오우지에회사가 상품 외부포장에 사용한 “飄柔” 두 글자를 사용한 행위가 이미 방정회사의 라이센스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뽀오우지에회사의 폰트 프로그램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방정회사로 부터 구매한 것이다. 우선 이러한 행위가 공정 이용이라고 판단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하여 자료수집과 연구를 거쳐 중국 저작권법 제22조 또는 전통적인 3단계 테스트는 모두 이를 공정 이용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개인 소비자의 허가 신청

과 달리 기업에서 권리자에게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다. 하지만 개인 소비자에게 있어서 각종 비용이 부담을 준다. 상술한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회사의 사건에서 2심 법원은 뽀오우지에 회사에서 사용한 “飄柔” 글자 형태는 NICE회사에게 디자인을 위임하여 얻은 것이다. 하지만 NICE회사는 방정회사의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글자체를 받은 것이며 전문 디자인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NICE회사가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묵시적 허가에 해당된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성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법 활동에 종사하게 할 권리가 있다. 또한 뽀오우지에회사가 NICE회사에게 위임을 한 것도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였기에 뽀오우지에회사가 상품외부포장에 사용한 글자체는 방정회사의 묵시적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법원이 묵시적 허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과 대중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기업은 전문적인 법률과정을 거쳐 권리침해 행위로 될 수 있는 상업행위의 합법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주관적인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 혐의를 없애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비록 기업이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나면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이기는 하나 NICE회사의 글자체에 대한 사용은 용이한 업무가 아니라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상업거래에 사용되는 일종의 전문적인 디자인 활동이다. 따라서 이를 묵시적 허가라고 판단 할 수 없다.

6. 기타 제한

앞서 말한 세 가지 제도원칙 외에도 기타 측면에서 무의식적인 권리침해로 인한 법적책임 부담을 제한할 수 있다. 글자체 저작권자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용자들이 글자체 라이센스 상황과 글자체 사용범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에 있어서 매우 용이하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볼 수 있는 사용자 필지사항(주의사항)이다. 이 중에는 라이센스 허가와 연관된 조항이 있다.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무의식적으로 묵시적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일정한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가 부담해야 할 법률적 책임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소송 후 피고 즉 권리 침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함에 있어 배상금액에 대해 일정하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글자체 저작권자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용자가 선의적인 권리침해로 그 법적 책임의 부담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 북경고급인민법원의 <지도의견>에는 법정 손해배상액의 확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바가 있는데 “법정 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며 확정해야 한다. 1. 피고가 이익으로 수

확한 양과 원고가 손실한 양; 2. 작품의 시장가치, 작품 저작권자의 지명도, 작품유형 등 3. 피고가 권리침해를 함에 있어서 그 주동성의 강약, 권리침해 수단의 악의 정도, 권리침해로 인한 사회영향 등" 이라고 규정되어있다. 2009년 3월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관철하고 실시할 것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에서는 "특히 법정배상이 권리침해 행위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전면적인 배상 방식을 채용하고 일정한 정도에서 계속하여 배상 정도를 강화하고 악성 경쟁으로 인한 권리침해 행위가 부담해야 할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가능한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간접적으로 선의적인 권리침해와 고의적인 권리침해가 부담해야 할 법적책임을 구별하였으며 선의적인 권리침해자의 법률책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글자체에서의 가치는 사용성과 거래성에서 나타난다. 부착 제품을 상대로 거래를 할 때 사용자와 권리자는 신의성실하게 협력 하여야 하고 가능한 불필요한 권리침해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줄이면서 거래 가치가 충분히 나타나게 끔 하여야 한다.

제3절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의 침해

1.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의 주요 형식

최종 사용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폰트 중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한 가지 주요 형식이다. 그렇다면 이 외에 또 어떠한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형식이 있는가? 필자는 연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권리침해 형식을 귀결하였다.

첫째, 경쟁대상이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권리침해 형식은 위에서 제기되었던 중국의 첫 번째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관련 사건인 방정회사와 문성회사의 사건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문성회사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저작권 기업의 프로그램에 침입하여 “방정란정 V. 4.0”의 12개 폰트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폰트중의 내용과 기술을 복제하여 이를 “문성 2000 글자체 처리시스템 V. 3.1” 폰트로 만들어 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 하였다. 중국 <저작권법> 관련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침해 행위를 구성한다. 불법 복제의 현상은 북대방정회사와 미국 Blizzard회사의 소송에서도 나타난다. 피고 Blizzard회사는 주요업무는 게임 개발인데 자신이 개발한 게

임 <월드 오프 워크래프트(魔兽世界)(World of Warcraft)> 에서 방정회사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에 방정약흑체, 방정북위해서 등 5가지 글자체를 대량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방정폰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둘째, 최종 사용자가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규정권한을 넘어 폰트 글자체를 사용한다.[123]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회사의 사건에서 뽀오우지에회사는 방정회사로 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방정 폰트중의 글자체를 사용하여 제품의 외부포장 및 logo, 홍보활동 등에 사용하였는데 비록 최종적으로 법원은 뽀오우지에 회사가 승소했다고 판결하였으나 이러한 판결결과는 첨예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규제가 완전하지 못하고 글자체와 단자의 저작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국가는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 보호에 보다 중점으로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 법률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불법 복제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글자체 산업 적자의 기인이다. 저작권자, 국가 심지어 전 세계에서 모두 불법복제 문제에 크게 관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질서의 안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방정폰트의 “방정 찡레이체” 글자체 관련 사건을 예로 든다. 통계에 의하면 이 폰트는 2010년 말에 이미

123)蒋玉宏、贾无志：“计算机字库的著作权保护及侵权判定”, 载于《电子知识产权》2008年第9期。

30000여 세트가 보급되었는데 그중 5000세트만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124] 이러한 현상은 사회질서에 영향을 주고 정품 글자체의 판매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글자체 기업에 적자가 나서 부도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이 보호받기 위해 글자체 사업자는 법적수단으로 불법복제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 관련 입법기관과 정부에서도 불법복제를 규제하고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침해 판단

(1) 컴퓨터 글자체 단자 저작권 침해 판단

중국 현행의 저작권 법률 제도 하에서 사용자가 폰트 중 단자를 사용하는 행위가 권리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글자체 단자의 독창성 여부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최종 사용자의 행위가 저작권의 전속내용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최종 사용자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라이센스나 허가를 받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술한 요소를 만족시켜야 사용자가 단자를 사용하는 행위가 권리침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글자체 단자가 응용미술

124) 李吉林：“浅析方正字库维权背后的相关法律问题”, 载于《法制与社会》2011 年第 19 期。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역시 단자가 독창성을 구비하였는지 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컴퓨터 글자체 단자가 독창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개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이며 국가의 정책, 법률윤리와 각종 가치판단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

(2) 컴퓨터 글자체 전체의 권리침해 판단

본 소절에서는 컴퓨터 글자체의 두 가지 사용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권리침해 판단에 대해 분석한다.

1) 수정을 하지 않고 컴퓨터 글자체를 사용할 경우

첫 번째 상황 즉 글자체에 대해 아무런 수정을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글자체와 침해 글자체는 차이가 없으며 완전히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의 권리침해 행위는 보통 문자를 복제하여 재사용 하는 것이다. 즉 판매 또는 발행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글자체가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하는 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양자는 완전히 같은 면서 어떠한 상이함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하는 것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중이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피고로서 중이회사의 라이센스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중이 폰트를 사용하여 권

리침해를 야기하였다. 그 권리침해 행위는 주요하게 복제 행위이며 복제하여 얻은 글자체와 중이의 원 글자체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한다.[125]

2) 수정 후 글자체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컴퓨터 정보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글자체업의 발전도 빠르게 발전되고 있으며 글자체 사업자사이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상대적으로 환영을 받는 글자체가 나타난다면 종종 기타 글자체 업자가 이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장 점유액을 독점하게 된다. 동시에 모방자는 보통 원 글자체의 기초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여 자신의 작품에 원 작품과 조금이나마 상이한 점이 부여한다. 이러한 현상의 중점은 수정을 거친 글자체가 원 글자체와 본직적인 차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작품이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교의 내용:

두 가지 폰트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지에 대해 판단은 유사한 곳을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폰트는 글자체 디지털화의 체현이며 양자는 한 가지 객체의 두 가지 다른 표현 형

125)蒋玉宏、贾无志："计算机字库的著作权保护及侵权判定"，载于《电子知识产权》2008年第9期。

식이다.[126] 따라서 원 글자체와 수정후의 글자체가 실질적 상사를 구성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글자체에 입각하여 비교할 수도 있지만 폰트에 입각하여 비교할 수도 있다. 다른 비교 방식의 비교 내용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만약 글자체에 입각하여 비교한다면 글자체 형태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판단하고 만약 폰트에 입각한다면 글자체 형태에 대응하는 구체적 좌표와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전문성이 강하고 더욱 복잡하며 통상적으로 이에 대해 가늠하기 힘들다.

상술한 내용에 비추어 필자는 글자체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두 가지 글자체 상품에 대해 비교를 해야 한다고 본다. 글자체와 폰트는 사실상 한 가지 본질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표현방식이고 글자체를 비교 하는 것이 더욱 직관적이기 때문에 글자체 각도에서 두 가지 유사한 글자체 상품을 비교하여 수정후의 글자체 제품이 원 제품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성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비록 글자체에 입각하여 두 가지 글자체 제품이 권리침해를 하였는지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글자체 형태에서 이를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증명 강도가 약하다. 이러한 대조하에서 얻어진 결과만이 회의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글자체의 필획의 중복정도가 바로 전체의 유사도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이다. 글자체의 풍격이 그 필형과 구조를 결정하고 필형은 필획형태의 구체적 체현이며 모든 필획의 시

126) 李吉林：“浅析方正字库维权背后的相关法律问题”, 载于《法制与社会》2011 年第 19 期。

작, 끝, 굵기 등 각 측면에서의 총칭이다.[127] 만약 두 가지 글자체 제품의 글자부호의 필획구조의 중복도가 매우 높다면 이는 대응하는 필형도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술적 표현력도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글자체가 기본상 실질적 유사성을 이룬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원 글자체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비교의 방법:

글자부호에 대해 어떻게 그 필획의 중복도에 대해 검측할지는 그에 상응하는 좌표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운용하여 좌표축을 만들고 폰트 중 글자부호의 좌표수치를 통해 그 유사도를 비교하고 이로부터 두 폰트가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하는 지를 판단한다. 그 판단기준은 주요하게 글자부호의 매개 결정적 위치의 좌표수치인데 그러한 결정적 위치는 컨트롤 포인트(control point)과 엔드 포인트(end point)이라고 불리 운다. 컨트롤 포인트는 비록 자형윤곽에 타나타지 않지만 매개 필획의 곡선과 모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용이 있으며 이러한 곡선은 하나의 완전한 글자부호를 구성한다. 컨트롤 포인트와 달리 엔드 포인트는 자형윤곽에 나타나는데 엔드 포인트는 한 선조의 끝을 대표하며 필획의 종점이다. 따라서 폰트 중 단자 글자부호의 좌표수치의 차이로 부터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같은 글자부호의 동일 필획에서 일부 컨트롤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선택하고 두 가지 포인트의

127) 王锦瑾："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研究"，2016 年 5 月。

좌표수치에 대해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만약 같은 글자부호의 같은 필획에서의 컨트롤 포인트의 좌표수치가 유사하다면 이는 자형의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설명하며 글자체가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좌표수치가 상이하다면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하지 않는다.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 권리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적합한 비교 방식을 선택해야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 다만 사법기관이 주도하여 판단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컴퓨터 글자체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사고[128]

몇 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체의 기본 구조와 형태는 이미 형성되었고 고정되었다. 또한 글자를 사용하면서도 이미 온정한 풍격과 형식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송체, 해서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몇 가지 글자체는 퍼블릭도메인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권리침해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방정회사, 한이회사 등 회사에서 디자인해낸 글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실제 저작권 권리침해

128) 芮松艳："计算机字库中单字的著作权保护", 载于《知识产权》2011 年第 10 期, 第 18 页。

소송 사건에서도 두 가지 글자체는 모두 고유의 고정 글자체에 대해 수정하고 가공한 것이다. 만약 단지 한자의 필획상으로 간단하게 연장하거나 회전하거나 색상을 변화 시킨다거나 또는 컴퓨터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규칙 또는 시스템에서 전화하여 얻어낸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글자체와 다른 풍격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정을 거친 후의 글자체가 현저하게 다른 풍격을 띈다면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약간 참고하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의 핵심은 피고의 폰트 프로그램이 원 폰트 프로그램 중 글자체 형태, 구조의 데이터코드 등을 복제 하였는가를 보아야 한다. 필자는 글자체 디자인, 스캔입력, 데이터와 수정 등 폰트 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원 폰트 프로그램의 데이터 코드를 수정하거나 원 폰트 프로그램의 데이터코드를 복재 한 것이라면 명령코드가 조금 달라짐으로 인해 출력된 글자가 약간의 상이함을 보인다면 이는 무조건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독립적으로 폰트를 제작하는 전체 과정을 완성했다면 폰트 프로그램 중 글자 자형모양, 구조의 데이터 코드가 원 폰트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129] 저작권의 보호와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인정은 매우 복잡하여 정밀한 기술적 지지와 전문적 기술자들의 분석을 요하며 사법

129) 张加青："字体著作权好虎研究"，华东政法大学 2011 年硕士学位论文。

실무에서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요한다.

제4절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관련 입법론

<저작권법>은 문화산업법으로서 한 나라의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보호한다. 이러한 법률은 엄격한 법률조항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자의 창작적극성을 추동하여 사회경제질서의 한정을 보장하고 사회문화의 번영발전을 촉진한다. 근 몇 년 사이 중국 공민의 생활방식과 근무방식이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각 산업시장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기에 입법부문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과 관련 보호규제를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컴퓨터 글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양호한 시장 환경은 더욱 많은 창작자를 끌어들일 것이고 컴퓨터 글자체 기업은 더욱 많은 재력과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자체 산업의 발전을 추동할 것이다.

1.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에 관한 보호

본 절의 주된 관점은 컴퓨터 글자체는 실용성이 있는 예술품으로서 저

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섭시켜야하며 보호기간을 25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방의 많은 나라에서는 글자체를 실제 사용기능이 있는 예술품의 범위에 포섭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도 이러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컴퓨터 글자체는 예술성이 있고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사용의 기능이 있는 예술적 저작물이다.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면 작품의 예술성과 실용성이 물질적 또는 관념적으로 분리 가능하여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러한 분리 가능한 조건에 부합되어야한다. 글자체를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은 창작자의 신심을 더해줄 수 있고 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에 글자체 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외에 <베른조약>과 함께 글자체를 응용미술저작물로 정의한다면 세계적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 나라의 해당 영역과 연관된 입법여부에 상관없이 글자체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문 글자체는 더욱 광범위한 보호를 받게 되며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기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한다면 국내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2.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으로서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에 폰트를 삽입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당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도 모두 코드를 통해 운행되며 디자이너는 코드를 편집하여 폰트의 데이터화를 실현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기에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폰트 프로그램의 응용이 말하는 것은 컴퓨터 자체의 기술에 의해 폰트중의 정보에 대한 사용을 실현하는 것이고 컴퓨터 글자체의 응용이 말하는 것은 단일 글자체에 대한 전용을 말하는 것이다.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의 범위에 속하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때의 보호대상은 프로그램 자체의 코드이며 글자체 및 단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필자가 전에 논술한 북대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회사의 사건에서 “飄柔”“치안체(倩体)” 글자체에 대한 사용과 컴퓨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사건 관련 분쟁도 방정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飄柔”“치안체(倩体)” 글자체 단자가 뽀오우지에회사의 상품 외부포장에 사용된 것이 방정회사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飄柔”“치안체(倩体)” 글자체 단자가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으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면 법률이 보호하는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폰트

프로그램을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과 대비해 보았을 때 저작권 보호범위에서의 특수성은 없다.

3. 관련 법률해석의 제정

컴퓨터 글자체는 창조산업중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관련법률법규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중국의 법률이 시대의 발전에 순응하여 새로운 사회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내용은 사회발전상황이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을 관련 법률보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법률 조항으로 관련되는 각종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법률내용은 다른 입법내용에 따라 관련 사법해석을 명확히 하여 부단히 보완시켜야 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상세한 법률조문을 통해 명확하고 상세한 규제내용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 사법인원은 상세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각각의 분쟁사건마다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

컴퓨터 글자체와 관련 입법은 새로운 입법문제도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법률에 조성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컴퓨터 글자체의 구체적 의미

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와 상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글자체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글자체의 독창성과 예술성 두 가지 속성의 분리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독창성과 예술성 및 두 가지 성질의 분리가능성은 우리가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가 응용미술저작물로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음 중국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구체적 사건의 판결에 근거하여 관련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이로서 법원이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사건의 심리에 관한 지도적 작용을 한다.

4. 권리보호 범위의 합리적 확정

컴퓨터 글자체가 응당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글자체가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글자체 권리자의 합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글자체 업계 발전과 사회공중이익 사이의 균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1) 재현(복제) 글자체 도구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행위를 금지

본 논문은 실질적인 컴퓨터 글자체 보호를 실현하려면 제일 먼저 재현

글자체 도구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글자체 디자인 회사에 입각하여 비교적 보편적인 방식으로 관련 프로그램 보드를 폰트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이다. 같은 업계 디자이너가 만약 이미 판매하고 있는 폰트의 프로그램 코드를 표절하여 새로운 폰트로 만들어 기타 사용자들에게 판매한다면 이는 처음 개발한 회사에게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특히 지금은 컴퓨터 기술이 점차 발전되고 있어 관련 기술능력을 장악하기만 하면 아주 쉽게 폰트 코드를 분해하여 새로운 폰트로 편집할 수 있으며 기타 회사의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를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 글자체 권리자의 라이센스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재현 글자체 도구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행위는 모두 글자체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사회공중의 공정 이용행위

저작권법에서 공정 이용원칙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한 후에도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사용행위가 권리 소유자의 기본권리를 위협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글자체 권리자에게 있어서 사회대중이 글자체의 공정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받지 않는 것에 유리하다. 컴퓨터 글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성 가치가 있고 또한 글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이방면의 기능을 부여하였기에 법률을 이용하여 글자체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폰트 자체의 관련 특징을 고려하여 대중이 글자체에 대한 공정 이용의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컴퓨터 글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다. 따라서 공중에게 그 원천이 있으므로 사회대중의 권익을 보장하여 기본적인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필자는 사회대중이 글자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정 이용의 범위는 정상적인 문자 편집과 문자 프린트 등에 한한다.

(3) 상업적 사용행위에 대한 유상화

오늘날 국내의 글자체 산업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다. 현실을 살펴보면 글자체 기업은 폰트를 통해 합당한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기에 계속 투자하여 발전할 동력도 없다. 글자체 제조 업계가 지속적이고 안정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자는 글자체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보면 하나의 완전한 컴퓨터 폰트를 제조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및 자금을 들여야 한다. 만약 폰트를 판매한 후 사용자가 구매한 폰트를 상업영역 예를 들어 기업의 logo나, 상표, 광고홍보 등에 사용한다면 표면상에서 볼 때 기업의 이러한 사용은 공정 이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용으로 인한 효과가 글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의미 있게 한 것이며 구매자가 글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발휘하여 자신을 위해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조한 것이다. 구매자가 폰트를 구매하는데 들인 비용은 많지 않은데 공정 이용의 범위를 돌파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위한 방대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다. 상업공정의 입장에서 분석하면 공정 이용범위를 초과한 경제수익 중 일부분은 디자이너에게 주어야 한다. 상업적 사용범위에 따라 글자체에 대해 일정하게 비용을 받는 것은 글자체 업체들에게 경제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나아가 경제적 수익이 있으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창신에 투자할 동력이 생겨 전체 글자체 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

(4) 단자 및 글자체의 독창성 인정표준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

독창성은 작품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며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있어서의 관건이다. 독창성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각 나라마다 다른 표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 범위 내에서 각 나라가 통일적으로 인정하고 준수하는 컴퓨터 글자체 관련의 독창성 표준이 없다. 매 나라마다 모두 자신의 저작권법 법률체계와 사회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표준을 정하는데 중국 저작권법은 해당 영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중국 저작권법의 내용규정에 근거하면 오리지널 창작 특징이 있는 작품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데 독창성에 대한 요구는 최저

표준을 만족하면 된다. 또한 다른 작품의 본질 특징과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된 이익요구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제품의 성질, 제품이 속하는 업계의 제품 실제 상황, 발전 가능성, 관련제도 정책 및 사회대중의 수요정도 등 내용들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과학적으로 독창성에 대한 표준을 조율하고 가장 합당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130] 글자체의 독창성에 대한 인정표준은 직접적으로 관련 법률법규의 보장 강도와 보호범위의 확정에 영향된다. 간단기준을 높이면 보호를 받는 글자체 수량이 적어지고 대중 생활에서 글자체 작품에 대한 이용도는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판단기준을 낮추면 보호를 받는 글자체 작품의 수량이 대량으로 증가하여 대중 생활에서 글자체 작품에 대한 운용정도가 낮아 진다. 때문에 글자체의 독창성 판단 표준을 적당하게 높이는 것은 그러한 본질에도 부합되거니와 사회대중이 글자체에 대한 수요 정도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독창성 정도가 매우 낮은 글자체는 법률의 보호범위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대중 생활에서 쓰이는 범위를 확대시켜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필자는 거시적으로 현재의 표준과 비교할 때 현저한 상이함이 있어야 하며 관련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글자는 필획과 필획구조상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글자체의 독창성을 판단할 때 한자 자형(字形)자체의 필획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한이회사와 씨아오바시 회사의 소송에서 법원은

130) 孔祥俊：《知识产权法律适用的基本问题：司法哲学、司法政策与裁判方法》，中国法制出版社，2013 年版。

사건 관련 글자체 자체의 필획과 구조특징을 고려하여 마지막에 관련 글자체중의 “笑” 와 “嘉”는 독창성이 있고 “巴”는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 글자체 저작권 행정 등록 제도를 보완

저작권 행정 등록제도는 저작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로서 저작권 권리귀속으로 인한 분쟁을 위해 초보적인 증거를 제공해주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작품 등록은 저작권을 취득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다. 작품은 자원에 의해 등록하며 저작권 등록 여부는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데 영향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저작권 등록제도의 기능은 한계가 있고 저작권 행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위 문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단자에 대한 2차적 비용(중복 비용) 문제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저작권자는 충분히 폰트 또는 단자를 상대로 일정한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라이센스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저작권 행정 등록부문은 폰트를 상대로 업계규범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폰트나 단자에 대해 등록하는 전제하에서 관련 가격 제정표준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 등록부문은 함부로 폰트를 사용하거나, 비용을 너무 많이

받거나, 동일한 성질의 다른 주체에 대해 불평등하게 대하는 등 상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단자의 저작권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단자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도 행정부문의 감독을 받게 되기에 단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더욱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공평한 저작권 행사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방정회사와 뽀오우지에회사의 판결이 공개되고 나서 글자체 단자에게 저작권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해지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글자체 단자에게 저작권적 보호를 부여한다면 "일자천금"[131] 의 현상이 나타날수 있으며 대중이 문자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 등록부문의 감독 기능을 보완하고 심지어 행정 등록부문이 글자체 단자의 가격 표준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감독하는 직능을 부여하면 앞서 말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132]

6.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의 강화

저작권자의 관련권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하게 징벌하여 일벌백계의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를 엄

131) 일자천금: 한 글자에 천금이 간다고 글자가 매우 귀함을 이르는 말.

132) 姚钰、罗云："计算机字库著作权探讨", http://www.luoyun.cn/DesktopModule/BulContentView.aspx?BullD=6561 2018年7月1日访问。

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기타 사람들은 범죄의 대가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에 종사하게 된다.

(1) 권리 침해자의 손해배상 금액표준을 제고한다

오늘날 인터넷 불법복제 행위가 범람하여 저작권자에게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실시한 권리침해자는 오히려 대량의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권리침해자가 저작권자에게 최고 50만 위안(한화 약 8000만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상금액은 권리 침해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얻는 수익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액수이므로 처벌의 효과를 미약하다. 불법복제 등으로 쉽게 거대한 경제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권리 침해자는 여전히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 때문에 관련 처벌 배상표준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저작권법> (수정초안)에서 권리침해자의 처벌강도를 강화하여 최고 50만 위안을 최고 100만 위안으로 인상하였고 이 외에 두 번 이상 고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는 1-3배의 처벌배상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법정 배상 금액이 최대300만 위안에 까지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익에 더욱 많은 보장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일부 권리침해자들이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마음대로 권리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 하였다. 법원에서 권리침해자가 컴퓨터 폰트 중 단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더욱 높은 표준에 따라 권리침해자가 책임 질것을 판단할 수 있다.

(2) 저작권 행정관리 부문에 더욱 많은 권력을 부여 한다

중국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저작권 권리침해 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자신의 법률 집행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였고 저작권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법률 집행 기관에게 더욱 많은 관련 특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권리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권리 침해자를 징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저작권법>(수정초안)은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차압권과 압수권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75조 에서는 행정 감독관리부문에서 권리침해 범죄를 단속할 때 위법행위 관련 사유를 조사할 권력이 있고; 차압검사를 할 때 관련 계약 및 회계업무 정보를 조사할 권력이 있으며; 권리 침해 제품에 대해 검사할 때 차압 및 압수의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직책범위 내에서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의 권리 침해자에게 상응되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고 일부 위법 생산 장소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할 때에는 제품과 설비에 대해 압수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집행부문의 제보에 의해 권리침해 행위를 단속해야 할 뿐만 주동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일부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경우 관련 부문은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조사를 전개하여 효과적인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문제에 있어서도 앞서 서술한 법률집행 원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7. 컴퓨터 글자체 업계 규범화관리 건의

컴퓨터 글자체 업계는 잠재력이 상당한 업계로 부상됨에 따라 업계로서의 특징과 장구한 발전을 위한 규범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 행정관리 보호 강화

저작권 권리침해 분쟁에서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순조롭지 못하다. 특히 소액의 컴퓨터 글자체 사건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비용이 보상의 비용보다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집행기관의 감독과 관리가 더욱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근 몇 년간 북경과 상하이 등 도시의 문화법률 집행기관에서 저작권법률 집행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왕에 해당 권력을 장악하던 저작권국은 더 이상 법률 집행권을 갖지 않게 되었다. 두 기관은 각기 다른 관리영역에 종속되기 때문이 이러한 법률 집행권이 이전됨에 따라 저작권 법률 집행능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법률 집행기관이 변동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호받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

였다. 필자는 저작권에 대한 법률 집행기관은 고정과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권리자를 도와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 집행기관의 업무능력과 효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 업계 협회의 집체관리 강화

오늘날 중국에서 설립된 글자체 업계 협회 등 관련의 사회단체는 한자의 발전과 계승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추동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적인 효과와는 그 격차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세 가지 부분에서 주의해야한다. 첫째, 홍보효과. 둘째, 단체의 내부관리. 셋째, 저작권의 집중보호. 홍보효과는 사회대중이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게 해야 한다; 내부의 관리는 폰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능력을 보호하고 제고하여 불분명하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디자인 회사의 운영패턴을 단속하여야한다; 저작권의 집중보호에 있어서 다함께 권리수호에 참여하여 관련 지출을 줄이고 각지의 법률 집행기관의 동기를 제고한다.

(3) 폰트 운행패턴의 강제적 규범

폰트 회사가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에 명확한 권리 성명을 하도록 하고 자신의 권리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대외적으로 성명하는바 어떠

한 경우에 기업 또는 개인의 정당한 사용을 허용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부당한 사용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폰트 저작권자가 사전에 사용자에게 권리내용과 범위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객관적으로 저작권자가 특정방식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구매자로 하여금 합리적 기대가 생기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묵시적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업계 발전 인센티브 정책의 제정

정부를 놓고 말한다면 해당 지역의 사회발전상황과 함께 관련 업계의 부조정책을 추진하고 업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주기마다 사용가치가 높은 폰트를 구매하여 공중과 기업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폰트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기업 및 사회대중이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지출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말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현행의 법률체계 하에서 전문적인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느 한 법률에 의해 그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실정이다. 필자는 글자체가 법률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자는 수천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중화문화의 정수 (精髓) 를 적재하고 있기에 완전한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보호를 해줌에 있어서 제반 전통문화의 완전무결한 원상태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현행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바탕으로 전통지식의 일부분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다.[133] 따라서 사회발전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모색해야 진정한 의미로서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나라의 컴퓨터 글자체에 관한 보호와 입법에 대해 분석하고 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 발생한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소송사건을 정리하면서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내용을 이끌어내고 글자체 및 단자와 컴퓨터 글자체의 법률속성을 명확히 하고 이로부터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가 응용미술저작물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그리고 글자체 저작권자 및 사회공중이익 사이의 이익형평을 기반으로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그리고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일정한 정도 제한

133) 孔祥俊：《知识产权法律适用的基本问题：司法哲学、司法政策与裁判方法》，中国法制出版社，2013 年版。

을 받아야 된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정으로부터 중국의 입법, 사법실무 등과 함께 현행의 법률체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방법을 제기하였다. 그러한 것과 함께 본 논문은 컴퓨터 글자체,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정당성 및 권리제한, 권리침해의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연구하였다. 또한 현행의 법률체계가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미칠 수 있고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보았다.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 현존 법률체계에 대한 질의이고 "법이 과거에 있어서는 문명의 산물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문을 수호하는 도구이며; 미래에 있어서는 문명을 증진시키는 도구"[134] 이기 때문이다.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모색하고 보다 낳은 한자문명의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와 같이 컴퓨터 글자체는 단자의 집합으로서 그 독창성 및 예술성이 일정한 정도에 다다르면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그리고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섭시키는 것은 폰트 산업 시장의 발전에 입각하거나 법리에 입각하거나 모두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하지만 글자체 자체는 실

134) [美]罗斯科•庞德：《法律史解释》，邓正来译，中国法治出版社，2002 年版，第 37 页。

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중의 정상적인 사용과 자유의 표현을 저애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권리제한제도는 컴퓨터 글자체와 연관된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이익의 형평성을 보인다. 총적으로 말한다면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온전한 법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실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단행본]

정상조• 박준석 편저,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

이해완, [저작권법 (제3 판)] (2015).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서울) (2013).

김정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상)] (2006).

김 웅, [디자인보호법], 도서출판에듀비 (2016).

노태정• 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제2판)] (2015).

이상정, [글자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한국 논문]

이정윤,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디자인의 심사 쟁점연구”, 디자인과 법, 2017.03.

유길상• 김현철, “디지털 폰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및 공정이용”,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3(1), 2015.6.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19(1), 2016.3.

임원선, “글자체의 법적보호”, 계간저작권, 2001 가을호.

황선영, “[중국저작권법]의 글자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중국법연구, 제20집, 2013.

이상정, “글자체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2005, 제39권 제3호.

임원선, “글자체의 법적보호”, 계간저작권, 5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1

김웅,“글자체 디자인과 관련된 사례”, 발명특허, 35(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이재오, “글자체 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연구, 제7호, 2003.

张玲● 王果, “폰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증연구와 교훈”,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7권 제2호, 2013.9.

전승철, “글자체디자인의 의의 및 출원요건 등에 관한 연구”, 발명특허, 2005.6.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글자체 및 화상 디자인의 침해의 태양과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특허청연구과제, 2004.

한국저작권법학회, “글자체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보고서, 2001.

[중국 단행본]

崔国斌:《著作权法：原理与案例》，北京大学出版社, 2014.

王　迁:《网络环境中的著作权保护研究》，法律出版社, 2011.

刘春田:《知识产权法》，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吴汉东:《知识产权基本问题研究》，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王　迁:《知识产权法教程》，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黄武双:《计算机字体与字库的法律保护：原理与判例》，法律出版社, 2011.

王　迁:《著作权法》，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5.

李明德:《欧盟知识产权法》，法律出版社, 2010.

李建国:《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条纹释义》，人民法院出版社, 2001.

张德新:《版权保护的经济效应机制研究》，中南大学出版社, 2016.

威廉·费歇尔:《知识产权的理论——中国知识产权评论》，　黄海峰译，　商务印书馆, 2002.

来小鹏:《版权交易制度研究》，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9.

雷炳德[德]:《著作权法》，张恩民译，法律出版社，2005.

孙新强·于改之译:《美国版权法》，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2.

罗斯科·庞德[美]:《法律史解释》，邓正来译，中国法治出版社，2002年版，第37页.

李明德：《知识产权法》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7年版

张文显：《法理学》，高等教育出版社，2008年版。

吴伟光：《著作权法研究：国际条约、中国立法与司法实践》，清华大学出版社，2013年版。

[日]田村善之：《日本知识产权法》，周超，李雨峰等译，知识产权出版社，2011年版

[중국 논문]

张平·程艳:《计算机字库产业发展与字体的版权保护》，《电子知识产权》，2011年 第4期.

张平·程艳:《计算机字体及字库的法律保护》，《电子知识产权》，2013年 第

5期.

崔国斌:《单子字体和字库软件可能受著作权法保护》,《法学》,2011年 第7期.

冯　刚:《中文字库中单子的著作权保护问题研究》,《中国版权》,2016年第2期.

黄　汇:《计算机字体单字的可著作权问题研究——兼评中国<著作权法>的第三次修改》,《现代法学》,2013年 第35期 第3卷.

李　琛:《计算机字库中单字著作权之证伪》,《知识产权》,2011年 第5期.

李明德：《美国版权法与字体、字形和字库》，《电子知识产权》 2011年第6期

张　平:《再谈计算机字体的法律保护》，《知识产权》,2011年第5期.

张　今:《计算机艺术字体的可版权性》，《人民法院报》,2011年10月12日.

许　超:《字体字形的知识产权保护》，《知识产权》,2011年 第5期.

吴伟光:《中文字体的著作权保护问题研究——国际公约、产业政策与公共利益之间的影响与选择》，《清华法学》,2011年 第5期 第5卷.

张雨敏:《字形、字库、字库软件的法律保护问题》,《中国版权》,2011年第

5期.

陶鑫良·张平:《具独创性的汉字印刷字体单字是著作权法保护的美术作品》，《法学》，2011年 第7期.

孔祥俊:《知识产权法律适用的基本问题：司法哲学、司法政策与裁判方法》，中国法制出版社，2013年版。

芮松艳:《计算机字库中单字的著作权保护》，《知识产权》2011年第10期，第18页.

张加青:《字体著作权好虎研究》，华东政法大学，2011年硕士学位论文.

刘春田："论方正"倩字体"的非艺术性"，载于《知识产权》2011年第5期。

黄武双："实用功能排除了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的可能性"，载于《法学》2011年第7期。

张玉瑞："论计算机字体的版权保护"，载于《科技与法律》2011年第1期。

韩佩娆："计算机中文字体单字与字库的版权保护"，华南理工大学2013年硕士论文。

李想："计算机字库的可版权性问题研究——基于中美案列对比的视角"，载于《科技与企业》2009第5期，第81页。

孙建伟："论字体与字形"，载于《南阳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2012

年第4期，第59页。

张书乐、陈晓霞：“字库之战”，载于《法人》，2012年第8期。

《深圳特区报》，《盗版致规模字库企业仅剩5家》2012年10月24日，第C03版。

陶鑫良：“印刷字体单字与字库软件的著作权辨析”，载于《知识产权》2011年第5期。

张玉瑞：《知识产权的若干基础和原则问题》

李天艳：《计算机字体单字、字库和字库软件的著作权保护研究——从北大方正诉宝洁谈起》，西南政法大学2013年硕士论文。

陈际：“计算机字体库产业的发展和保护”，载于《电子知识产权》2011年第4期第60页。

陶鑫良，单晓光：《知识产权纵论》，知识产权出版社，2004年版第108页。

蒋玉宏、贾无志：《计算机字库的著作权保护及侵权判定》，《电子知识产权》2008年第9期，第45页。

王坤：“作品概念的科学构建及其在著作权法上的意义”，《知识产权》2010年第6期，第83页。

周云川：“使用艺术品的著作权保护”，载于《中国专利与商标》2013年第4期66页

吕炳斌：“使用艺术作品可版权性的理论逻辑”，载于《比较法研究》，2014年第3期第79页。

王锦瑾：“计算机字体著作权保护研究”，2016年5月

陶鑫良，潘娟娟：“商业广告宣传中字体单字使用的著作权辨析——从“飘柔”倩体字形著作权侵权诉讼案谈起”，载于《电子知识产权》，2011年第4期第73页。

王兴国：“表象性与形式美：汉字艺术之本”，载于《汉字文化》，2014年第1期。

丁峰：“汉字造型设计的审美价值及其发展趋势”，南通大学学报，2006.

张磊：“探寻神秘黑体——关于黑体字产生及命名的思考”， 文艺生活•文艺理论，2010年3月。

陶鑫良：“中文印刷字体单字与字库软件的著作权辨析”，载于《知识产权》，2011年第5期。

蒋玉宏、贾无志：“计算机字库的著作权保护及侵权判定”，载于《电子知识产权》2008年第9期。

李吉林：“浅析方正字库维权背后的相关法律问题”，载于《法制与社会》2011年第19期。

姚钰、罗云：“计算机字库著作权探讨”，2018年7月1日访问。